

월간
재정포럼

2018. August _Vol.266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8

권두칼럼

납세자 보호를 위한 법적 확실성 | 유철형

현안분석

넛지(Nudge)의 정책 설계 시 활용 사례 및 시사점 | 권남호
민영의료보험 보유자의 의료이용행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윤성주

특집

2018년 세법개정(안)

정책토론포트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CONTENTS

권두칼럼

납세자 보호를 위한 법적 확실성 · 유철형 02

현안분석

넛지(Nudge)의 정책 설계 시 활용 사례 및 시사점 · 권남호 06

민영의료보험 보유자의 의료이용행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윤성주 30

특집 · 2018년 세법개정(안)

2018년 세법개정(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김종욱 48

2018년 세법개정안 평가 · 신상화 54

정책토론포트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66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독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안 외 80

정책흐름

2018년 세법개정안 120

납세자 보호를 위한 법적 확실성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최근 수년 사이에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가 다수 드러나면서 각국의 과세당국은 단독으로 다국적기업의 국제적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세당국 간 국제공조를 강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OECD의 BEPS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2015년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17년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하고 신속하게 관련 입법을 마련하는 중이다.

조세회피행위 규제와 납세자 보호의 균형 문제

조세회피행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조세형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규제되어야 한다. 다만,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입법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조세입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조세의 징수는 납세자인 국민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조세징수를 위한 과세요건이 법률로써 그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상의 원칙으로 조세법령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의미가 불명확한 조세입법은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를 초래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이전가격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명시된 “실질적 관리장소”는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본점이나 주사무소 외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추가한 것이다. 2005년 말 「법인세법」 개정시 마련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의 입법취지는 조세피난처 등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두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이중거주자인 법인의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로 거주지를 판정하는 조세조약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질적 관리장소’라는 개념은 조세조약에 아무런 정의규정이나 판단기준이 없는데, 당초 이 개념은 내국법인 판정기준으로 사용된 개념이 아닌 이중거주자의 거주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실질적 관리장소’가 양 체약국 모두에 있을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그 법인을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권을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조세조약에서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비교형량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와 조세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는 그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르다.

그런데 「법인세법」은 조세조약상 비교개념인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국법인의 판단기준으로 도입함으로써 본점이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실질적 관리장소’를 근거로 내국법인으로 보아 우리나라가 그 외국법인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과세권을 전 세계로 대폭 확장한 아주 유용한 규정이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은 그 의미나 판단기준을 법령에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입법 당시부터 현재까지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최근 과세당국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사업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외국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해외투자를 한 사안에서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을 근거로 외국법인인 SPCL를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많은 분쟁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이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에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는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
현행 「법인세법」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은
그 의미나 판단기준을
법령에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입법 당시부터
현재까지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
**「법인세법령」을
 개정하여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그 결정·관리행위의 특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시간적·장소적 지속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기준 마련해야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로써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기준이 명확해졌을까? 대법원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기준으로는 납세자들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 중 몇 가지를 갖추어야 ‘실질적 관리장소’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어느 요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동일한 사안에서도 과세당국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납세자에게 이와 같이 불명확한 기준을 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고,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를 방치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입법이다. 더욱이 지금은 IT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나 화상회의가 가능해졌고, 각종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최고경영자나 중요 임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 수행이나 주요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시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형식적으로 ‘실질적 관리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법인세법」의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법인세법」에 아무런 정의의 규정도 없고, 판단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헌법재판소의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과세당국 스스로 「법인세법령」을 개정하여 정의의 규정을 마련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국민 입법 서비스다. 이에 세계개편안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입법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KIPF**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넛지(Nudge)의 정책 설계 시 활용 사례 및 시사점**
권남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민영의료보험 보유자의 의료이용행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윤성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넛지(Nudge)의 정책 설계 시 활용 사례 및 시사점

I. 서론

1. 들어가며



권남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nhKwon@kipf.re.kr)

2008년 리처드 세일러(Richard H. Thaler)와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의 저서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가 발간된 이후 넛지(Nudge)가 학계, 정부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넛지의 연구에 큰 공헌을 한 Richard H. Thaler가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넛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커졌다.

넛지(Nudge)의 사전적 의미는 “(팔꿈치로) 쿡 찌르다”이다. Thaler & Sunstein(2008)는 넛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넛지는 개인의 선택 옵션을 제한하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개인의 행동변화를 추구하는 선택설계의 모든 측면이다”¹⁾ Thaler & Sunstein(2008)의 넛지에 관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넛지를 통한 정책은 정책 시행자(정부)가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책대상자(개인)의 행동변화를 유도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최근에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넛지를 비롯한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이론과 통찰력(insights)을 공공정책(public policy)에 접목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학계에서도 일부 행동경제학 이론과 실험에 관한 연구를 제외한다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서는 넛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넛지를 활용한 공공정책의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넛지 관련 이론

행동경제학(behavioural economics)은 심리학과 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전통 경제학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해 보이는 개인의 선택에 대해 고민하며 이론을 개발하고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넛지는 행동경제학이라는 경제학 분야 안에 포함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보다 큰 틀에서 볼 때, 넛지는 행동경제학뿐 아니라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유전학 등 여러 학문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행동경제학의 발전에 대한 공로로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Daniel Kahneman은 ‘넛지’에는 심리학이 경제학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²⁾

가.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전통 경제학은 완전정보(perfect information), 인간의 합리성(rationality), 효용 극대화(utility maximization) 등의 가정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본고의 논의 주제인 넛지(Nudge)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 전통 경제학의 주요 패러다임 중 하나는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가정이다. 여기서 합리적(rational) 인간이라 함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효용(utility)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내리는 행동주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하에서의 인간은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최선인(즉,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 또한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그 결정은 동일할 것이다.

하지만 전통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적 인간”과 현실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실제 인간”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즉, 합리적 인간이라는 가정하의 전통 경제학적 접근은 많은 개인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Simon(1955)은 모든 정보(information)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가정을 비판하며,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제시한다. 제한적 합리성 가정하의 인간은 최적의 선택(optimal choice)이 아닌 자신이 부여한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선택을 한다. 즉, 현실에서의 인간은 보다 단순

**넛지는 행동경제학이라는
경제학 분야 안에
포함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보다 큰 틀에서 볼 때,
넛지는 행동경제학뿐 아니라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유전학 등
여러 학문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 "A nudge, as we will use the term, is any aspect of the choice architecture that alters people's behavior in a predictable way without forbidding any options or significantly changing their economic incentives. To count as a mere nudge, the intervention must be easy and cheap to avoid. Nudges are not mandates. Putting the fruit at eye level counts as a nudge. Banning junk food does not." (p. 6.)

2) <https://www.thedailybeast.com/daniel-kahnemans-gripe-with-behavioral-economics>. 접속일자: 2018.03.18.

Hogarth(1980)는 인간은 인식의 한계 때문에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합리적 인간 행위에 대한 패턴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화된 과정을 거쳐 선택을 한다는 뜻이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각 선택에 대한 보상(또는 효용)을 정확히 계산하기보다 그 보상을 보다 단순하게 분류(예를 들어,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으로 분류하는 것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인간의 선택은 모든 정보를 이용한 최선의 선택(the best choice)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정보를 통한 일정한 제약조건을 만족하는 좋은 선택(the good choice)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복잡한 선택(주어진 정보가 많은)을 할 때는 일정량의 정보(주어진 모든 정보가 아닌)와 경험 법칙(rule of thumb)을 이용하는 것이다. Hogarth(1980)는 인간은 인식의 한계(cognitive limitations) 때문에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합리적 인간 행위에 대한 패턴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Simon, 1972; Kahneman and Tversky, 1979; Thaler, 1980; Kahneman and Tversky, 1982; Kahneman et al, 1986; Tversky and Kahneman, 1991; Thaler and Benartzi, 2004; Kahneman, 2012 등).

나. 자유주의적 간섭주의(libertarian paternalism)

자유주의적 간섭주의는 Thaler & Sunstein(2003)에서 제안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Sunstein & Thaler(2003)에서 자유주의적 간섭주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간섭주의는 개인의 후생 증대를 목표로 한다. Thaler & Sunstein(2008)은 자유주의적 간섭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개인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간섭(유도 또는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간섭주의(또는 개입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에게 선택의 옵션을 제공하고, 특정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많은 경우에 선택의 변경에 있어서도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다.” Thaler & Sunstein(2008)은 개인(정책대상자)이 보다 바람직한(즉, 개인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선택을 하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때, 정책입안자가 설계한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에게 아주 작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연금가입에 있어 자동가입을 디폴트로 설정하고 연금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개인은 연금탈퇴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Daniel Kahneman은 *The Daily Beast*와의 인터뷰에서 넋지를 비롯한 행동경제학을 공공정책에 접목하는 것이 “아주 작은 투자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3. 넛지 이론을 통한 공공정책

넛지를 통한 공공정책은 귀납적 접근(inductive approach)을 기본으로 한다. 즉 증거에 기반한 통찰력(evidence-based insights)을 이용한다는 뜻이다. 이때, 증거라 함은 연구에 쓰이는 관찰데이터(observational data)와 실험데이터(experimental data) 모두를 지칭한다. 실험데이터를 얻기 위해 주로 쓰는 방법은 실험심리학(experimental psychology)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실험(experiments)이다. 주로 무작위추출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을 이용한다. 물론 실험 목적이나 여건상 무작위추출실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실험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사실험(준실험, quasi-experiment)을 들 수 있다.

적지 않은 정책입안자들은 정책을 디자인하고 시행하는 데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 유용한 툴(tool)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최근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OECD, 2017). 특히 넛지를 통한 정책은 강제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정책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넛지를 통해 정책 설계를 할 때 정책대상자들로 하여금 정책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선택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디폴트 옵션의 설계가 중요한데, 이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인간의 심리적 특징을 고려한 것이다. 넛지를 통한 공공정책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몇 개의 넛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1) Madrian and Shea(2001)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 퇴직연금 제도(401(k) plan)의 디폴트 옵션 변경으로 퇴직연금 가입률을 큰 폭(49%→86%)으로 증가시켰다. 기존의 옵트-인(opt-in)에서 옵트-아웃(opt-out)으로 디폴트 옵션을 변경하는 비교적 간단한 정책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인 예로, 전형적인 넛지 공공정책이라 볼 수 있다.³⁾ (2) Thaler & Sunstein(2008)은 암스테르담의 스키폴(Schiphol) 공항 남자화장실 소변기에 파리 그림을 그려 소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의 양을 80% 줄인 예를 넛지 정책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예에서도, 소변기에 파리 그림을 그려 넣는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정책을 통해 화장실의 청결성의 유지 또는 상승이라는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스톡

넛지를 통해
정책 설계를 할 때
정책대상자들로 하여금
정책설계자가
의도한 대로 선택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디폴트 옵션의 설계가
중요한데,
이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인간의 심리적 특징을
고려한 것이다.

3) 기존의 옵트 인(opt-in)방식을 옵트 아웃(opt-out)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즉, 기존에 옵트 인 방식의 미국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작성하여 동의하였다면, 바뀐 옵트 아웃 방식에서는 근로자가 퇴직 연금에 자동 가입되고 원할 경우 탈퇴가 가능하다.

영국의 BIT는 행동과학을 정책에 접목시키는 목적을 가진 최초의 중앙정부 수준의 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조직을 설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홀름의 오덴플랜(Odenplan) 지하철역의 계단을 피아노 건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밟을 때 피아노 소리가 나도록 한 결과 평소에 비해 66% 더 많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Volkswagen, 2009).⁴⁾ (4) 브라질의 Fiat 자동차는 브라질 국민의 약 92%가 택시 승차 시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할 시 와이파이(Wi-Fi)가 제공되는 택시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4,500명의 승객 전원이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 실험(또는 정책)의 목적은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실험에서 개인(정책대상자)이 아주 적은 비용(안전벨트를 착용하는 행위에 드는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재화(와이파이)를 얻도록 설계한 것이다.

II. 넛지(Nudge)를 통한 정책-전담조직 및 분야

1. 넛지 정책 전담조직

가. 영국

영국의 BIT(the Behavioural Insight Team)는 2010년 영국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에 설치되었으며 행동과학적 정책 발상을 검증하는 식의 체계적 접근을 수행해 왔다. The Guardian(2015)에 따르면 David Cameron 총리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돈을 절약할 목적으로 BIT를 설치하였다고 한다.⁶⁾ BIT는 “넛지 팀(Nudge team)”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BIT는 행동과학을 정책에 접목시키는 목적을 가진 최초의 중앙정부 수준의 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조직을 설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Bhargava and Loewenstein, 2015). 그리고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2008)의 저자 중 한 명인 Richard Thaler가 BIT에 학술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더욱 더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IT는 광범위한 정책영역(policy areas)을 다루고 있는데 교육(education), 고용과 평등(Employment and Equalities), 건강과 조세(Health and Tax), 국내 및 국제 프로그램(Home Affairs and International Programmes), 지

4) The fun theory.
<http://www.thefuntheory.com/piano-staircase> 접속일자: 2018.03.17.

5) <http://leoburnett.com/articles/work/flat-safety-wifi/> 접속일자: 2018.03.18.

6) <https://www.theguardian.com/public-leaders-network/2015/jul/23/rise-nudge-unit-politicians-human-behaviour>

방정부(Local Government), Operations(운영), 생산성(Productivity), 연구(Research), 벤처(Ventures) 등 9개 영역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BIT의 목적(objectives)은 ① 공공서비스의 비용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활용을 용이하도록 하며(making public services more cost-effective and easier for citizens to use), ② 현실에 더욱 가까운 인간행동에 대한 모형을 도입함으로써 정책의 결과를 개선하며(improving outcomes by introducing a more realistic model of human behaviour to policy), ③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enabling people to make ‘better choices for themselves’) 하는 것이다. 이에 부응하여 다양한 정책연구와 학술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BIT는 현재 영국의 런던(London), 맨체스터(Manchester)뿐만 아니라 미국(United States) 뉴욕(New York), 싱가포르(Singapore), 호주(Australia) 시드니(Sydney), 뉴질랜드(New Zealand) 웰링턴(Wellington) 등에 사무실을 둔 사회적 기업(social purpose company)으로 발전하였다.⁷⁾ BIT의 지분은 영국 정부(UK government)와 Nesta(innovation charity), 그리고 BIT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다.⁸⁾ 이후 2014년 2월 5일 상호합작투자(mutual joint venture) 방식을 통해 부분적으로 민영화되게 된다.^{9) 10)} BIT의 수장인 David Halpern는 상호출자 벤처 방식을 통해 BIT는 더 빠르고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유연성(the flexibility to work faster and further)을 확보할 수 있고, 다른 공공기관 및 외국정부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BIT는 공공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인간 행동 모형을 발전시키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나가고 있다. 이에 BIT는 총리실 소속이었으나 독립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그 영역과 영향범위 및 고객을 확충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 등에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적용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미국

오바마(Obama) 정부는 2015년에 행동과학의 통찰력(behavioural insights)을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집행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707)에 서명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오바마(Obama) 대통령의 행정명

BIT는 공공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인간 행동 모형을 발전시키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나가고 있다.

7) <https://www.ft.com/content/9d7ad41a-3b82-11e5-8613-07d16aad2152>

8) BIT 홈페이지, <http://www.behaviouralinsights.co.uk/>, 접속일자: 2018.03.13.

9)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launches-competition-to-find-a-commercial-partner-for-the-behavioural-insights-team>, 접속일자: 2018.03.16.

10)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571eef16-8d99-11e3-9dbb-00144feab7de>, 접속일자: 2018.03.16.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근거로 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SBST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바 있으며
주정부 차원에서는
Boston과 Philadelphia주
등에서 행동과학을 적용한
정책사례가 있다.**

령 13707을 근거로 하여 연방정부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SBST(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Team)가 2015년 9월 15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산하에 설치된 바 있으며(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2016.09), 주정부 차원에서는 Boston과 Philadelphia주 등에서 행동과학을 적용한 정책사례가 있다. SBST는 연방 기관들이 정책 및 프로그램 목표(goals)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 연구의 적용을 조정하는 것을 그 목적(purpose)으로 한다. 그리고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2016.09)에 따르면, SBST는 은퇴 안전망 증진(Promoting Retirement Security), 경제적 기회의 진전(Advancing Economic Opportunity), 대학 접근성 및 등록금 적정성의 개선(Improving College Access and Affordability), 기후변화 대응(Responding to Climate Change), 구직자 지원(Assisting Job Seekers), 가족건강보험 혜택과 가족건강 유지 지원(Helping Families Get Health Coverage and Stay Healthy), 정부 효과성 및 효율성 개선(Improving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Efficiency)에 기여해왔다.

SBST는 Behavioral Science Insights Guidance를 작성하여 연방정부 부처들이 행동과학의 통찰력을 연방정책과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지침은 행동 요인이 프로그램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히는 연방 정책의 4가지 주요 측면을 보여주었다. 그 4가지 측면은 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결정(determining access to programs), ② 대중에 대한 정보 제공(presenting information to the public), ③ 프로그램 내 선택의 구성(structuring choices within programs), ④ 인센티브 설계(designing incentives)다.

초기의 SBST는 예산(budget), 권한(mandate), 정식 직원(bona-fide employees) 없이 팀을 구성하여 시작하였으며, 최초 팀 구성원은 학술기관 및 비영리단체 출신 전문가들이었다. 이후, SBST는 다양한 연방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70여개 사업(projects)에 대해 20개 이상의 연방부처(federal agencies)와 작업하였다. SBST는 2015년과 2016년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를 발간하였다(SBST, 2015; SBST, 2016). 2016년 11월 8일, Donald Trump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과학적 접근에 미온

11)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17/01/23/can-behavioral-science-help-in-flint>
12) SBST는 2015년과 2016년 연간보고서(annual report)를 발간하였다(SBST 2015; SBST 2016). 그러나 2017년 1월 20일을 기점으로 하여 SBST는 활동을 중지한 상태다.(출처: SBST 홈페이지, <https://sbst.gov/>, 접속일자: 2018.03.13.)

적 태도를 보이는 Trump 행정부에서는 입지가 유지되기 어려웠다(Stillman, 2017).¹¹⁾ 그리하여, 2017년 1월 20일을 기점으로 SBST는 활동을 중지한 상태다.¹²⁾ 그 결과,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넛지 정책의 적용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공식적으로 출발한 넛지 조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만 근거하여 유지됨으로써 정권 변화에 따라 조직의 생존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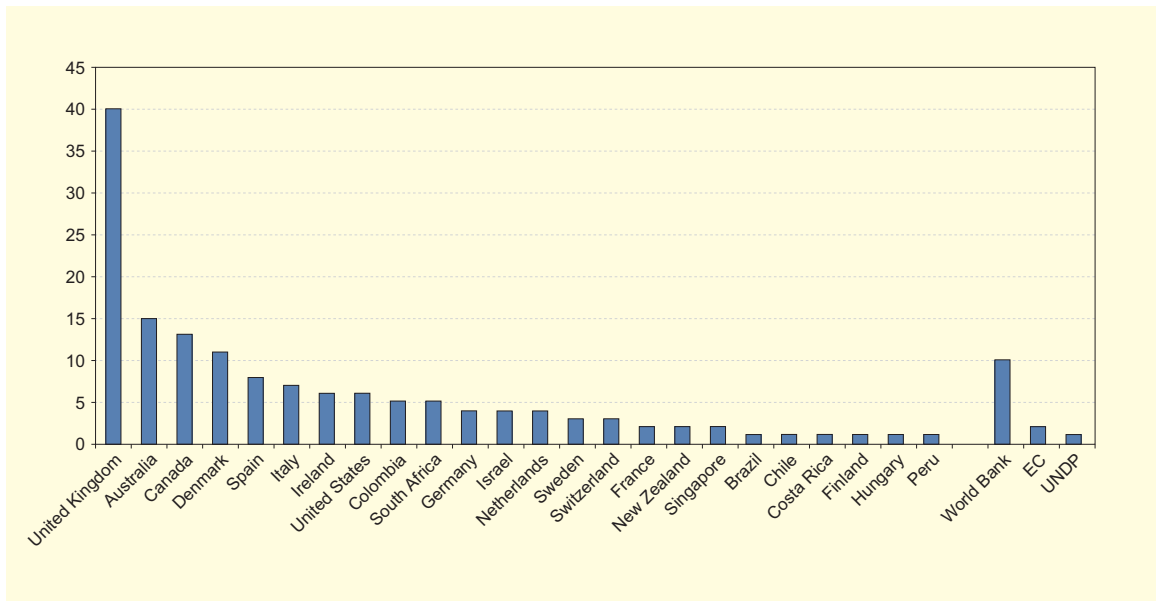
과학적 접근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Trump 행정부에서는
SBST의 입지가 유지되기
어려웠다.

다. 기타

OECD(2017)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가별로 보고된 사례연구의 수를 확인하면, 영국에서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고). 호주와 캐나다 역시 지방정부와 국가수준에서 공공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행동경제학적인 접근방식의 활용을 발전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OECD, 2017).

[그림 1] 국가별 보고된 사례연구 수

(단위: 개)



주: 보고된 사례연구의 총 개수는 159개
출처: 'OECD 2016 Behavioural Insights Case Study Survey Dataset'을 OECD(2017: 27)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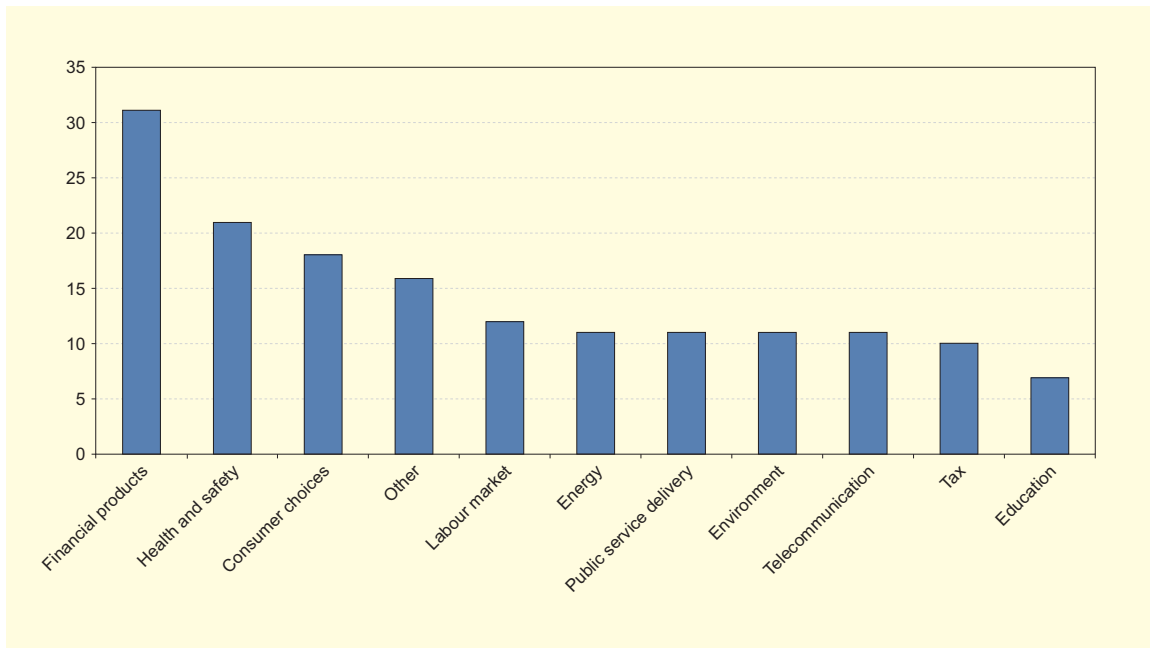
OECD(2017)는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제시하는 것과 다른 인간의 행동에 대한 더욱 현실성 있고 증거에 기반한 공공정책의 수립 및 개입을 위해 “실제의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주요 적용 분야

OECD(2017)는 합리적 선택 이론(theories of rational choice)에서 제시하는 것과 다른 인간의 행동에 대한 더욱 현실성 있고 증거에 기반한 공공정책의 수립 및 개입을 위해 “실제의 인간 행동(actual human behaviour)”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OECD(2017)는 넛지(Nudge)가 적용된 전 세계적인 정책사례를 10개 영역(area)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10개 분야는 ①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② 교육(education), ③ 에너지(energy), ④ 환경(environment), ⑤ 금융상품(financial products), ⑥ 건강 및 안전(health and safety), ⑦ 노동시장(labour market), ⑧ 공공서비스 전달(public service delivery), ⑨ 조세(tax), ⑩ 통신(telecommunications)이며, 이 10개 영역에 속하지 않는 기타 정책사례(other)는 별도의 장에서 소개하고 있다(OECD, 2017).

[그림 2] 정책영역별 보고된 사례연구 수

(단위: 개)



주: 보고된 사례연구의 총 개수는 129개
출처: 'OECD 2016 Behavioural Insights Case Study Survey Dataset'을 OECD(2017: 38)에서 재인용

23개국과¹³⁾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세계은행(World Bank)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 “OECD 2016 Behavioural Insights Case Study Survey”에 따르면, 정책영역별 사례연구에서 금융상품(financial products)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 및 안전(health and safety)과 소비자 보호(consumer choices; consumer protection)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다른 정책영역의 경우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10개 이상의 사례연구가 보고되었다.

**많은 국가들에서
세금과 관련된 넛지 정책을
펴고 있거나
이러한 정책 수립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Ⅲ. 세금과 관련된 넛지(Nudge) 정책

다양한 분야에서 행동경제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넛지를 이용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여러 넛지 관련 정책 중 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넛지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세금 관련 넛지 정책의 주요 목적

많은 국가들에서 세금과 관련된 넛지 정책을 펴고 있거나 이러한 정책 수립을 위한 실험(experiments)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세금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추가적인 규칙이나 처벌(또는 제재) 없이 넛지를 통해 동일한 정책목표를 보다 쉽게(그리고 정책대상자의 저항을 줄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세금 관련 넛지 정책의 주요 목적은 세금순응도(tax compliance)와 세금체납자의 세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 있다. 실제로 세금 납부자의 불순응도(non-compliance)와 세금회피(tax evasion)가 납세고지서의 양식 및 내용의 변화나 세금 징수자의 태도 변화 등으로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OECD, 2017).

13) 우리나라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OECD, 2017: 27).

1995년 Minnesota주 국세청은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자발적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실험에서 사전고지를 통한 검사 및 감사, 고객 서비스 강화, 정보 제공, 납세신고서 양식의 재설계의 4가지 전략들 사용하였다.

2. 정책의 예

가. 미국 Minnesota주 납세고지서 및 신고서 변경 시행과정

1) 시행과정

1995년 Minnesota주 국세청(Department of Revenue)은 Minnesota Income Tax Compliance Experiment를 시행하였는데, 이 정책실험의 목적은 주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자발적 준수(voluntary compliance)를 증진하기 위한 대안전략들을 검증하고 그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Coleman, 1996).

이 실험은 약 185.3만명의 Minnesota주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약 4.7만명에 대한 실험처리가 이루어졌다. 처치집단(treatment group)과 통제집단(control group)은 무작위 추출(random selection; random sampling)을 통해 구성되었다. 각 집단에 서로 다른 세금고지서를 송부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고지서 작성과 관련된 4개의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고지를 통한 검사 및 감사(Examination or Audit with Prior Notice), ② 고객 서비스 강화(Enhanced Customer Services), ③ 정보 제공(Information Messages), ④ M-1 납세신고서 양식의 재설계(Redesign of the M-1 form)

2) 고지서 및 신고서 양식

Minnesota주 국세청의 실험을 위해 활용된 고지서 및 신고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① 감사 전략(Audit Strategy)

이 전략에 따른 고지서에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면 이전 년도의 세금까지도 살펴볼 것(After a close review of your returns, we may write you for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m or arrange a face-to-face audit. If the examination of your 1994 returns finds any irregularities, we may also review tax returns you filed in prior years, as provided by law)”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② 서비스 전략(Service Strategy)

이 전략에 따른 고지서를 받는 세금납부 대상자는 여러 종류의 세금 관련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To find out what services are most useful, we're offering expanded information and services on a trial basis to several thousand taxpayers.). 예를 들어, 전화를 통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직접 창구에 방문하여 세금납부 관련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③ 정보 제공 전략(Information Message Strategy)

정보 제공 전략의 Letter 1은 ‘가치 있는 서비스(Support Valuable Services)’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이 고지서 양식은 정부가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여 어디에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Letter 2는 ‘납세하는 다수의 참여(Join the Compliant Majority)’를 수록하고 있다. 이 고지서에는 “감사에 의하면 납세대상자들은 성실하게 납세에 응하고 있으며 93%의 개인소득세가 자발적으로 납부되었다(Audits by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show that people who file tax returns report correctly and pay voluntarily 93 percent of the income taxes they owe)”라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④ 양식 전략(Form Strategy)

이 전략을 통해 고지서 양식을 바꾸는 것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 고지서를 받는 납세대상자들은 “새로운 고지서 양식을 테스트하는 중인데, 이 새로운 양식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줄기 바란다”라는 문구와 그 양식을 고지서와 함께 받게 된다. 개인소득세 신고서(Individual Income Tax 1994)의 표준(standard) 양식과 시험(test) 양식은 Coleman(1996: 59-64)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주요 효과

Coleman(1996)은 각 전략의 효과성을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과 회귀분석(regression)을 통해 추정하였는데, ① 감사 전략은 저소득 및 중소득 납세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으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Slemrod et al.(2001)은 동일한 자료에 대한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 in Differences)을 통한 분

Coleman(1996)은 각 전략의 효과성을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는데, 감사 전략은 저소득 및 중소득 납세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으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고 결론 내렸다.

BIT는 과세소득을 신고하였지만 납세하지 않은 신고납세의무자에 대한 무작위추출실험을 시행하였다. 이 실험은 독촉장에 사회적 규범 또는 공공재 규범 등을 반영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납세 효과를 측정하였다.

석에서 오히려 고소득자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② 서비스 전략은 납세 신고액 및 납세액에 있어 순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정보 제공 전략 중 ‘가치 있는 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는 Letter 1의 경우, 준수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나, ‘준수하는 다수와의 참여’ 내용이 수록된 Letter 2에서는 강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Blumenthal et al.(2001)의 DID 분석에서는 Letter 1의 경우 준수효과를 발생시켰던 반면, Letter 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④ 양식 전략은 더 많은 납세자들이 자녀의 학교 지출(child’s school expenses)과 관련한 공제(subtraction)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나. 영국 BIT의 세금 독촉고지서 변경

1) 시행과정

2012년 BIT는 HMRC Debt Management and Banking Team의 협조를 통해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신고(declare)하였지만 납세하지 않은 20만명의 신고납세의무자(self-assessment tax debtors)에 대한 무작위추출 실험(RCT: randomised controlled trial)을 시행하였다(Hallsworth, 2014; Hallsworth et al., 2017; OECD, 2016). 이 실험은 독촉장(reminder)에 사회적 규범(social norms) 또는 공공재 규범(public-goods) 등을 반영하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납세 효과를 측정하였다.

2) 고지서 양식

실험에서 통제집단에는 기본적인 HMRC 독촉장을 보낸다. 그리고 처치집단은 다섯 개의 서로 다른 독촉장을 받게 된다. 즉, 다섯 개의 실험집단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실험에 활용된 5개의 사회적 규범 처치들은 아래와 같다.

- ① 기본규범(Basic norm): “10명 중 9명은 기한 안에 세금을 납부한다(Nine out of ten people pay their tax on time)”
- ② 국가규범(Country norm): “영국 사람 10명 중 9명은 기한 안에 세금을 납부한다(Nine out of ten people in the United Kingdom pay their tax on time)”

- ③ 소수규범(Minority norm): “영국 사람 10명 중 9명은 기한 안에 세금을 납부한다. 당신은 아주 소수의 미납자 명단에 들어있다(Nine out of ten people in the United Kingdom pay their tax on time. You are currently in the very small minority of people who have not paid us yet)”
- ④ 양(+의 공공서비스(Gain-framed public services):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건강보험, 도로, 학교 등 중요한 공공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Paying tax means we all gain from vital public services like the NHS, roads, and schools)”
- ⑤ 음(-의 공공서비스(Loss-framed public services):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건강보험, 도로, 학교 등 중요한 공공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Not paying tax means we all lose out on vital public services like the NHS, roads, and schools)”

3) 주요 효과

Hallsworth et al.(2017)은 사회적 규범의 효과를 분산분석과 로짓 회귀분석(logit regression)을 통해 추정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① 기본규범(Basic norm), ② 국가규범(Country norm), ③ 소수규범(Minority norm) 모두 납세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①에서 ③으로 갈수록 긍정적인 효과의 크기가 증가함을 보여주었다(Minority norm을 통해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을 5.1% 증가시켰다) ④ 양(+의 공공서비스(Gain-framed public services)와 ⑤ 음(-의 공공서비스(Loss-framed public services) 역시 세금 납부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다.

다. 아일랜드: Increasing compliance amongst SMEs¹⁴⁾

1) 시행과정

아일랜드에서 중소기업(SMEs: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중소기업이 회사 수의 약 99%, 고용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세금에 대한 부담, 과도한 규제,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이 중소기업의 경영

Hallsworth et al.(2017)은 사회적 규범의 효과를 분산분석과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기본규범, 국가규범, 소수규범 모두 납세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14) OECD(2017: 334-5)

뉴질랜드 과세당국은
 세금체납 전담팀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을 통한 실험에서
 처치집단에 속한
 직원들은 체납자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된다.
 실험결과, 처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약 7-10%
 더 높은 체납세금
 징수율을 보였다.

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보다 잘 파악하고자 설문을 실시한다. 문제는 이러한 설문에 대한 중소기업의 응답률이 낮다는 것이다. 이에, 아일랜드 정부는 설문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넛지 실험을 시행한다.

2) 실험

아일랜드 정부는 중소기업의 낮은 설문조사 응답률을 개선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설문지를 개별화(personalisation on survey responses)하는 전략을 이용한다. 여기서 처치집단은 설문지와 함께 친필의 포스트잇 노트(personalized handwritten post-it note)를 받고, 통제집단은 이러한 친필의 포스트잇 노트가 없는 설문지만 받게 된다. 총 2,000개의 중소기업에 설문지를 배포하는데, 이 중 15%를 무작위로 처치집단으로 선정한다.

3) 실험결과

실험결과 처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더 높은 설문조사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배포 후 15일까지 처치집단의 응답률은 36%로 통제집단의 19.2%보다 높았다. 단, 처리효과는 시간이 감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필의 포스트잇 노트를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총 설문조사 기간 동안의 응답률은 처치집단이 59.7%로 통제집단의 43.5%보다 높게 나타났다.

라. 뉴질랜드: Tax collection interaction¹⁵⁾

1) 시행과정

여느 과세당국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과세당국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세금체납자의 체납세금을 받는 것이다. 뉴질랜드 과세당국은 체납세금의 징수 과정에서 세금 징수율도 높이고 고객만족도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동경제학을 접목시키는 시도를 한다.

15) OECD(2017: 336-7)

2) 실험

과세당국은 세금체납 전담팀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을 통한 실험에서 처치집단에 속한 직원들은 인지행동접근방식(cognitive behavioural approaches)을 통해 체납자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반면에, 통제집단은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는다. 이 실험은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쳐 무작위추출실험(RCT)를 통해 수행되었다.

3) 실험결과

실험결과, 처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약 7-10% 더 높은 체납세금 징수율을 보였다. 또한 처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체납자와의 상담시간이 약 1분 27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는 인지행동접근방식을 통한 조세징수 직원에 대한 교육은 체납세금의 징수율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체납자와의 상담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 미국: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FAFSA)¹⁶⁾

1) 시행과정

미국의 대학 학자금 지원 시스템은 아주 복잡한 편이다.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FAFSA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FAFSA 지원서는 100개가 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들의 내용은 수입, 저금, 부모의 학력, 부모의 이혼 여부,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 향후 대학에서의 수업계획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많고 다양한 질문들에 정확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실험

Bettinger et al.(2012)는 개별적인 도움(personal assistance)을 이용한 넛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2008년에 H&R Block과 함께 수행한 이 실험은 무작위 현장실험(Randomized field experiment)으로 볼 수 있다. 이 실험에서 처치집단에 대해서는 세금준비를 위해 도움을 받는 저소득층 성인들에게 FAFSA 지원서 작성을 돕는 서비스 제공하였다. 왜냐하면, 납세신고서에 필요한 많은 정보가 FAFSA 지원서 작성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통제집단은 FAFSA

Bettinger et al.(2012)은 개인적 도움을 이용한 넛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에서 처치집단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원서 작성을 돕는 서비스 제공하였다. 실험결과 처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더 많은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¹⁶⁾ Bettinger et al.(2012)

우리나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네티지 정책으로 볼 만한 정책들을 간혹 수행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영국의 네티지팀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네티지 정책의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기구가 없다.

지원서 작성 도움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3) 실험결과

실험결과 처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더 많은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치집단이 대학 입학률도 더 높으며, 학자금 지원을 받을 확률도 더 높았다. 또한, 처치집단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대학 입학률이 통제집단보다 8%p 높게 나타났다.

IV. 시사점

1. 우리나라에서의 네티지 정책

가. 현황

밑에서 소개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네티지 정책으로 볼 만한 정책들을 간혹 수행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영국의 네티지팀(BIT)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네티지 정책의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는 기구가 없다.¹⁷⁾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일부 단체에서 시도하는 네티지 정책의 예는 소수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학교 근처 횡단보도에 노란색 선과 발자국 설치(그 결과 학생의 교통사고 감소),¹⁸⁾ ②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에 텃밭과 꽃밭을 조성(그 결과 쓰레기 투기 감소),¹⁹⁾ ③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에 양심거울 설치(그 결과 쓰레기 투기 감소),²⁰⁾ ④ 광안대교 곡선부에 붉은색 선을 그어 놓음(그 결과 교통사고 감소).²¹⁾

OECD(2017)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의 설문 대상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Whitehead et al.(2014)에서도 우리나라는 네티지 정책을 활용하는 국가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래 [그림 3]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행동과학(behavioural science)을 공공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붉은 색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Whitehead et al.(2014)는 약 135개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든 행동과학을 공공정책에 접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분석 대상국가의 69%에 해당되는 숫자다. 물론, 저자들은 이 숫자가 최소한의 수준

17)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영국의 네티지팀(BIT)은 중앙정부 수준의 조직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사회적 기업(social purpose company)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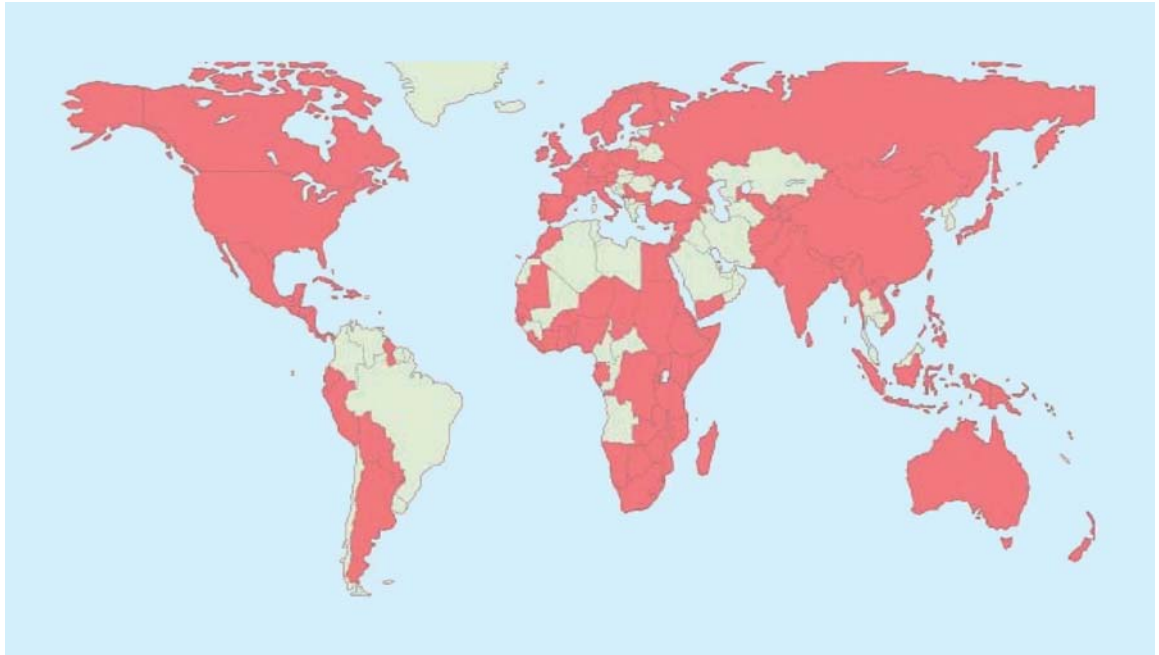
18)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 라우드(LOUD)와 함께 개발·수행하였다.

19)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0710727 접속일자: 2018.03.17.

20) http://www.hani.co.kr/society/society_general/233849.html 접속일자: 2018.03.17.

21) <http://news.joins.com/article/16174980> 접속일자: 2018.03.17.

[그림 3]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s)이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친 국가



주: 붉은색 국가들은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 시 행동과학을 이용함
출처: Whitehead et al.(2014: 22)에서 재인용

(minimum baseline)일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의 모든 정책을 조사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Whitehead et al.(2014)는 우리나라가 넛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국가로 분류하였지만, 우리나라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한 몇몇 넛지 정책의 예가 존재한다.

나. 우리나라의 세금 관련 넛지 정책 사례

1) 국세청 자기검증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안내 방식을 통해 자기검증서식을 제공하고 있다(국세청, 2018). 그리고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 등 서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검증에 따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 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역시 가능하게 하여 납세 신고의 용이성을 제고하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안내 방식을 통해 자기검증서식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을
옵트-아웃으로 변경한다.
디폴트 옵션 변경 후에는
자동으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에 이체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연금을 해지하고
퇴직금을 일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고 있다(국세청, 2018).

이러한 정책은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부추기는 일종의 넛지 정책이라 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 2018.02.26).

2018년 기준으로 자기검증서식은 12종이다. 자기검증서식은 2015년 4종으로 도입되어 2016년 8종 2017년은 10종(국세청, 2015; 2016; 2017; 2018)으로 확대되어 왔다.²²⁾

효과를 명시하고 있는 연구 및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국세청이 ‘자기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2) 금융감독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을 옵트-아웃(opt-out)으로 변경한다. 디폴트 옵션 변경 전(opt-in) 퇴직자는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디폴트였다. 즉, 일시에 퇴직금을 받는 대신 연금으로 받고 싶은 사람이 개인형퇴직계좌(IRA)에 이를 이체하는 형태였다. 디폴트 옵션 변경 후(opt-out)에는 자동으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하고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연금을 해지하고 퇴직금을 일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2014년 말 기준으로 연금수급 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34,000명)의 95.2%가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여 그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코노미 플러스, 2016.02.21.).²³⁾ 그러자 정부는 2015년부터 퇴직금을 일시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을 30% 경감해주기로 하였다.

2. 시사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행동경제학이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본고에서 주로 살펴본 넛지(Nudge)를 이용한 정책도 많은 나라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본고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넛지 정책 전담조직의 생성·변천과 조직 운영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영국의 BIT와 미국의 SBST가 유사한 목적으

22)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 검색 결과, 2015년부터 자기검증이 등장하고 있다.

23) http://economyplus.chosun.com/special/special_print.php?t_num=9152&tableName=article_2005_03&boardName=C08&t_ho=137&t_y=2018&t_m=04

로 설립되었으나 서로 매우 다른 길을 걷고 있다. BIT는 조직의 변천을 통해 다양한 국가·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SBST는 정치적 환경 변화 등으로 현재 활동을 중지한 상태다. 우리나라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동경제학적 측면을 고려한 넛지 정책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 때 참고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또한, 해외 사례 중에서 성공적이었던 넛지 정책의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물론, 이때 무조건적인 도입이 아닌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넛지를 통한 공공정책의 옹호자들의 가장 큰 논리는 ① 넛지를 통한 정책은 강제적이지 않으며, ② 정책대상자에게 선택의 옵션을 주며, ③ 전통적 정책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넛지의 정책 활용에 대한 비판 또한 존재한다.

먼저, 작은 넛지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 수 있다. 넛지를 통한 환경보호 정책이 전통적인 정책, 예를 들어 환경보호를 위한 경유에 대한 세금인상 등보다 효과가 작다고 지적한다. 또한, 넛지를 통한 정책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예를 들어, 환경변화, 소득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한 해답을 내지 못한다고 비판한다(Goodwin 2012; Selinger & Whyte 2012). 그리고 넛지 정책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단기(short-term)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둘째,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에 대한 비판이다. 넛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넛지 정책의 옹호자들이 개인은 쉽게 조종되고(manipulated) 편견(biases)과 왜곡(distortions)을 발생시키는 존재로 인식한다고 믿는다. 또한, 넛지를 통한 정책은 사람들의 자율권(autonomy)을 희생하여 개인을 조종(manipulate)한다는 비판이 있다(Schubert, 2015).


셋째, 넛지 정책을 위한 실험에 대한 비판이다. 연구실에서 실행된 실험 또는 적은 참여자 수를 가지는 실험의 결과가 실제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실험은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사회 또는 현실과 달리 연구자가 원하는 상황(controlled conditions)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정성(fairness)에 관한 논의다. 많은 경우 넛지 정책에는(또는 정책을 디자인하기 위한 소규모 실험)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책대상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두 집단 중 하나에 속하게

**넛지를 정책에
활용하는 데 있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의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넛지를 통해
공공정책을 디자인하고
시행하려고 한다면
엄밀한 연구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비록 넛지의 근간이 되는
 행동경제학이
 전통 경제학의 한계를 통해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넛지를 활용하여
 공공정책을 디자인하고
 실행할 때 여전히
 전통 경제학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된다. 왜냐하면, 넛지 정책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무작위추출 실험이 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속하는 것이 정책대상자의 효용(경제적·심리적 요인을 모두 포함)을 다르게 한다면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넛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논의 양쪽 모두 타당한 면이 많다. 넛지 정책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넛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넛지를 정책에 활용하는 데 있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의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예: RCT의 디자인과 실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넛지를 통해 공공정책을 디자인하고 시행하려고 한다면 엄밀한 연구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해외 사례나 국내 지자체 단위의 넛지 정책 중 효과성이 검증된 정책의 확대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전통 경제학과의 접목이다. 비록 넛지의 근간이 되는 행동경제학이 전통 경제학의 한계를 통해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넛지를 활용하여 공공정책을 디자인하고 실행할 때 여전히 전통 경제학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Congdon, Kling, and Mullainathan 2011). 

〈참고문헌〉

국세청, 「2018년도 법인세 신고안내」, http://www.nts.go.kr/tax/tax_b4_list.asp?cbinfo_key=MBIC8020100926114712&cinfo_key=MINF7120100726152417&menu_a=500&menu_b=400&menu_c=&flag=05#FileDown. 접속일자: 2018.03.16.

『조세금융신문』, 「75만개 법인, 4월 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2018.02.26.

Bettinger, E. P., Long, B. T., Oreopoulos, P., & Sanbonmatsu, L., “The role of application assistance and information in college decisions: Results from the H&R Block FAFSA experi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7(3), 2012, pp. 1205–1242.

Bhargava, S., & Loewenstein, G., “Behavioral economics and public policy 102: Beyond nudging,” *American Economic Review*, 105(5), 2015,

- pp. 396–401.
- Blumenthal, M., Christian, C., Slemrod, J., & Smith, M. G., “Do normative appeals affect tax compliance—Evidence from a controlled experiment in Minnesota,” *National Tax Journal*, 2001, pp. 125–138.
- Camerer, C., Issacharoff, S., Loewenstein, G., O’donoghue, T., & Rabin, M., “Regulation for Conservatives: Behavioral Economics and the Case for “Asymmetric Paternalism”,”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51(3), 2003, pp. 1211–1254.
- Coleman, S., *The Minnesota income tax compliance experiment State tax results*, 1996.
- Congdon, W. J., Kling, J. R., & Mullainathan, S., *Policy and choice: Public finance through the lens of behavioral economic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1.
- Do, W. B. E. T. T., “Behavioral economics: Past, present, future,” *Advances in behavioral economics*, 1, 2011.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Team 2016 Annual Report*, 2016.09.
- Goodwin, T., “Why we should reject ‘nudge’,” *Politics*, 32(2), 2012, pp. 85–92.
- Hogarth, R. M., *Judgement and Choice: The Psychology of Decision*, Wiley, Chichester, England, 1980.
- Kahneman, D., *Thinking, Fast and Slow*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1). Google Scholar, 2012.
- Kahneman, D., & Tversky, A.,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2), 1979, pp. 263–291.
- _____, “The psychology of preferences,” *Scientific American*, 246(1), 1982, pp. 160–173.
- Madrian, B. C., & Shea, D. F., “The power of suggestion: Inertia in 401 (k) participation and savings behavior,” *The Quarterly Journal of*

- Economics*, 116(4), 2001, pp. 1149–1187.
- SBST,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s Team: Annual Report*,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s Team,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National Sciences and Technology Council, Washington, D.C, 2016.
- _____,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s Team: Annual Report*, Social and Behavioural Sciences Team,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National Sciences and Technology Council, Washington, D.C, 2015.
- Slemrod, J., Blumenthal, M., & Christian, C., “Taxpayer response to an increased probability of audit: evidence from a controlled experiment in Minnesot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9(3), 2001, pp. 455–483.
- Hallsworth, M., “The use of field experiments to increase tax compliance,”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30(4), 2014, pp. 658–679.
- Hallsworth, M., List, J. A., Metcalfe, R. D., & Vlaev, I., “The behavioralist as tax collector: Using natural field experiments to enhance tax complian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48, 2017, pp. 14–31.
- Lin, T. C., “A Behavioral Framework for Securities Risk,” *Seattle UL Rev.*, 34, 2010, p. 325.
- Mullainathan, S., & Thaler, R. H., “Behavioral economics(No. w794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1.
- OECD, *Behavioural Insights and Public Policy: Lessons from Around the World*, OECD Publishing, Paris, 2017.
- Schubert, C., *On the ethics of public nudging Autonomy and agency*, 2015.
- Selinger, E., & Whyte, K. P., “Nudging cannot solve complex policy problems,”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3(1), 2012, pp. 26–31.
- Simon, H., “A behavioral model of rational choice,”—*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69, 1955.
- Simon, H. A., “Theories of bounded rationality,” *Decision and organization*, 1(1), 1972, pp. 161–176.

Slemrod, J., Blumenthal, M., & Christian, C., “Taxpayer response to an increased probability of audit: evidence from a controlled experiment in Minnesot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9(3), 2001, pp. 455–483.

Sunstein, C. R., *The ethics of influence: Government in the age of behavioral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Sunstein, C. R., & Thaler, R. H., “Libertarian paternalism is not an oxymoron,”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2003, pp. 1159–1202.

Thaler, R., “Toward a positive theory of consumer choic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1), 1980, pp. 39–60.

Thaler, R., & Benartzi, S., “Save More Tomorrow™: Using Behavioral Economics to Increase Employee Sav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2(S1), 2004, S164–S187.

Thaler, R. H., & Sunstein, C. R.,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8.

_____, “Libertarian paternalism,” *American economic review*, 93(2), 2003, pp. 175–179.

Tversky, A., & Kahneman, D., “Loss aversion in riskless choice: A reference–dependent model,”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4), 1991, pp. 1039–1061.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launches-competition-to-find-a-commercial-partner-for-the-behavioural-insights-team>, 접속일자: 2018.03.16.

BIT 홈페이지, <http://www.behaviouralinsights.co.uk/>, 접속일자: 2018.03.13.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571eef16-8d99-11e3-9dbb-00144feab7de>, 접속일자: 2018.03.16.

SBST 홈페이지, <https://sbst.gov/>, 접속일자: 2018.03.13.

민영의료보험 보유자의 의료이용행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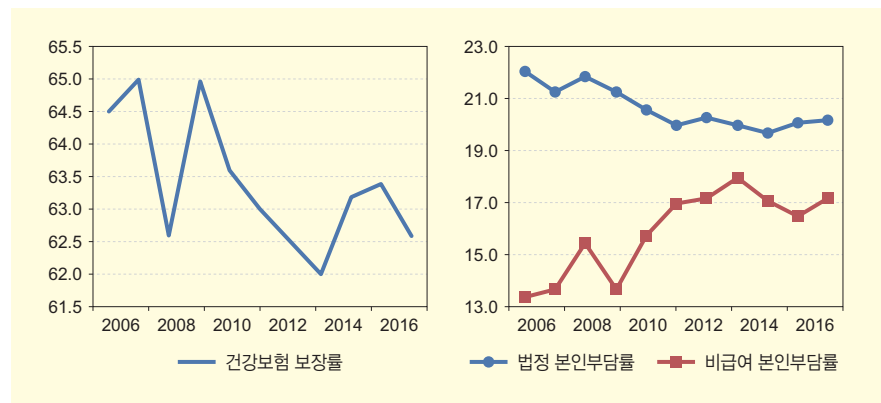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sjyoon@kipi.re.kr)

1963년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편적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체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보장성 측면에서는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요컨대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5%에서 2016년 62.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체 또는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정 본인부담률의 경우에는 2006년 22.1%에서 2016년 20.2%로 1.9%p 감소하였으나, 동기간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3.4%에서 17.2%로 오히려 3.8%p 증가하였다.

[그림 1] 건강보험 보장률 및 법정·비급여 본인부담률 추이

(단위: %)



출처: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각 년도

결과적으로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36.8% 수준으로 OECD 평균 19.6%보다 17.2%p 높은 수준이며,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표 1〉 OECD 국가의 가계 직접 부담 의료비 비율(2014년 기준)

(단위: %)

국가명	멕시코	한국	그리스	프랑스	평균
비율	40.8	36.8	35.4	7.0	19.6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의료비 부담은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 중산층 가구를 저소득층으로, 그리고 저소득층에 속한 가구가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기회를 박탈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또한 가구소비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의 우선순위를 염두에 둘 때,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타 부분의 소비지출 감소는 가구 단위를 넘어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2017년 8월, 2022년까지 30.6조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것은 현재 민영의료보험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을 보유한 경제주체들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를 외래서비스 이용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시작으로,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및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을 통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체계를 달성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기존의 다수보험자방식 의료보험제도를 통합제도로 변경하는 등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가

본고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을 보유한
경제주체들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를
외래서비스 이용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보험제도의 형태로
보편적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가 주도하는 공보험제도의 형태로 보편적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1977년 직장의료보험(500인 이상 사업장)을 도입할 당시에는 정부의 지원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1988년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역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공공부조 성격으로 국고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지역보험재정의 50%를 국고로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 수준을 20%로 축소한 바 있다. 당초 국고지원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원되는 한시적 조치였으나, 지원시기를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현재는 지원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한 상태다(김윤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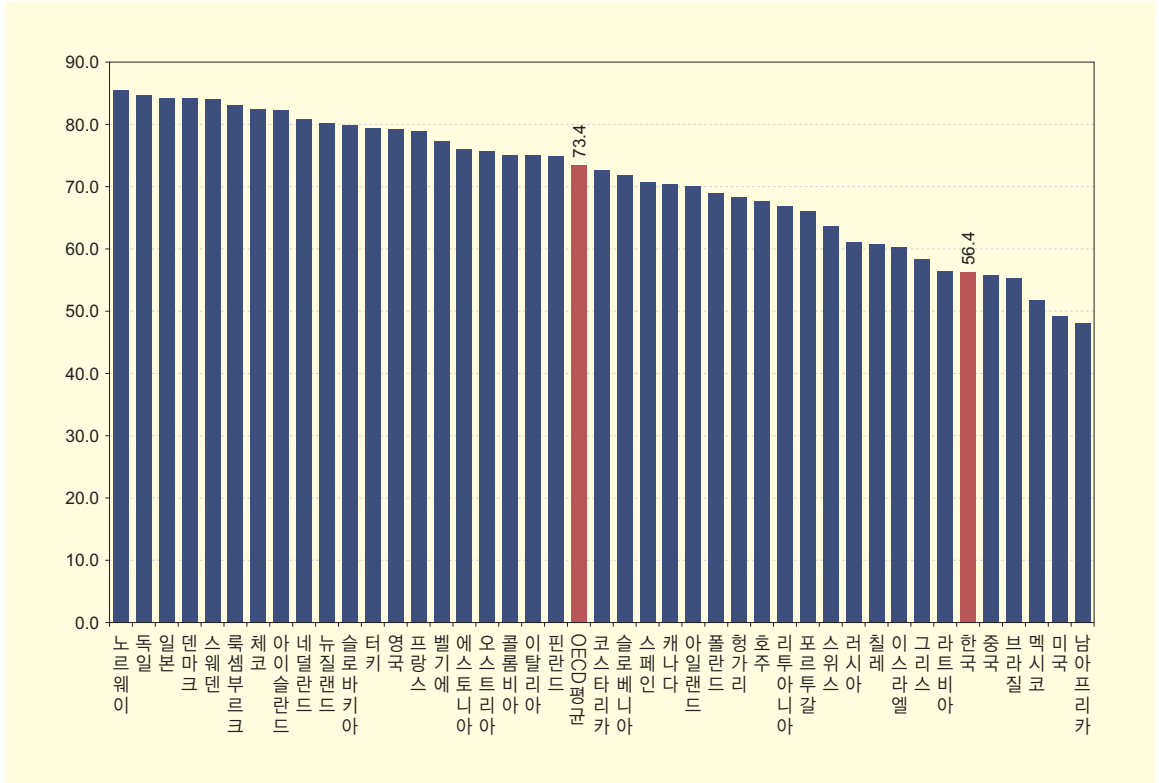
제도 도입 이후 건강보험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1977년에는 동일상병 180일까지만 급여를 제공하였으나, 1995년부터 연간 30일씩 급여기간을 연장하여 2006년에는 급여기간 제한을 폐지하였다.¹⁾ 또한 만성 중증질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004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도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소득계층별 혜택 조정을 위해 3단계 3등급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2013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하였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과 같은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항목 중 상당수를 급여화하였으며, 노인 임플란트·틀니 등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상급병실료·선택진료제도 등 2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장성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OECD(2017)에 따르면, 경상 의료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73.4%보다 낮은 56.4% 수준으로 35개국 중 29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000년 7월 급여기간 제한을 폐지하였으나, 의료서비스 남용 방지를 위해 2002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연간 365일로 다시 부활하였다. 2006년에는 예외자가 97%에 달해 다시 제한을 폐지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그림 2] OECD 국가별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재원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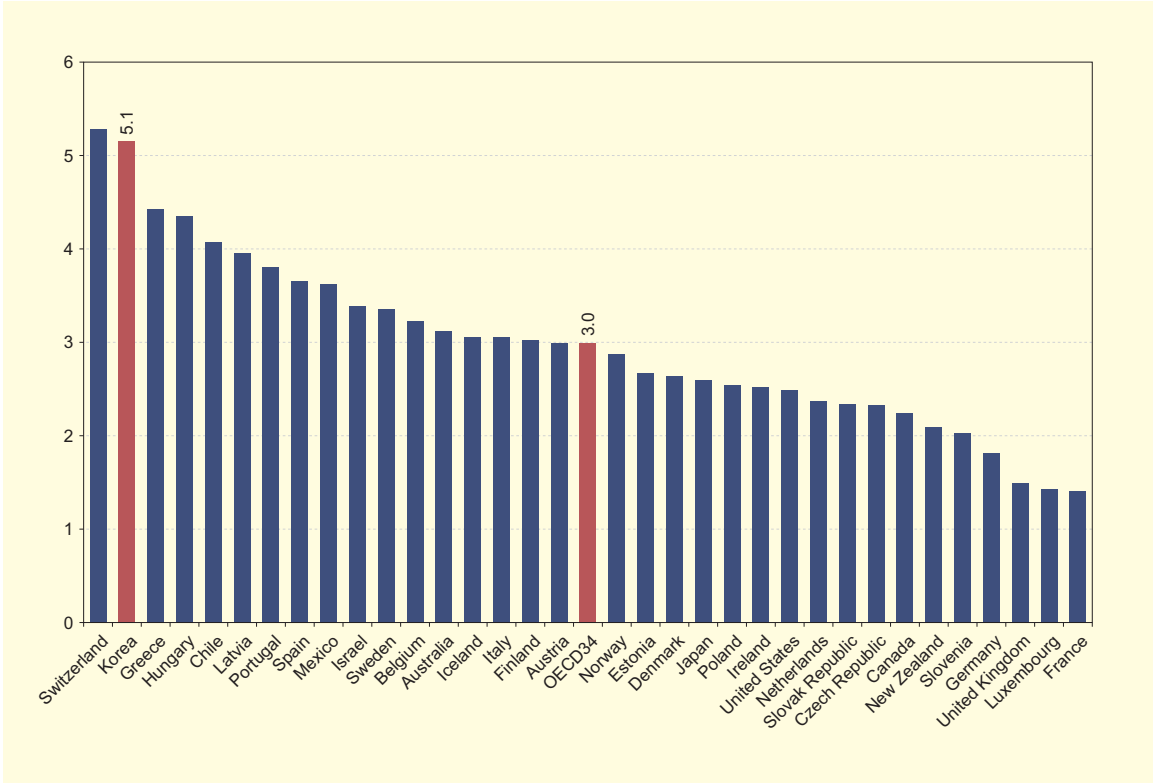
주: 2016년 기준(2016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은 2016년에 가까운 연도의 수치)
출처: OECD(2017)

또한 가계소비에서 본인부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의 경우 평균 3.0%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5.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OECD(2017)에 따르면, 경상의료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73.4%보다 낮은 56.4% 수준으로 35개국 중 29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OECD 국가별 가계소비에서 본인부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주: 2015년 기준(2015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은 2015년에 가까운 연도의 수치)
출처: OECD(2017)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하여 향후 5년간 30.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정부 추정치 이상을 전망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비급여 해소,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흑자 지속으로 인한 누적적립금 20조원과 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필요재원과 관련하여 정부 추정치 이상을 전망하고 있기도 하다.

〈표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항목 및 재정추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추진 항목		정부추계(5년)
3대 비급여	상급병실차액 건강보험 적용	7조 8,484억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택진료제 폐지(전문외사가산제 도입)	
예비·선별급여	3,800개 비급여의 급여 및 예비급여(초음파와 MRI 건강보험 적용, 약제 선별급여,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 예비급여 등 포함)	11조 498억원
소득수준별 상한액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3조 792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취약계층 부담완화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	7조 3,673억원
	65세 이상 틀니 및 임플란트 부담 경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아동 입원 부담 완화	
	아동 응치예방 및 치료 시 부담 경감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난임시술(인공·체외수정)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 의료비 부담 완화		
신포괄 확대 등	신포괄 확대 등	1조 2,718억원
계		30조 6,165억원

출처: 의료정책연구소(2017)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3〉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추계

(단위: 조원)

정부	국회에산정책처	의료정책연구소	김상훈 의원
30.6	30.8	34.6+α(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화, 신포괄 확대 등)	60

출처: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1.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기본모형), 2017.
2. 의료정책연구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요재정 추계』, 2017.09.
3. 경향신문 <http://h2.khan.co.kr/201710070900001>

**민영의료보험은
공보험 형태의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며, 법적으로
제3보험에 해당된다.**

2. 민영의료보험

민영의료보험의 법적 개념은 제3보험²⁾으로 사람의 신체사고에 대하여 사망·후유장애 및 치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람의 신체에 관한 것이 모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조용운 외, 2011).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이 결정되는 공보험 형태의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민영의료보험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보험과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실손형 보험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은 1979년 손해보험사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상품의 판매를 개시하면서 민영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최성은, 2016), 1980년 12월부터 생명보험사에서 정액형 암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는 OECD 가입을 계기로 생명보험산업 규제를 완화하였고,³⁾ 1997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시장이 크게 확대되었다. 즉, 1997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생명보험사 판매영역이 전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대기업의 진출 또한 허용되었다. 생명보험사의 상해보험, 손해보험사의 질병보험은 부가계약으로만 취급할 수 있었으나, 「보험업법」 개정으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상해·질병보험을 주계약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제3보험에 대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이 가능해졌다.

2000년대에는 생명보험사 영역이 더욱 넓어져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2002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상품 판매가 허용되었으며, 2003년부터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자격으로 판매를 대행하는 방카슈랑스 제도 또한 시행되었다. 그리고 특별약관 형태로 운영되어 온 실손형 상품은 2013년 1월부터 주계약 형태로의 판매가 허용되었다(허순임, 2013).

2) 제3보험은 생명보험과 실손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3) OECD에서는 한국의 보험시장 자유화율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판단하여 상품가격의 자유화 및 상품개발기준의 완화, 보험중개인제도 등 전반적인 규제완화를 요청하였다(허순임, 2013).

〈표 4〉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발달 비교

시기	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1970년대	• 1977년 도입	• 1979년 상해·질병보험 출시(손해보험사)
1980년대	•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	• 암보험 출시(생명보험사 중심)
1990년대	• 단일 보험 통합 논의 • 진료일수 확대, CT 등 보험급여 확대	• 제3보험 경영 허용(1997) • 중증질환 상품으로 확대(생명보험사)
2000년대	• 다양한 급여 확대정책 - 본인부담금상한제(2004) - 암 등 중증질환 급여 확대(2005) - 입원환자 식대 급여 전환(2006) - 노인틀니 보험 적용(2012)	• 실손보험 상품으로 확대(생명보험사) - 단체형(2003) - 개인형(2005) - 주계약 형태의 단독상품 출시(2013)

출처: 허순임(2013), 2009.

본고에서는
한국의료패널조사
2008~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민영의료보험 보유와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Ⅲ. 민영의료보험 보유자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1. 분석 자료 및 방법

본고에서는 한국의료패널조사(Korea Health Panel) 2008~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민영의료보험 보유와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를 외래서비스 이용 횟수로 설정하고, 관심 독립변수를 민영의료보험 보유 여부로 설정하였다.⁴⁾

종속변수가 가산자료(count data)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데이터 생성과정은 프아송 분포(Poisson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프아송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다는 특성이 존재하지만, 실제 데이터에서는 분산이 평균보다 더 큰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왜냐하면 가산자료의 경우, 0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과대산포문제(over-dispersion problem)를 검정하였으며, 검정결과 과대산포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대산포 문제를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아송-감마 결합모델(Poisson-gamma mixture model)을 이용하였다.⁵⁾

4) 본고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민영의료보험 보유와 외래서비스 이용 횟수 또는 의료비 지출액 등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민영의료보험 보유와 외래서비스 이용 횟수 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5) 이와 같은 가산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표준오차를 과소평가할 개연성이 높으며, 일치성이 만족되지 않는 추정치를 얻게 될 확률이 높다.

2008~2014년
개인단위로 구성된
패널자료의
기초통계량을 보면,
표본에 속한 개인들 중
71.5%가 민영의료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y_{i,t} \sim \text{Poisson}(\lambda_{i,t}), i=1, 2, \dots, N, t=1, 2, \dots, T,$$

$$\lambda_{i,t} = E[y_{i,t} | X_{i,t}, \eta_i] = \nu_i \mu_{i,t}$$

즉, 가산자료 형태인 종속변수 y 는 평균이 λ 인 프아송-감마 결합분포를 따르며, λ 는 프아송분포의 모수(μ)와 감마분포의 모수(ν)로 구성된다.

분석에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자는 데이터에서 제외하였으며, 진단서·보건증 발급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사례도 방문 횟수에서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의 보유가 의료이용 행태에 미칠 개연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며, 진단서 및 보건증 발급 등의 사유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 또한 민영의료보험과의 연계성이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 관련 연구에서는 내생성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관측되지 않는 개인의 특성이 민영의료보험 보유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이지 않는 개인의 특성 중 일부를 대응변수를 이용함으로써 내생성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조건부 상관 임의효과모형(conditionally correlated random effects model: CCR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 기초통계량 분석

2008~2014년 개인단위로 구성된 패널자료의 기초통계량은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본에 속한 개인들 중 71.5%가 민영의료보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래서비스의 평균 이용 횟수는 연간 13.7회로 나타나고 있다. 표본에 포함된 개인들의 평균 연령은 41.0세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49대 51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평균 2.0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67.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기초통계량(2008~2014년, 개인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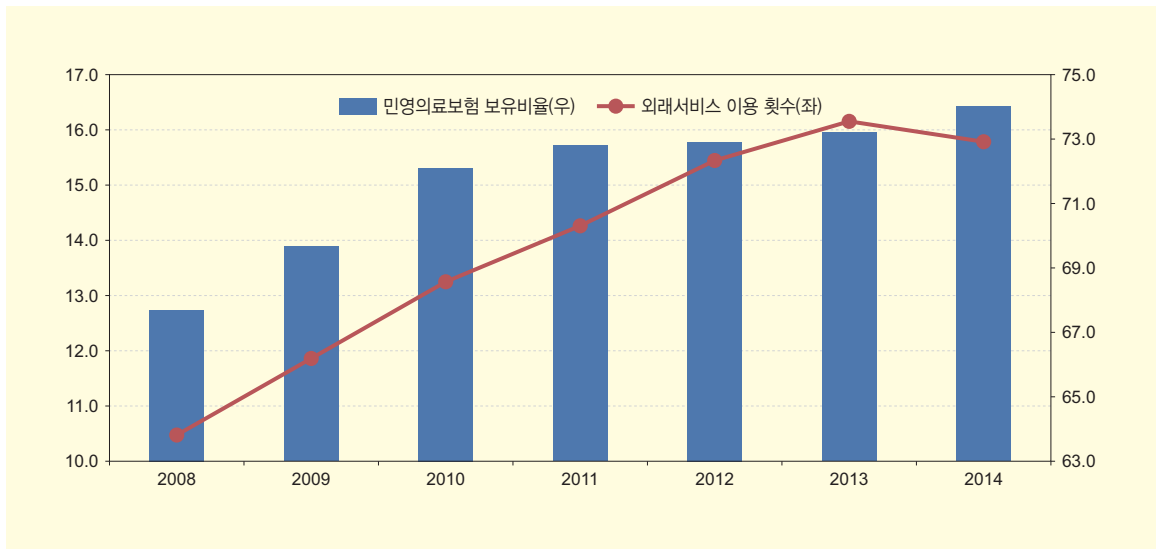
(단위: 회, 세, 명, 개)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외래서비스 이용 횟수	113,960	13.658	20.595	0	360
민영의료보험보유(=1)	113,960	0.715	0.451	0	1
연령	113,960	40.957	21.985	1	102
여성(=1)	113,960	0.511	0.500	0	1
가족 구성원 수	113,960	3.579	1.260	1	11
기혼(=1)	113,960	0.540	0.498	0	1
대학졸업(=1)	113,960	0.231	0.422	0	1
경제활동(=1)	113,960	0.464	0.499	0	1
소득 1분위	113,960	0.110	0.313	0	1
소득 2분위	113,960	0.187	0.390	0	1
소득 3분위	113,960	0.227	0.419	0	1
소득 4분위	113,960	0.240	0.427	0	1
소득 5분위	113,960	0.236	0.425	0	1
직장의료보험(=1)	113,960	0.673	0.469	0	1
만성질환(=1)	113,960	0.544	0.498	0	1
만성질환 개수	113,960	2.020	2.872	0	21
서울(=1)	113,960	0.149	0.356	0	1

출처: 한국의료패널조사 2008~2014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이하 〈표〉, [그림] 출처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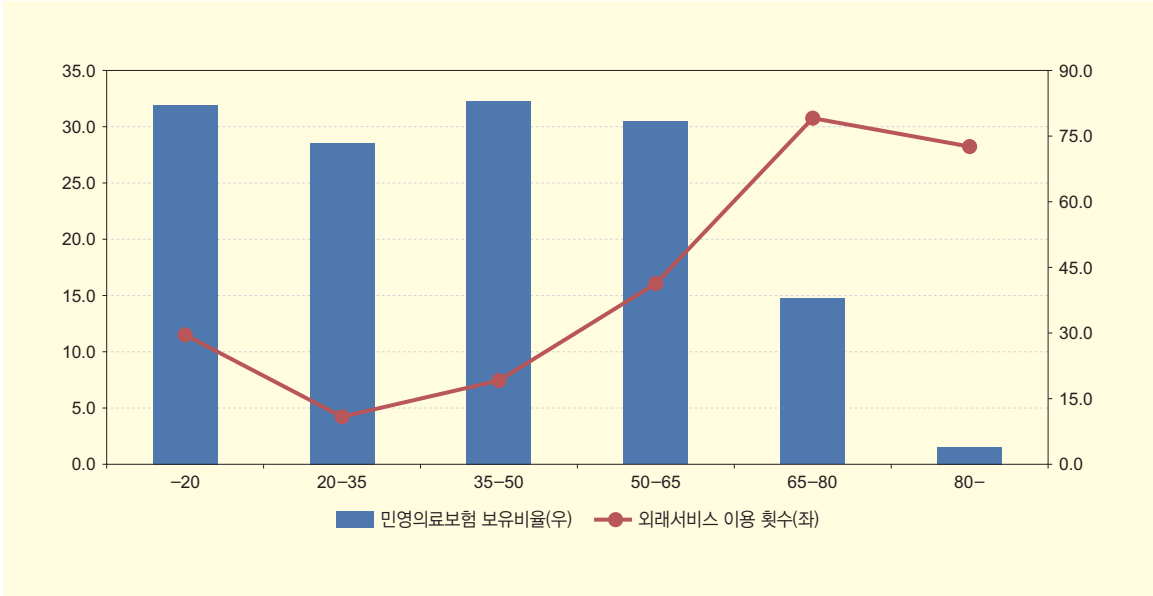
[그림 4] 민영의료보험 및 외래서비스 이용량 추세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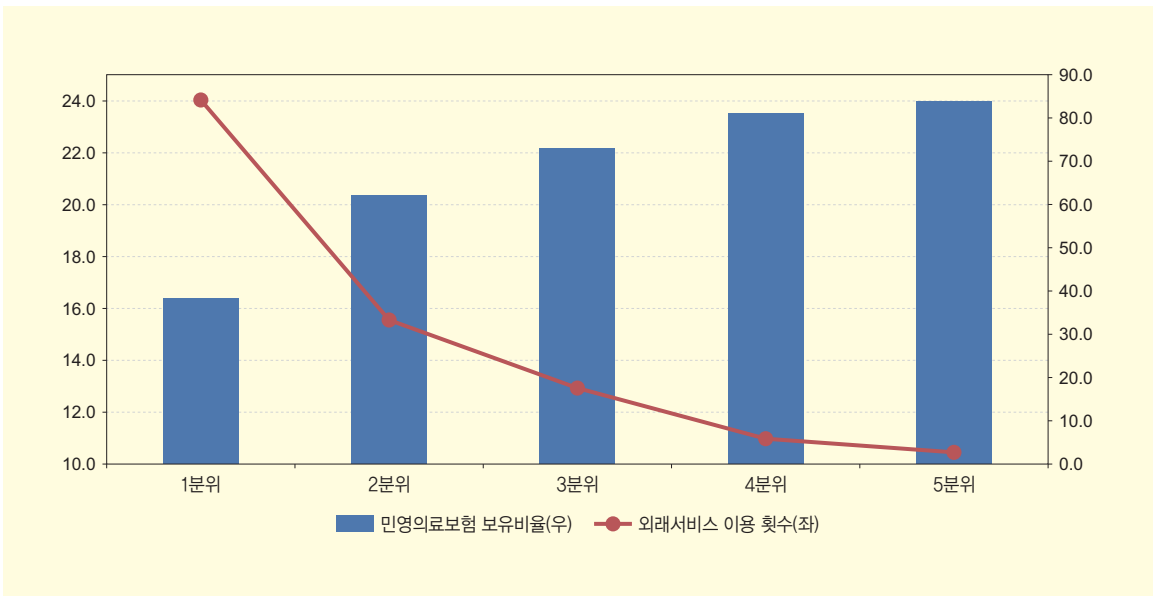
[그림 5] 연령대별 민영의료보험 보유비율 및 외래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 회)



[그림 6] 소득분위별 민영의료보험 보유비율 및 외래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 회)



[그림 4]는 민영의료보험 보유 여부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의 보유비율은 2008~2014년 동안 67.7%에서 74.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동 기간 개인들의 외래서비스 이용 횟수 또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0%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65세 미만 개인들의 민영의료보험 보유비율은 73.4~83.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이상의 연령에서는 65~80세 37.7%, 80세 이상 4.0%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외래서비스 이용 횟수는 연령에 따라 20세 미만에서 65~80세 구간까지 U자형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20~35세 구간부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 횟수가 30.8회로 증가 후 80세 이상 구간에서는 28.2회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소득수준에 따른 민영의료보험 보유비율 및 의료서비스 이용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1분위에서 소득이 높은 5분위로 갈수록 민영의료보험 보유비율이 38.2%에서 83.8%로 증가하여 그 차이는 45.6%p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외래서비스 이용 횟수는 저소득층인 1분위가 가장 많고,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3. 실증분석 결과

내생성 측면을 고려한 CCRE 모형을 이용하여 민영의료보험과 외래서비스 이용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표 6〉), 민영의료보험의 보유는 외래서비스의 이용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영의료보험 보유가 외래서비스 이용량의 증가에 기여할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외래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만 특정 연령 이후에는 외래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만성질환과 가구소득 수준은 외래서비스 이용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외래서비스 이용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원 수와 교육수준은 외래서비스 이용량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4년 기간 동안 민영의료보험 보유비율과 외래서비스 이용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민영의료보험 보유와 외래서비스 이용량 간의 상관관계

	외래서비스 이용 횟수	표준오차
민영의료보험 보유(=1)	0.069***	0.013
연령	-0.087***	0.002
연령×연령	0.001***	0.000
여성(=1)	0.357***	0.009
가족구성원 수	-0.063***	0.004
기혼(=1)	0.623***	0.012
대학 졸업(=1)	-0.119***	0.011
경제활동(=1)	0.044***	0.008
소득 2분위	0.015	0.009
소득 3분위	0.042***	0.010
소득 4분위	0.029**	0.011
소득 5분위	0.063***	0.012
직장의료보험(=1)	0.038***	0.007
만성질환(=1)	0.412***	0.008
서울(=1)	0.025*	0.011
상수	0.813***	0.026
관측치	113,960	
Log likelihood	-359,571.3	

주: 1. ***p<0.001, **p<0.01, *p<0.05

2. 민영의료보험 보유 여부, 연령, 만성질환 개수, 소득 등을 이용한 상관변수를 포함하여 분석

**내생성 측면을
고려한 분석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의 보유는
외래서비스의 이용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7〉은 앞의 분석을 연령, 소득수준, 서비스이용량에 따라 부표본을 구성하고, 각 부표본별로 민영의료보험 보유와 외래서비스 이용량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7〉 민영의료보험 보유와 외래서비스 이용량 간의 상관관계: 부표본 분석

	연령 < 65	연령 ≥ 65	소득 1·2분위	소득 4·5분위	외래서비스 이용 횟수 < 60	외래서비스 이용 횟수 ≥ 60
민영의료보험 보유(=1)	0.075***	0.063*	0.036	0.080***	0.067***	-0.027
연령	-0.134***	0.407***	-0.064***	-0.096***	-0.094***	0.025***
연령×연령	0.002***	-0.002***	0.001***	0.001***	0.001***	-0.000
여성(=1)	0.394***	0.077***	0.287***	0.352***	0.362***	-0.049**
가족구성원 수	-0.037***	-0.014*	-0.067***	-0.063***	-0.062***	0.002
기혼(=1)	0.709***	0.031	0.392***	0.859***	0.652***	-0.011
대학 졸업(=1)	0.022	-0.043	-0.200***	-0.120***	-0.123***	-0.008
경제활동(=1)	0.009	0.055***	0.082***	-0.005	0.035***	-0.032*
소득 2분위	0.015	-0.003			0.025**	-0.005
소득 3분위	0.056***	0.005			0.046***	-0.008
소득 4분위	0.048***	-0.018			0.036***	-0.019
소득 5분위	0.088***	0.008			0.076***	-0.037
직장의료보험(=1)	0.031***	0.037**	0.048***	0.062***	0.038***	0.001
만성질환(=1)	0.361***	0.797***	0.549***	0.393***	0.414***	-0.008
서울(=1)	0.042***	-0.100***	-0.024	0.044**	0.030**	-0.032
상수	1.314***	-13.649***	0.538***	1.028***	0.891***	3.025***
관측치	94,063	19,897	33,805	54,328	110,352	3,608
Log likelihood	-276,783	-80,014	-115,354	-165,403	-336,399	-16,920

주: 1. ***p<0.001, **p<0.01, *p<0.05

2. 민영의료보험 보유 여부, 연령, 만성질환 개수, 소득 등을 이용한 상관변수를 포함하여 분석

먼저 65세 미만의 개인들로 구성된 부표본과 65세 이상의 개인들로 구성된 부표본을 대상으로 각각 추정된 결과를 살펴보면, 민영의료보험의 보유가 외래 서비스 이용 횟수에 미치는 영향은 65세 미만의 그룹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 유의성 또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부표본을 구성·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4·5분위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민영의료보험 보유가 외래서비스 이용 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 1·2분위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민영의료

**민영의료보험이
외래서비스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계층,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크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경제주체들은
병원에 가게 될
상황이 발생하면
민영의료보험의 보유가
개인의 행태변화에
미칠 개연성이
높게 나타났다.**

보험 보유자들의 외래서비스 이용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연간 외래서비스 이용 횟수 60회⁶⁾를 기준으로 부표본을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60회 미만인 그룹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유가 외래서비스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60회 이상인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경제주체들은 병원에 가게 될 상황이 발생하면 민영의료보험의 보유가 개인의 행태변화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경제주체들이 연간 60회 이상 자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유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정부는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이후 보편적 접근성을 제고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보험제도가 발전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민영의료보험이 공보험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보장성 수준은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왔다. 즉, 그간 정부가 수행한 보장성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의 보장성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OECD(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의료비 중 정부지원 비중은 56.4%로 OECD 평균 73.4%보다 낮은 수준(35개국 중 29위)이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계소비에서 본인부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5.1%로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OECD 평균: 3.0%).

이에 2017년 8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확대하는 계획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총 30.6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정부 발표 이후, 일부에서는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30.6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새롭게 강화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재정

6) 외래서비스 이용 횟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0회가 가장 많고, 이후 급속히 줄어들다가 60회를 전후해서 감소 속도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적 측면에서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는 확대되는 보장성 정책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 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단계적으로 조정·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이용량 및 (고가)장비공급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민보건 의료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14.6회로 OECD 평균 6.9회보다 높은 수준이며, 의료장비의 공급 또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 시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⁷⁾ 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정부의 보장성 확대는 기존 민영의료보험의 기능을 정부가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민영의료보험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를 살펴보고, 도입단계에서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치한 분석을 위해서는 질병종류별 경중 및 치료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민영의료보험으로 인한 가격효과 외에 추가되는 검사항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실증분석에서는 정보의 제약으로 인해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고에서의 분석에 이와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의 가입 여부가 외래서비스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래이용 서비스의 경우 보장성 확대에 따라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인들의 행태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소요 추세 및 재정여력을 고려하여 보장성 범위와 대상에 대한 순차적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65세 미만, 소득계층 4분위 및 5분위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보험보유에 따른 행태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령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번 정부안에 포함된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비 부담 경감정책은 적절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새롭게 도입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수준의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보장성 확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 정책대상 우선순위 등을 염두에 둔 정치한 접근이 필요하다.

새롭게 도입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수준의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보장성 확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 정책대상 우선순위 등을 염두에 둔 정치한 접근이 필요하다.

7)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장비의 경우, 인구 100만명 당 우리나라는 27.2대인 반면 OECD 평균은 15.5대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근이 필요하다. 또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새로운 정책은 의료 공급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입원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부분이 재정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책당국은 건강보험 강화정책에 따른 재정 측면에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원마련 방안 또한 함께 고려하여 새로운 정책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험 40년사 통사편』, 2017.07.01.
 김윤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국회예산정책처, 201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 「국민
 보건의료실태조사」, 2017.11.
 보건복지부,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2017.08.09.
 의료정책연구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요재정 추계』, 2017.09.
 이옥희 외, 『2013, 2016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 건
 강보험정책연구원, 2014, 2017.
 조용운·황진태·김미화,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보험연구원,
 2011.08.
 최성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응용경제』, 제
 18권 제4호, 2016, pp. 79-97.
 허순임, 「한국 민간의료보험의 발달과 의료보장 정책에 대한 함의」, 『한국사회
 정책』, 제20집 제1호, 2013, pp. 187-222.

OECD, Health at a Glance, 20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hira.or.kr/>
 경향신문 <http://h2.khan.co.kr/201710070900001>

2018년 세법개정(안)

- 2018년 세법개정(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김종옥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과장
- 2018년 세법개정안 평가
신상화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8년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2018년 세법개정(안)의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주>

2018년 세법개정(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김종욱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과장

I. 2018년 세법개정의 배경 및 방향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유지하는 등 지표상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상황 및 소득개선 등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민생여건은 아직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주요국의 통상마찰 및 통화정책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확립 및 거시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여건하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대표적으로 근로 빈곤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대하였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먼저 지역특구에 소재한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세제 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위기지역 내 일자리 유지 및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대책 및 기업의 신성장기술 등에 대한 연구·투자 위험의 분담, 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근속과 지식재산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마련한 세법개정(안)이 한국 경제의 양적인 성장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 맞물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II. 2018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가. 저소득층 지원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해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근로 빈곤층의 소득 지

원을 강화하였다. 현행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수준(중위소득 50% 이하)이나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기초생보자'보다 소득이 많은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60~70% 수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단독가구의 소득기준을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령요건을 없애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홑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은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재산요건도 가구당 1.4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간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의 경우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근로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급 받게 되는 최대 지급액 구간을 기존보다 대폭 넓혀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도록 조정하였다. 지급방식도 현재는 다음해 9월에 한 번 지급하던 것을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9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장려금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금액도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이 밖에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여 하루 15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도록 하고, 15세~34세의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여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월 4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하여도 24개월 한도로 군장병의 복무기간 동안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나. 부동산세제 적정화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인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였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연 5%p씩 인상하여 2020년에 90%까지 상향하고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 인상 폭도 크게 조정하였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을 0.1~0.5%p(3주택 이상은 0.4~0.8%p)인상하고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세율도 0.25~1%p 인상하되 상가, 공장부지 등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을 유지한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15년 0.8%에서 '22년에는 1% 수준으로 높아져 선진국 수준(OECD 평균 1.1%)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금번 중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250만원 초과분에 대한 분납을 허용(현행 500만원)하고 분납기간도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까지로 확대(현행 2개월)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비과세하던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19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분리과세 시 인정하는 필요경비를 현행 60%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70%로 인상하되 미등록사업자는 50%만 인정하며 기본공제 금액도 등록사업자는

400만원으로 유지하되 미등록사업자는 200만원으로 축소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한다. 3주택 이상자가 월세 대신 받는 보증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때 과세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규모를 현행 보증금 3억원 이하면서 면적 60㎡ 이하인 주택에서 보증금 2억원 이하면서 면적 40㎡ 이하인 주택으로 축소하였다.

다. 역외탈세 방지

해외로 소득이나 재산을 이전·은닉하는 역외탈세는 대표적인 조세정의 침해행위라는 인식하에 역외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였다.

해외금융계좌의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를 내국법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에서 개인과 특수관계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계좌로 확대하고 개인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를 법인까지 확대하였다. 해외 부동산의 취득과 투자 운용내역에 대한 신고의무를 해외부동산 처분내역까지 확대하되 2억원 미만인 해외부동산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외부동산의 취득·운용·처분 미신고 시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신설하였다. 해외부동산 미소명 시에도 해외금융계좌 미소명과 마찬가지로 미소명·거짓소명한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 대상을 현직법인뿐만 아니라 해외영업소 미신고까지 확대하며 과태료금액도 개인·법인 각각 건별 300만원·500만원에서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국내외거래 및 거주자

간의 해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무신고 7년·과소신고 5년에서 모두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라. 비과세·감면 정비

국내 소비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새로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농·수·축협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조합원과 회원에 대하여는 3년 연장하되, 준조합원은 예정대로 2019년부터 저율(19년까지 5%, '20년부터 9%) 분리과세한다. 가액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하여 '19년 7월부터 인지세를 가액에 따라 차등과세(5만원까지 200원, 5만~10만원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하고 코스피 200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를 '19년 4월부터 모든 추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으로 확대한다.

2.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가. 일자리 창출·유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하고 위기지역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에 위기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 감면업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자산 투자 시 투자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3%

에서 7%로,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임금감소분에 대해 세액공제(기업 10%·근로자 50%)를 허용하는 과세특례를 위기 지역 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시 1년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한다. 지역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시 투자금액 요건을 대폭 낮추고 고용요건을 새롭게 추가(예: 기업도시 제조업의 투자금액 요건 100억원을 2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신규고용 요건 50명 이상을 추가)하는 등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고용증대세제의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고 청년친화기업의 청년 정규직 고용시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그간 대기업은 받을 수 없었던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 시 세액감면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및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였다.

나. 혁신성장

기업이 신성장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하여 연구·투자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정부가 세제 지원을 통해 함께 분담하고, 핵심인력의 장기근속과 지식재산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벤처기업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업이 올 7.1.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한 R&D 설비 등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은 감가상각 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하여 가속상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하고, R&D 비용을 매출액 대비 5% 이상 투자하여야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매출액 대비 2% 이상으로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다. 300만원 한도인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금액을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2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5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에만 허용된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 납입액 손금 산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간접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던 것을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간접출자하는 경우까지 허용하고 코스닥 상장 주식과 연계한 연기금의 차익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여 벤처기업과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3. 조세체계 합리화

가.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 개편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환경비용에 비례하여 조정하되 전기요금 인상이 없도록 하고 각종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kg당 36원 : 91.4원인 현행 발전용 유연탄 : LNG의 제세부담금을 46원 : 23원으로 조정하여 제세부담금 비중을 환경비용(85원 : 43원)에 맞도록 조정하고 '08년 이전 등록된 노후 승용·화물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

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143만원 한도로 1년간 70% 감면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여 환경개선 재원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 지원한다.

나.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면세점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지역별 특허 수를 사전에 공표하는 등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높인다. 현재 면세점의 특허기간(5년)은 중소기업에 한해 1회 갱신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2회까지 갱신을 허용하고 대기업에 대하여도 1회 갱신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특허 수 결정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매년 초 지역별 특허 가능 수를 공지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면세점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중견 면세점은 지자체별로 상시 진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대기업 면세점의 신규특허 발급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국제조세 분야에 있어서는 OECD 등 국제기준을 반영하고 제도를 보완하였다. 내·외국자본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제도를 폐지한다. 국내사업장의 범위를 BEPS 프로젝트 기준에 따라 확대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확대하고,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하도록 보완하였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높을수록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도 높도록 차등화하였다.

기업상속 이후 경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기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하는 경우 현재는 기업상속공제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추징하나, 기업상속공제금액에 자산처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하도록 개선하였다.

총접대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문화접대비 대상에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고, 공연장 입장권 가격 전액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하여 입장권 가격에 포함된 식사·주류 등의 가격도 추가로 문화접대비 공제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다.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03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였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에서 0.025%로, 가산금도 매월 1.2%에서 0.75%로 인하하고 2020년부터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1일 0.025%로 부과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는 각각 공급가액의 0.5%와 1%에서 0.3%와 0.5%로 인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는 가산세로 전환하여 부과액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대폭 낮추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변경하고 실제 소유

자의 재산으로 증여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자에게 수탁된 신탁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후 3개월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정 내용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과세관청에 부과하고, 그간 폐업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생략해 왔으나 폐업한 납세자에게도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의무화하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와 조사 공무원 모두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였다.

2. 향후 추진일정

금번 세법개정에 포함된 총 19개 법률의 개정안은 8월 중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Ⅲ. 세법개정 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1. 세법개정 세수효과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약 2.5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증가 원인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조합 예탁금 등 저율 분리과세 전환 등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고용증대세제 확대 및 가산세율 개편 등이다. 세수효과에 대한 세부담 귀착은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약 3.2조원이 감소하고 고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은 0.7조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세법개정안 평가



신상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7월 30일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 글은 세법개정안 내용을 개정 목표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정리하고, 개편 효과의 크기로 예상하는 주요 개편 내용들을 중심으로 개편안을 평가하도록 하겠다.

I. 2018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의 목표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꼽았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세법개정안들을 크게 네 가지 정책 기본방향 아래 제시하고 있다. 1) 소득분배 개선, 2) 소득과 자산 간 과세 형평성 제고, 3)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지원, 그리고 4) 조세체계 합리화가 그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정책 기본방향 아래 19개 법률을 대상으로 총 375개에 달하는 구체적 개편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일자리·소득

개선 지체로 체감 경기와 민생 여건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지표상으로 경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민생과 맞닿은 질적 성장 측면에서 부진하다는 것이고 이를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보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정책 기본방향은 작년 세법개정안의 정책 기본방향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일자리 지원,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성 제고, 그리고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정책 기본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2017년 정책 기본방향 중 세입기반 확충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 기본방향들은 2018년 정책 기본방향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17년 세법개정안의 배경이 된 경제 문제점들, 즉, 고용 없는 성장, 가계-기업 및 가계 간 소득 격차 확대 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1〉 2018년 세법개정안의 법률별 개정 수

(단위: 개)

구분	법률명	법률 변경 개수	세부 구분	
			세부 구분	세부 변경 개수
1	「개별소비세법」	1	개소법	1
2	「관세법」	60	관세법	48
			관세령	11
			관세칙	1
3	「관세사법」	3	관세사법	2
			관세사령	1
4	「교육세법」	1	교육세법	1
5	「국세기본법」	17	국기법	14
			국기령	3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	국조법	6
			국조령	1
7	「국세징수법」	2	국징법	2
8	「농어촌특별세법」	1	농특세법	1
9	「법인세법」	26	법인법	21
			법인령	5
10	「부가가치세법」	17	부가법	11
			부가령	6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	상증법	7
			상증령	5
12	「세무사법」	3	세무사법	3
13	「소득세법」	56	소득법	43
			소득령	13
14	「인지세법」	1	인지칙	1
15	「조세특례제한법」	145	조특법	138
			조특령	7
16	「종합부동산세법」	5	종부법	3
			종부령	2
17	「주세법」	3	주세법	3
18	「조세범처벌법」	4	처벌법	4
1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8	환특법	4
			환특령	4
20	각종 부칙	3	소득법 부칙	1
			교통세법 부칙	1
			상증법 부칙	1
총합			375	

출처: 「2018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먼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확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금액 인상,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의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소득·자산 과세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는 부동산세제 적정화 정책들이 마련되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보다 누진적으로 개편하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 이룬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로 일자리 창출·유지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한 각종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위기지역 내 창업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강화되었다. 전국 곳곳에 지정된 지역 특구의 경우 고용과 연계하여 세제지원 정도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개편안이 제시되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로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가 신설되었고,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 관련 세액공제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이 밖에도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제도들도 다수 도입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전략으로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안과 다양한 기존 조세제도들의 개편안들이 마련되었다.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안의 경우 발전용 유연탄과 LNG 간의 세세부담금을 조정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눈에 띄며,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또한 신설되었다.

2017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등이 두드러진 변화

였다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대폭 확대가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경제 여건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정책 기본방향에 포함되었던 세입기반 확충은 이번 정책 기본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입기반이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서민 소득 지원정책을 통해 소득 재분배 정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요약할 수 있는 부동산세제 개편 역시 다수의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들이 체감하기는 어렵겠지만 친환경적 방향으로의 발전용 에너지원들에 대한 세세부담금을 조정할 필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요 사항별로 제도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을 평가하도록 하겠다.

II. 소득분배 개선

소득분배 개선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으나 그중에서도 근로장려금 확대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도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 가구 수가 크며 지원금 수준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보면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들에서 중위소득 60~70% 수준까지 지급 대상 가구를 확대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기존 중위소득의 30%(생계급여)에서 중위소득의 50%(교육급여) 수준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어 기존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거의 유사하다. 즉, 근로장려금 지원 대

상 확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그것에 비해 크게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득요건 완화와 더불어 재산요건 역시 1.4억 원 미만 가구에서 2억원 미만 가구까지로 확대되고 단독가구에 대한 가구주 연령요건이 폐지되었는데, 그 결과 2016년 약 166만가구에서 2019년 약 334만가구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가구 중 약 8.4%의 가구들을 지원하던 제도가 약 17.3%의 가구들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니 제도 확대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지원금 수준 역시 큰 폭으로 상향되었다. 가구 유형별로 기존 85만원(단독), 200만원(홀벌이), 250만원(맞벌이)이었던 최대지급액이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와 더불어 최대 지급액 구간 역시 모든 가구 유형에서 확대되어 전체적인 지원액 수준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액 확대에 따른 2019년 소요예산을 약 3.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1.2조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표 2〉 근로장려금 확대 방안

		현행	개정안
연령요건		30세미만 단독가구 배제	30세미만 단독가구도 포함
소득요건	단독	1,3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홀벌이	2,1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 재산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가구당 2억원 미만 * 재산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85	150
	홀벌이	200	260
	맞벌이	250	300
최대 지급액 구간 (만원)	단독	600~900	400~900
	홀벌이	900~1,200	700~1,400
	맞벌이	1,000~1,300	800~1,700
지급방식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근로소득자)
지급규모		1.2조원	3.8조원
		166만가구	334만가구

출처: 「2018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재인용

1)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집계된 전체 가구수는 약 1,984만가구임

소득요건 완화를 통해 대상 가구를 확대하려는 정책방향은 근로장려금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기존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가구 수준에 머물렀는데, 근로장려금이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닌 근로와 연계한 복지제도로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가구들까지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 도입 취지와도 부합한다. 명목GDP에서 근로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약 0.07%로 미국의 약 0.3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이 값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한국의 근로장려금 지출액이 명목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2008-2016년)

(단위: 억원, %)

연도	근로장려금 지출액(A)	명목GDP(B)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A/B)
2008	4,537	11,044,922	0.041
2009	4,369	11,517,078	0.038
2010	4,020	12,653,080	0.032
2011	6,140	13,326,810	0.046
2012	5,618	13,774,567	0.041
2013	7,745	14,294,454	0.054
2014	10,565	14,860,793	0.071
2015	10,573	15,641,239	0.068
2016	11,416	16,374,208	0.070

출처: e나라지표,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6, 검색일자: 2018.08.09.)
 _____,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GDP)」(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 검색일자: 2018.08.09.)

〈표 4〉 미국의 EITC 지출액이 명목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2008-2016년)

(단위: 백만미국달러, %)

연도	EITC 지출액(A)	명목GDP(B)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A/B)
2008	50,669	14,718,582	0.344
2009	59,239	14,418,739	0.411
2010	59,562	14,964,372	0.398
2011	62,906	15,517,926	0.405
2012	64,129	16,155,255	0.397
2013	68,084	16,691,517	0.408
2014	68,339	17,427,609	0.392
2015	68,525	18,120,714	0.378

출처: IRS, 「Individual Complete Report (Publication 1304), Table 2.5., 「SOI Tax Stats-Individual Income Tax Returns」(<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individual-statistical-tables-by-size-of-adjusted-gross-income>, 검색일자: 2018.08.09.)
 World Bank Data, 「GDP(current US\$)」(<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end=2017&locations=US&start=1960&view=chart>, 검색일자: 2018.08.09.)

재산요건의 경우 기존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었는데, 이는 소득요건 완화에 따른 재산요건의 현실화로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60~70%에 속하는 가구들의 평균 자산총액은 약 1.9억원으로 조사되어 재산요건 완화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장려금 제도가 수급 가구의 노동공급과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진행된 바 있다. 연구별로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근로장려금 제도는 대체로 수급가구의 노동참여 정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이 증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나, 그 정도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저소득·저자산 근로 가구에 지급한다는 근로장려금의 제도 설계는 소득 요건 상한액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이상 가구소득 불평등도를 완화하는 것을 담보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보다 확대되었기에 근로장려금 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근로장려금 이외에도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확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등의 개선안들이 존재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급액을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포함시켰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의 경우 기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15~34세)을 대상으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신설하였다.

정부 추산 세수효과를 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 감소분은 약 2.9조원으로 추산되었다.²⁾ 여타 세부 정책들의 세수효과는 정부에서 제시하지 않았으나, 5년간 소득세 부분의 총세수감소액이 약 3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번 세법개정안의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정책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근로연계 복지제도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소득분배 개선의 정도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효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해당 제도 확대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추후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Ⅲ. 소득과 자산 간 과세 형평성 제고

소득과 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부동산세제 적정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부동산세제 적정화 방안은 크게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지난 7월 논의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공정

2) 근로장려금(-2.6조원), 자녀장려금(-0.3조원)

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90% 수준까지 인상하고,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수정안이 제시되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갖는 누진성은 이번 개편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의 경우 기존과 변함없이 0.5%의 세율이 유지되나 과세표준 6~12억원, 12~50억원, 50~94억원, 94억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각각 0.1%p, 0.2%p, 0.3%p, 0.5%p씩 세율을 인상하였다. 누진성 강화와 더불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3%p 더 인상하여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다시 한번 차등화하였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격차를 더욱 벌려 누진성이 강화되었다.

기본적으로 누진성을 갖는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개편안은 자산 격차를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이상의 주택들에 대한 누진성을 강화한 것은 고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이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을 더욱 높인 것 역시 다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을 증가시켜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려는 정책 의도가 드러난다.

그러나 부동산세제 중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은 의심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약 35만명이 총 7천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게 된다. 1인당 평균 약 2백만원 수준의 추가적인 세부담인데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하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여기에

낮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1가구 1주택자에 높은 공제금액,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의 효과까지 고려해보면 누진성 강화와 다주택 보유 억제라는 종합부동산세 정책 방향은 부동산 투기억제가 아닌 부동산 자산 내 구성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그간 유예되어 왔던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세액산출 방식이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는 그간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간의 개선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이 지나치게 큰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예에 따르면, 임대소득이 1,956만원인 납세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모든 혜택 조건들을 만족할 경우 산출되는 결정세액은 6만 5천원에 불과하지만 미등록 시 109만원이 산출되어 약 17배의 격차가 나게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기는 하나, 향후 임대소득 양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혜택 수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지속가능 성장 지원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크게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담고 있다.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으로 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존 기업들 그리고 새롭게 창업(사업장 포함)하는 기업들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었다.³⁾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투자액과 상시근로자 수 조건을 통한 감면 한도를 설정하여 비적격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한도는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존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함께 마련되었다.

고용 위기 지역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한 지원은 지난 4월 발표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대책」을 보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지정된 9개 위기지역들은 모두 조선업이 밀집한 지역들이며 군산시의 경우 한국 GM 군산공장 생산 중단으로 위기가 가중된 지역인데,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에 세제 혜택이 실제 창업 및 투자 증대로 이어질 경우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유지되어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애초에 9개 위기지역들에서 조선업이 발전한 것은 그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선업 위기에서 촉발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해당 조세지원 제도로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의 경우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재설계되었다. 현재 존재하는 연구개발특구,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 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여수해양박람회, 농공단지,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아시아문화중심지, 금융중심지 등의 지역특구들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를 설정함에 있어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한도를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투자금액 기준을 낮추는 대신 고용요건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하였다.

지역특구들 중 연구개발특구를 제외하면 조세지원 실적이 미미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은 투자금액 기준을 대폭 낮추어 지역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고용요건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정책 의도를 담고 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은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으로 구성된다. 두드러진 세제지원안은 존재하지 않으나 블록체인 및 양자컴퓨터 기술 등 신기술을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반영하고, 혁신성장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 신기술 개발, 우수인력 유치, 핀테크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마련되었다.

3)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 9개

V. 조세체계 합리화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개편안은 크게 기존 조세제도의 개편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조세제도의 경우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을 우리 세법에 반영하고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통합하여 재설계하는 등의 변화가 존재한다.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이 주목할 만한데, 소비세제에 대해 친환경 기능을 강화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 조정을 꼽을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6원/kg에서 46원/kg으로 높이고 LNG의 제세부담금은 91.4원/kg에서 23원/kg으로 크게 낮추었다. 그 결과 유연탄과 LNG 연료 간의 제세부담금 상대비율이 파격적으로 역전되었다. 기존에는 제세부담금의 상대비율이 0.4:1 수준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2:1이 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환경피해 비용으로 대표되는 외부비용을 상대적 크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내부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유연탄의 세율은 올리는 대신 LNG의 세율은 대폭 낮추어 세수중립적으로 조정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외부비용을 충분히 반영하려면 전기요금 역시 어느 정도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태도 또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 밖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 교체로 인한 신규 승용차 구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것

도 친환경적 세금감면 조치의 연장이다.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내년부터 개별 소비세법으로 전환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21년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다. 일몰연장은 해당 세목은 목적세로 세수를 경직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15조원 수준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대부분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배분되고 있는데, 복지나 환경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예산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목적세를 일몰시키고 개별소비세(일반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지적은 이와 같은 필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제도를 불가피하게 연장했다면,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배분 기준이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VI. 세수 효과

마지막으로, 이번 세법 개정 결과 변경될 세수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5년간 총 -2.5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순액기준 계산법에 근거한 것인데, 순액기준 계산법이란 전년도 대비 세수증감분을 매년 계산하고 이를 다시 합산한 수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의해 소득세 부문의 세수감소가 5년간 약 3조원가량으로 컸으며, 법인세의 경우에도 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확대에 5년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

〈표 5〉 연도별 세수효과(순액기준)

(단위: 억원)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계	-25,343	-32,810	5,621	-4,000	4,664	1,182
소득세	-30,073	-38,996	8,024	-846	1,011	734
법인세	-4,581	-1,892	-3,660	-3,146	3,661	456
부가가치세	-939	-1,308	393	-8	-8	-8
기타	10,250	9,386	864	-	-	-

출처: 「2018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재인용

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조합 예탁금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전환 등으로 인한 증세 효과는 5년간 1조원가량으로 제시되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경우 조세정책이 아닌 재정지출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경우 순액기준 5년간 약 4천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정책기조를 고려하면 소폭의 세수증가 효과를 갖는 이번 개편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인 세수확보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및 내수 경기의 침체라는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수확보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되나,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기적 조세정책 방향 역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VII. 결론

이상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간략히 요약하고, 주요 개정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자본에 대한 과세 강화, 일자리창출·혁신성장을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세법개정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여러 세부안 중에서도 근로장려금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누진성 강화 방안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지난 2017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고려해보면 지난 두 번의 세법개정안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문에서의 누진성 강화와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과 더불어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제시되었고, 법인세 대한 과세 역시 누진성이 강화되었다. 종합부동산세 및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한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역시 정부의 큰 조세정책 방향 중 하나다.

지난 2년간의 세법개정안들의 또 다른 특징으로 세수 확보 방식이 세목별 누진성을 강화시키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세수 증대 효과를 낳은 대표적인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강화, 대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강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요약된다. 이는 기존 세제의 누진성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이며 지난 2년간의 세제개편을 통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세목별 누진성 강화라는 조세정책으로 복지 및 노동 분야에서의 재정 지출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는 없다. 누진성 강화를 통해 충당할 수 있는 세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향후 보다 보편적 증세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한 필요하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_____, 「2018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통계청,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e나라지표,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6,
검색일자: 2018.08.09.

_____,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GDP)」,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
검색일자: 2018.08.09.

IRS, 「Individual Complete Report (Publication 1304), Table 2.5」, 「SOI Tax Stats—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https://www.irs.gov/statistics/soi-tax-stats-individual-statistical-tables-by-size-of-adjusted-gross-income>,
검색일자: 2018.08.09.

World Bank Data, 「GDP(current U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end=2017&locations=US&start=1960&view=chart>,
검색일자: 2018.08.09.

정책토론포럼

■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개요

- 주 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 일 시 2018년 7월 10일(화), 15:00~17:00
- 장 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 주 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프로그램

시간	내용
14:30~15:00	등록
15:00~15:10	개회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15:10~15:40	주제발표 및 토론 [발 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15:40~16:40	[좌 장] 운영진 계명대학교 교수 [토 론]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성명재 홍익대 교수 윤종건 국세청 소비세과장 임성빈 수제맥주협회 회장 정 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가나다 순)
16:40~17:00	객석토론 및 폐회

* 본 원고는 2018년 7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요약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홍범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 7월 10일(화) 대 한상공회의소에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 본 공청회는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 유관부처 담당자, 관련업계 종사자, 언론인,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임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되었고, 운영진 계명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토론과 객석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공유함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음

〈발표 내용〉

- 글로벌 맥주기업의 공격적 해외진출전략, FTA 확산, 소득증대 및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수입맥주가 우리나라 맥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실제출고량 기준)은 2013년 4.9%에서 2017년(추정) 16.7%로 연평균 37% 성장

- 수입맥주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종가세 체계하에서 과세표준의 차이로 인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의 세부담 차이가 부각됨
 -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장 출고가격에는 제조원가 외에 이윤과 판매관리비가 포함되는 데 비하여,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윤이나 판매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단일 주류로서 우리나라 주류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맥주시장에서 현행 과세체계에서 오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불완전경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입맥주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세제로 인한 경쟁상의 불형평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여기서 제시되는 개선방안은 오로지 세제로 인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의 불완전경쟁 요인을 제거하여 평등한 경쟁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타의 경쟁적인 요인을 제약하는 것은 아님
 - 보다 전반적인 주세체계의 개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제1안)** 맥주에 한정하여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 종가세 방식이 유발하는 세제상의 불형평성을 해소
 -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종량세율의 도출은 당장은 어려우므로, 세수중립적인 수준에서 종량세율을 산출
 - 매년 물가인상에 따른 주기적인 조정을 반영



■ 전면적인 종량세율로의 전환은 증류주까지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 종량세 수준이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대중주인 희석식 소주의 가격을 크게 인상시켜 저가주 소비층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증류주를 생산하는 국내주류업계에도 타격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주종에 따라 과세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과세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은 없음
- 또한 같은 주종에 대해서도 알코올 도수에 따라 종량세 세부담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해외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제2안) 국내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을 통일시키는 방안

- 수입맥주 과세표준에 수입업자의 일반판매관리비(광고·홍보비 포함)와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의 형평성을 도모
- 제2안을 채택하면 수입주류와 국내제조주류의 과세표준을 상당히 근접시키며, 태국의 경우 종가세의 과세표준으로 제시소매가격을 통하여 생산자와 수입자의 과세표준을 근접시키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1년 7월 이전에 이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다 통상마찰 완화를 목적으로 이미 한 번 변경한 바 있고, 회계상 비용 항목 조정을 통해서 조세회피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 (제3안)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 현행 제조·생산단계 과세에서 도·소매유통단계 과세로 확대하는 방안임

• 이론상 개별소비세는 최종소비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경우 세원관리 및 탈세 방지의 어려움, 그리고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의 과도한 발생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각 단계별 출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세원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행위와 탈세행위가 증가함



토론 요약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종량세 체계로 전환해야

강성태 /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이번 공청회의 목적이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의 불균형적 과세 차별의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가세하에서는 과세제도를 통하여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에 가격차별이 발생되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 국산맥주가 불리한 경쟁구도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는 발제자의 세 가지 방안 중 다른 방안들은 부작용이 많고,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는 견해입니다.

먼저 가격적 측면 외에 비가격적 규제에 있어서 다음의 4가지 사항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 출고가격 신고제도는 국산주류에만 적용되고, 수입주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산주류에 적용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수입주류에도 적용하여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수입맥주가 수입신고 가격은 낮게, 판매신고 가격은 높게 설정하여 가격을 할인하고 있어, 국산맥주는 이에 대응하여 경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품 제공 한도까지 규제를 받는 실정이라서 이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국산맥주에는 환경부의 빈 용기 보증금 정책이 적용되나, 수입맥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맥주도 용기를 사용하므로 그 회수와 관련된 보증금 정책이 똑같이 적용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4) 우리나라 특성상 보리 재배량이 많지 않아, 전체 맥주원료의 3.5% 정도를 국산맥주보리로 충

당하고, 나머지 96.5%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데, 현재 30%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완제품인 수입맥주는 FTA로 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이 관세율의 차이만큼 국산맥주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이 불리합니다. 이에 맥주원료 수입분에 대해서 (관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맥주산업 개편과 관련해서 고려할 3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종량세율의 결정시, 사회비용 측면에서는 높은 세율이, ‘저알콜 저세율·고알콜 고세율’ 측면에서는 낮은 세율이 바람직한데, 현재 맥주 세율은 증류주 세율과 같은 72%입니다. 이번 종량세제의 개편 목적이 수입맥주와의 조세중립성 확보라면, 현재의 세율 인하가 국내의 다른 주종 간 조세 균형에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종가세하의 조세부담 수준으로 종량세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 (종량세 방식) 증류주 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주는 고알콜주로 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지만, 서민주로 인식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므로 완충기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논리적 설명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3) 1967년 종량세제에서 종가세제로 전환된 후 50년이 넘었기에 주류에 대한 세제 변경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종가세제하에서 이루어진 국산맥주사들 간의 경쟁시장 구조에 혼란을 주지는 않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면 즉시 시행해도 될 것입니다. 만약 혼선이 예견된다면, (예를 들어 현행 종가세하에서 주종 품목을 정하여 시설구조라든지 판매망을 형성하여 경쟁하고 있다면) 제도 개편으로 경쟁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새로운 종량세제의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

김동호 / 중앙일보 논설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의 표를 보시면 OECD 선진국의 대부분이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72년부터 증가세 방식으로 과세하여 왔는데, 당시에는 국민소득이 약 300달러였습니다. 4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3만달러입니다. 산업 환경, 주세 환경이 변하였고, 국민소득이 100배(300달러 → 3만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이제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고급주를 마시는 환경으로 변하였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고가의 사케를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백주가 있는데, 백주에 대해서는 증가세와 종량세의 과세방식을 혼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유럽은 포도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보드카는 원래 저가지만 고급화된 보드카는 70만~80만원 선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고급술이 없으며 현재 주류산업이 붕괴 상태에 있습니다.

본 공청회의 세 가지 방안 중 2, 3안은 모두 '뺨질'에 불과한 것이므로 차제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종량세로 과세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앞 글자를 따 3M으로 불리는 소주(마오, 무라오, 모리이조)는 한 병에 40만~50만원 선으로 위스키보다 고가며, 종량세 방식이라 주류회사

의 R&D 투자가 가능해 고급술로 제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고급주의 제조 없이, 언제까지 소주를 마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예상되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종량세를 채택하면 (소주) 가격이 인상되며, 위스키의 가격이 인하됩니다. 그러나 주류환경의 변화와 함께 위스키의 수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더구나 세수에서 주세의 비중이 낮아 증세 이슈는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련 부처에서 주류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차등화된 종량세 과세방식을 채택하여 맥주부터 종량세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종량세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세논리로 보았을 때 증가세의 세율을 낮춰줘야

성명재 / 홍익대 교수

발표자께서는 주류 가격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주세를 올려도 소비감소 효과가 작고 저소득층에 부담이 증대되기 때문에 세율을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음주로 인한 외부불경제가 크기 때문에, 가격이 비탄력적이면 소비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재정·조세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탄력적이라는 점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술·담배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응해야지, 단기적 처방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소년기에



술·담배의 가격이 높으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차세대의 음주율·흡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많고, 선진국은 그런 의미로 증류주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져 주세부담이 역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술값이 싸서 저소득층도 부담 없이 술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값이 비싸서 저소득층이 술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면 저소득층의 술 소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세부담 걱정도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복지 국가일수록 주세율과 술값을 높게 책정한 결과 저소득층이 술을 많이 안 먹는 구조로 주류 소비 패턴이 바뀌어 결과적으로는 외부불경제도 줄어들고, 역진성도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을 비교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면, WTO 관련된 부분은 1980년대 말이 아니라 1990년대 중반입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WTO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고, 일본은 그에 앞서서 패소했습니다. 일본은 WTO 패소 후 증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였는데,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은 소주와 위스키 간 세전가격 차이가 4배밖에 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당시에 그 차이가 12.5배였습니다. 일본은 희석식 소주가 아닌 증류식 소주 중심이었고, 일본의 소주는 대중주가 아니며 소비 비중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나아가 일본은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종량세로 하든 증가세로 하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증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인 멕시코는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종량세를 채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초까지 종량세였습니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종량세에서 증가세로 과세방식

을 전환한 것입니다.

음주로 인한 외부불경제는 술의 가격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그 비용을 세금으로 환수한다고 했을 때는 가격이 아니라 술로 인한 폐해, 즉 손해본 것만큼을 세율로 없애서 과세하는 것이 맞고 이런 의미에서는 종량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증가세 체계를 유지해오며, 서민주라고 하는 값싼 술이 널리 보급되어 그 소비 패턴이 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가세 체계를 유지하며, 나름대로 균형을 얻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종량세로 전환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세율로 바뀌어야 하므로 소주산업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외국은 맥주, 위스키, 와인의 세율체계를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맥주의 수입 비중이 늘어나는 문제의 핵심은 국산맥주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현행 주세체계가 옛날부터 지속되어 온 점에 비추어보면 문제의 핵심을 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 이유가 균색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세체계는 나름대로 균형을 갖고 있는데, 맥주만 따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맥주만 종량세로 바꾸면, 증류주에 대해서도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며, 위스키에 비해 소주의 소비 수준이 많기 때문에 소주에 맞추어 종량세로 전환하게 되면 덩달아서 이득을 보는 것은 수입 위스키일 것입니다. EU와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주류의 과세방식을 종량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증가세로 할 것인지는 조세주권 사항입니다. 양자협상의 경우를 고려하여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가 사치세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20~30년 전 맥주는 고가의 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중화된 맥주의 세율을 많이 낮춰야 합니다. 맥주만 보면 현행 증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맞지만, 우리나라 개별소비세제 전반과 관련된 것이므로 맥주 하나만 놓고 주세율 체계를 개편하면 우리나라 개별 소비세제 구조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맥주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유지한 것은 세수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세는 소비억제를 위한 세금이 되어야지, 세수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맥주의 세율이 72%라고 했는데, 굳이 종량세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증가세의 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조세논리로 보았을 때 종량세로 바꾸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맥주의 종량세 전환 건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

윤종건/국세청 소비세과장

오래전부터 주세의 과세체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며, 최근에는 거의 매일 각종 언론에서 수입맥주의 급증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증가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분석된 맥주의 종량세 전환을 기재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맥주의 종량세 전환을 건의한 이유입니다. 증가세와 종량세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 제도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나라 주류 시장의 환경에 맞는 제도인가의 문제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최근 수입맥주의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로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수입맥주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데에는 소비자의 기호 변화와 함께 수입맥주에 비해 국산맥주의 주세부담이 과중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맥주 종량세 전환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 효과로는 국산맥주의 세제상 역차별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고, 질에 따른 맛 경쟁이 용이해져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시설투자에 따른 경제 활성화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발제자의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주류의 종량세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맥주와 와인인 대중주인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증류주인 소주가 대중주이며, 모든 주류에 대한 종량세 전환은 대중주인 소주에 높은 주세가 부과되므로 서민층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물가인상 시 실질세수입 감소가 일어날 수 있어 일정한 주기로 물가인상률을 연동하여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발제자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맥주시장에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향후 주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제맥주에 적절한 수준의 경감 혜택 줘야

임성빈/수제맥주협회 회장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맥주의 종량세제로의 전환에 대하여 한국수제맥주협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수제맥주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인건비나 재료·장비 등에 주세가 책정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종량세가 도입되면, 이러한 걱정 없이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으며, 수제맥주 업체들의 성장과 대중화가 확대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종량세가 도입되더라도 수제맥주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감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대규모 맥주 양조장에 비해 높은 원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수제맥주 양조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간 200만배럴 이하로 생산하는 수제맥주의 경우 첫 6만배럴까지는 배럴당 7달러, 일반생산자 또는 수입맥주업자는 배럴당 18달러의 연방세를 납부하는 법이 있어 소규모 양조장에 61.2%의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美의회를 통과한 수제 음료산업 근대화 관련 세금 개정안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첫 6만배럴까지 수제맥주 양조장은 배럴당 3.5달러, 일반생산자 또는 맥주수입업자는 16달러의 연방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수제맥주 양조장에 대해 대규모 양조장 대비 78.2%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벨기에, 체코,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구간별 세제혜택 적용으로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구간의 감면율을 달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비 차이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 영업

마케팅 능력의 차이 등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수제맥주가 소품종 대량생산하는 대기업들과 동등한 상태에서 경쟁하는 것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종량세로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양조장에 대한 세제혜택 부분이 얼마나 적절하게 설정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양조장의 경우 (제조·생산 과정이) 자동화되지 않아 많은 직원들을 채용해야 하나 종가세 체계하에서 급여에 대한 부담까지 주세에 포함되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기존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수제맥주 종사자가 5,000여명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맥주시장에서 1% 미만인 수제맥주 업체들의 고용창출 효과가 대규모 양조장보다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제맥주 시장의 성장으로 많은 고용창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종량세로 개정과 더불어 대규모 양조장보다 높은 제조원가 비율을 가진 수제맥주 양조장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 미국, 유럽의 경우 수제맥주 시장이 내수를 바탕으로 급속도로 성장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되었으며, 현재 아시아 전역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도 진입하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류와 함께 국내 수제맥주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대만, 홍콩 등 아시아권 나라들의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소매점 유통에 대한 규제가 풀려 이제 장비나 시설을 갖추기 시작한 수제맥주 업체들은 아직 국내 소매점 판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점차 소매점 판매가 가능한 장비나 시설이 갖추어지고 소매점 판매가 증가하여 기본적인 내수시장이 안



정화되면, 아시아권에 맥주를 수출할 수 있는 역량과 시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류 관련 기관에서 평가하듯이 한국이 아시아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량세가 우리나라 맥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완전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요인 중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제맥주협회는 증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이 수제맥주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시발점이 되리라 생각하며, 종량세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한다고 해서 WTO 등에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국의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주류에 대해 전면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리스크가 있고, 증류주까지 논의하기에는 저희들이 준비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맥주가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 포인트로 우선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고, 이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수정하면서 점차 타 주류도 전면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고 이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정 철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저는 얼마 전 국회 토론회의 발제자로서 맥주에 대해서는 종량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세수확보, 산업적 측면, 소비자 후생, 농산물 소비 측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명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세수확보 측면을 보자면, 지금 주세는 국세의 1.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수확보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수확보보다는 산업 환경의 변화(수입주류의 국내진출, FTA 확산)로 인한 산업적 붕괴를 고려하여 종량세를 주장하였습니다.

세율을 낮추는 방안은 (국내주류와 수입주류 모두) 똑같이 내려야 하므로 수입주류가 (국내로) 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업계의 주장은 현재의 세제상 불합리한 점을 공평하게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해외사례를 보아도 종량세와 증가세가 혼용된 사



객석 질의응답

맥주산업 종사자

저희도 맥주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로서 종량제 변경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맥주제조사들은 매출액 대비 44%의 높은 주세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대표적인 수입맥주 하이네켄이나 칭따오 같은 수입사들은 평균 매출액 대비 20%의 주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내 제조사들이 수입맥주 제조사들에 비해서 매출액 대비 2배 이상 주세를 납부하는 지금의 상황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량제 변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제맥주협회 임성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로 변경이 되더라도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규모 맥주제조면허로 허용하고 있는 최대 숙성고 용량이 12만리터입니다. 맥주가 3주 숙성한다는 가정으로 계산하면 소규모 맥주제조면허로 제조할 수 있는 연간 총생산량이 192만리터입니다. 이는 2017년 기준으로 대표적인 수입맥주인 하이네켄이나 칭따오가 출고하는 3천만~4천만리터에 비교하면 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수입맥주 출고량에 대비해 0.8%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미한 양입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충분히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면허를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출고장이 300만리터 이하인 경우에만 50만리터에 대해서 과표의 30% 절감이 유일합니다. 수입맥주 매출상위 브랜드 출고량은 1천만~5천만리터 사이로 이런 규모

의 수입맥주사와 경쟁에서 주세구조가 더 불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300만리터 미만 생산 시 50만리터 출고량에 대해 과표의 30%를 경감하는 정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0만리터 생산기준 순매출액 자체가 90억원 정도밖에 안되는 수준이고, 이것을 2천만리터로 확대 시 순매출액 기준으로 600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음료제조업 중소기업 매출 기준인 800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기준입니다. 즉, 최소 2천만리터까지는 구간별 경감률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하/브로이하우스바네하임 대표

저는 소규모면허를 가지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간 생산량이 100킬로리터 이하로, 연간 5억원에 대한 매출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원가재료를 계산해보면 월 200만원 정도의 주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계 감가상각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가재로 되어 있는 종가세의 경우 저희 같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나마 감가상각이 12년이므로, 지금은 14년 운영하여 감가상각이 좀 빠져서 리터당 주세율을 적게 내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신규로 가입하고 소규모면허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 냈던 큰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높은 문턱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소규모면허는 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수제맥주 시장에서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100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에 (시장에서의) 신규 진입에 대한 큰 장벽이 종가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주세율이 72%인데, 소규모로 구간당 경감혜택을 주는 것은 하지만 이 72%를 얼마만큼 경감해 줄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통주처럼 5%까지 내릴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세율을 낮춰 주는 것보다는 종량세로 전환하여 리터당 구간별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소규모면허와 일반면허 중 시설에 따라서 120킬로리터 이하는 소규모로, 그 이상은 일반면허로 하고 있는데, 주세체계상 일반면허 소지자는 출고가의 50%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면허를 소지한 브루어리분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일부 업체들이 소규모면허를 다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규모 일반회사들이 늘어나야 산업기반이 더 발전될 것인데 이런 회사들조차 어려워서, 그나마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소규모면허를 다시 낸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량세로 전환하고, 리터당 구간을 잡아, 소규모 맥주의 주세는 조금 더 저렴한 리터당 단가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기/맥주전문점 비어포스트

맥주업계에서 종량세를 논의하는 것은 저희가 바래왔던 바입니다. 왜냐하면 과세체계가 산업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입안자의 입장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든 문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류가 소비자 기호의 대상이 된 이 시대에, 다양한 수제맥주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다양한 미각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면서 창의력이나 감성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되

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자면, 국내에서 국산보리나 홉을 재배하면 1차 산업이 발전하고, 그 홉 농장에 관광객들이 방문하면 그것이 6차 산업까지 연관이 됩니다. 미국은 크래프트 브루어리가 약 6,000개 정도, 영국은 약 1,700개 정도가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소비하고 관광상품과 연계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산업 전반을 고려한 큰 틀에서 문제를 보았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윤종건 과장님께 종량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향후 종량세 개정에 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선용/식품외식경제·월간식당 기자

우선 본 공청회는 맥주의 과세체계에 대한 주제인데, 왜 맥주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체계를 논하는지 이유가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거나, 주종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에도 불구하고 맥주에 대해서만 굳이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에서 보면, 2013년 국내맥주 3사의 점유율이 95%에서 지난해 83%까지 떨어졌으며, 수입맥주와 비교했을 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문제 제기가 오늘 같은 자리의 출발선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 3사가 맥주시장의 80% 이상, 몇 년 전까지만 해도 95%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의 독과점적 환경이 공정한 경쟁환경이었던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언급되지 않은 전통주는 국내 전체 주류시장의 0.3%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데,



전통주가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종가세 과세방식을 꼽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주 업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제도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향이 없다가, 최근 맥주에 한하여 원 포인트로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을 말씀하시면서, 가정시장(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수입맥주의 높은 점유율(50% 이상)로 국산맥주의 산업 환경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업소시장(유흥시장)에서는 아직은 압도적으로 국산맥주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이 국산맥주 업체들이 이러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불합리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전혀 논의하지 않고, 가정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높아졌다고 해서 국산맥주 시장의 산업 환경이 위협하다고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향후 종량세의 추진일정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효경 /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식음료위원회

오늘 공청회에서 맥주의 과세체계 방안에 대하여 여러 분야에서 패넬토론을 하셨습니다. 국내맥주 점유율은 82.8%, 소규모는 0.3~0.4%, 수입맥주는 16.7% 정도 차지하는데, 많은 이해관계자들 중에 수입맥주를 대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요즘 (수입맥주의) 소비가 많이 늘었지만, 수입맥주가 주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우려사항이나 잠재된 문제들이 있을 수 있

으므로, 향후 논의하실 때 수입사 또는 수입맥주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 **윤영진 교수**: 맥주와 관련하여, 그 속에서도 국산과 수입맥주 간의 경쟁으로 미세하게 포커스가 좁혀져 있는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입업자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고, 맥주 생산·제조업자와 유통업자, 소매·판매업자, 소비자들, 정부의 입장도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주류(소주)와 연결되어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을 입법할 때 어느 수준에 맞추어야 하는지 논의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맥주를 출발점으로 논의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종량세로 전환하면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반드시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다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출발점에서 다른 주종 및 주세 전반에 대한 검토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 측면에서 주세는 국세지만, 실제 지출은 지방에서 이루어지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전액 다 쓰이고 있습니다. 지방 입장에서 주세의 세율 인하로 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반대합니다. (세수입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건 과장**: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수입맥주의 시장 점유율 상승 자체를 절대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점유율이 상승되는 요인 안에 혹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체제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하였으며, 여러 방안 중 종량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기재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수입맥주 관계자



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의논할 것입니다.


시행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저희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패널 분이나 오신 분들 중 점진적 시행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불공정한 상태가 계속되어 국내 주류산업에 많은 폐단을 초래한다고 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국제청은 제도를 집행하는 기관이지 만드는 기관은 아닙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기재부 세제실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세정을 집행하고 있는 측면에서 아주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홍범교 박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왜 맥주만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맥주시장이 우리나라 전체 주류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고, 최근 수입맥주의 증가로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의 경쟁이 세제상 차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경쟁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발제한 것은 오로지 세제상의 차이로 인한 경쟁상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로 가게 되더라도 수입맥주가 맛이 좋아 소비자들이 수입맥주를 더 많이 소비한다면, 이는 맥주회사들의 경쟁에 관한 문제로 세제상으로 터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말씀드릴 사항은, 국내 대형 3사가 이와 같은 세제상 차이로 국내에서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

라 해외에서 맥주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들 3사의 수입맥주 점유량은 파악된 것만으로 38% 정도 되며, 세제상 차이로 이런 유인이 점점 국내맥주기업으로 하여금 수입에 치중하게 하면, 국내맥주산업상의 다른 문제점도 파생될 수 있습니다.

수입맥주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주류협회에서 총괄적으로 대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말씀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추후라도 말씀해주시면 과세당국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8-7

> 유럽

[독일-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안]

- 독일은 2018년 6월 27일 해외 판매업자가 독일 과세당국에 VAT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VAT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가 해외 판매업자를 대신해 VAT를 납부할 것을 제안함¹⁾
 - 이 제안 내용은 '2018년 재정법'에 포함되어 발표되었으며, 재정법 통과 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또한, EU 회원국은 2017년 12월 2021년부터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소재한 판매업자가 EU 회원국 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매출액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가 VAT를 징수 및 납부하도록 하는 지침에 합의한 바 있음
-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외 판매업자가 독일 법인에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VAT 사업자등록 및 납부의무가 없으나, 독일 개인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VAT 사업자등록을 하고 VAT를 징수 및 납부해야 함²⁾

-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reverse-charge mechanism)로 매입자인 독일 법인이 해외 판매업자를 대신해 VAT를 납부함
- 독일 개인에게 연간 10만유로 미만의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해외 판매자는 VAT 사업자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³⁾

-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해외 판매자 정보, 물품인도 및 도착 장소, VAT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VAT 납부증명서 등의 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 판매업자가 납부하지 않은 VAT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가짐⁴⁾
 - 단,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가 VAT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 판매자의 매출정보를 독일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에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음
 -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는 독일 거주자에 국한되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물품통관과 동시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연간 판매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해외 판매자에는 별도 VAT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VAT를 미납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임

1) Germany--Ministry of Finance publishes draft bill for Annual Tax Act 2018(27 June 2018), News IBFD; TaxNotes, "Germany to Make Online Platforms Liable For Uncollected VAT," 2018.07.02.

2) EY, *Worldwide VAT/GST and Sales Tax Guide*, p. 367, 2017.

3) J. Müller-Lee, *Germany-Value Added Tax*, Topical Analyses IBFD, section 11.1.2.1.

4) EY, "German Federal Ministry of Finance publishes draft Annual Tax Act 2018," 2018.07.16.

- 우리나라는 관세 면세점과 부가가치세 면세점이 150달러(미국으로부터 수입 시 200달러)로 동일하여, 수입물품 통관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같이 징수됨
- 반면, 독일의 경우 관세 면세점은 150유로, 부가가치세 면세점은 22유로로 관세 면세점이 더 높아 효율적으로 VAT를 징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해외 판매자가 독일 거주자에 연간 10만유로 이상 판매한 경우, VAT 사업자등록 및 납부를 이행해야 하므로 VAT 미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룩셈부르크-조세회피 방지 관련 세법 개정안 발의]

- 룩셈부르크 정부는 유럽연합의 조세회피 방지 조치를 입법화한 법안을 2018년 6월 19일자로 의회에 제출함⁵⁾
- 2016년 7월에 발표된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 방지 조치(EU Anti Tax Avoidance Directive, 2016/1164)에 부합하도록 국제거래 및 저세율국을 활용한 조세회피에 대해 대응 조치를 입법화함
-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부분의 규정은 2019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임
 - 출국세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부터 발효

- 출국세(exit tax)의 납부 유예 기간을 줄이고 즉시 납부해야 할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출국세 과세를 강화함
- 현행 세법상 기간 제한 없이 출국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최대 5년 이내 5차례에 걸쳐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함
- 납세자의 신상 변동이나 의무 위반 등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분할 납부 혜택을 배제하고 즉시 출국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함
 - 납세자의 고정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제3국으로 매각 · 이전될 경우
 - 법인의 법적 소재지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제3국으로 이전된 경우
 - 납세자가 파산 또는 청산에 이르게 된 경우
 - 납세자가 분할 납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후 12개월 내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세자가 상기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매년 소정의 양식을 통해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인세 목적상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세전이익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함
- 룩셈부르크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및 외국법인의 룩셈부르크 고정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함
- 연간 공제 가능한 이자비용 한도는 아래 두 항목 중 높은 금액으로 함

5)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6-22_lu_1.html&WT.z_nav=Navigation, 접속일자: 2018.07.26.)
PwC(<https://www.pwc.lu/en/tax-consulting/docs/pwc-tax-200618.pdf>, 접속일자: 2018.07.26.)



- 이자·세금·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차감 전 이익(EBITDA)의 30%
- 3백만유로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자비용 공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납세자가 금융기관이거나 관계사 없는 별도기업체(stand-alone entity)일 경우
 - 2016년 6월 17일 이전에 체결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 EU 회원국을 위한 장기간의 공공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이자
- 저세율국 소재 외국법인에 소득유보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CFC) 규정을 도입함
 - 룩셈부르크 거주 법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저세율로 과세되며 비정상거래(non-genuine arrangement)에서 발생한 소득을 유보한 경우 이를 룩셈부르크 지배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함
 - 외국법인에 대한 지배 요건: 당해 외국법인에 대해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의결권 또는 이익수취권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할 경우
 - 저세율 해당 여부: 당해 외국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룩셈부르크 세법에 의해 산출될 세액의 50% 미만일 경우
 - 비정상거래 여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지배-피지배관계가 없었다면 동 소득 발생과 관련된 자산이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이를 비정상거래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
 - 단 아래의 두 개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FC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당해 외국법인의 당기 회계상 이익이 75만유로 이하이고 그중 상거래 이외의 이익(non-trading income)이 7만 5천유로 이하인 경우
 - 당해 외국법인의 당기 회계상 이익이 동 법인 운영비용의 10% 이하인 경우
- EU 회원국 내 관계회사와의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es) 거래에서 발생한 이중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함
 - 룩셈부르크 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룩셈부르크 고정사업장이 EU 회원국 소재 관계회사와 수행한 거래를 기본 적용 대상으로 함
 - 혼성불일치는 아래와 같이 이중의 손금 공제 또는 대응 익금 없는 손금 산입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 타방 EU 회원국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손실이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룩셈부르크 내에서도 법인세 목적상 공제되는 경우
 - 룩셈부르크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응되는 수익이 관련 타방 EU 회원국 내에서 익금 산입되지 않는 경우
 - 당해 규정 도입에 따라 혼성불일치 거래가 발생할 경우 룩셈부르크에서 법인세 목적상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음
 - 비 EU 국가 소재 관계사와의 혼성불일치 거래 등 보다 세부적인 규정은 차후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스페인-2018년 예산법안 의결]

- 세법 개정 내용을 담은 2018 예산법안(Budget Bill for 2018)이 2018년 7월 4일자로 의결 · 공포됨⁶⁾
 - 스페인 정부는 2018년 4월 3일자로 관련 예산안을 발의하였으며, 2018년 7월 4일자로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공포됨
 - 무형자산 및 영화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 요건 개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개인소득세 경감, VAT 및 물품세 일부 개정 사안 등을 담고 있음

1. 법인세

- 실질적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특허박스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 종류를 변경함
 - 스페인은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통해 특허 등 무형자산을 창출한 법인이 해당 무형자산 사용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60%를 비과세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이번 개정법안은 OECD BEPS Action 5의 권고에 따라 실질적 연구개발 활동과의 관련성이 높은 무형자산을 위주로 특허박스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임
 - OECD는 연계접근법(nexus approach)에 근거하여 실질적 연구개발 활동이 확인된 납세자만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함
 - 특허권, 소프트웨어, 기타 유용성 및 창의성이

- 높은 무형자산 등이 연계접근법의 취지에 부합함
- 동 개정법안에서는 OECD의 연계접근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용 대상 무형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허권 이외에도 고급 소프트웨어, 의약품 및 식물 제제에 대한 보충적 보호 인증(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을 특허박스 적용 대상 무형자산으로 추가함
 - 상표권(trademark), 문학 · 예술 · 과학 작품, 도면(plan), 비밀공식(secret formulas) 및 산업적 · 상업적 · 과학적 경험과 관련된 정보 등은 특허박스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 특허박스 적용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총수입(income)이 아니라 개발원가 등을 공제한 뒤의 순이익(profit)을 바탕으로 산출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함
- 영화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의 부대조건으로 영화 관련 정보 및 산출물 제공 등의 협조의무를 부과함
 - 스페인은 자국내 영화산업 진작을 위하여 영화 또는 시청각자료 제작에 투자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법상 세액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스페인 내 영화 등의 제작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첫 1백만유로까지는 25%, 초과부분은 20%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부여함(총 제작비용의 40%를 한도로 함)

6) IBFD(https://online.ibfd.org/kbase/#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7-10_es_1.html&WT.z_nav=Navigation, 접속일자: 2018.07.26.)



-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관련 정보 표시 및 영상물 사본 등의 제출 의무를 부여함
 - 영화 상영본 및 관련 홍보물에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사실, 스페인 내 영화제작 장소, 정부와 협력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
 - 상영물 사본 및 기타 관련 영상물을 소정의 기관(Cinematography and Audiovisual Arts Institute)에 제공하고, 문화·관광 진흥 목적상 일부 자료를 복제(reproduce)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함

2. 소득세

- 소득세 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기타 세액공제 및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여 과세부담을 경감함
 - 개인소득세 면세점(threshold)을 인상하여 과세 면제되는 대상을 확대함
 - 기존에는 연간 총소득 1만 2천유로였으나 이를 1만 4천유로로 인상함
 - 대가족에 해당하는 최저 요건⁷⁾을 초과하는 숫자의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해서는 해당 추가 자녀 1인당 600유로의 세액공제를 적용함
 - 복권 당첨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단계적으로 인상함
 - 2018년: 현행 2,500유로에서 1만유로로 인상
 - 2019년: 2만유로
 - 2020년: 4만유로

- 저임금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 가능 금액을 조정하여 소득공제 효과를 확대함
 -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기타 과세소득이 연간 6,500유로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공제 금액을 아래에서와 같이 최고 3,700유로에서 5,565유로까지 인상함
 - 기존에는 연간 근로소득 14,450유로 미만인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 금액을 산출함

〈표 1〉 현행 소득구간별 소득공제액

(단위: 유로)

근로소득 구간	소득공제액
근로소득이 11,250 미만인 경우	3,700
근로소득이 11,250 이상 14,450 미만인 경우	$3,700 - 1.15625 \times$ (근로소득 - 11,250)
근로소득이 14,450 이상인 경우	0

- 개정안에서는 연간 근로소득 16,825유로 미만인 경우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 금액을 산출함

〈표 2〉 개정안의 소득구간별 소득공제액

(단위: 유로)

근로소득 구간	소득공제액
근로소득이 13,115 미만인 경우	5,565
근로소득이 13,115 이상 16,825 미만인 경우	$5,565 - 1.5 \times$ (근로소득 - 13,115)
근로소득이 16,825 이상인 경우	0

- 신설 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됨
 - 기존 법령에서는 개인납세자가 신설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해

7) 일반적으로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자녀 3명 이상이면 대가족에 해당함

택을 부여하였으나, 개정법안에서는 이를 30%로 인상함

-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분 투자액의 최대 한도 또한 연간 5만유로에서 6만유로로 인상됨

3. VAT 등 간접세

- 극장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인하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물품세율을 일부 인하함
 - 영화극장 입장권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21%에서 10%로 경감함
 - 불화온실가스(fluorinated greenhouse) 배출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단위당 물품세 적용세율을 현행 0.020에서 0.015로 인하함
 - 아래와 같이 발전 등 특정 용도에 사용된 바이오 가스의 생산 및 수입과 관련된 물품세가 면제됨
 - 발전(generation), 전력 생산 장소에서의 자가 소비 또는 공동 발전(cogeneration)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프랑스-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발표]

- 프랑스 정부는 2018년 7월 9일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발표함⁸⁾
 - 본 특례제도는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요건과 조세특례 대상 소득 및 특례 적용 기간에 대해 규정함
- 특례제도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특례제도 대상자는 프랑스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연도의 직전 5 과세연도 기간 중 프랑스의 비거주자로서 프랑스 법인의 해외 관계사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이거나 프랑스 법인이 해외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로 함
 - 동 조세특례는 해당 근로자가 ① 가족 또는 주된 거소를 프랑스에 두고 ② 주된 직업 또한 프랑스에 두는 모든 기간에 대해 적용함
 - 가족 또는 주된 거소 요건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업무를 개시하는 시점에 가족관계(배우자 직업, 자녀의 교육문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 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해 말까지 가족이 프랑스에 거주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함
- 적격 파견근로자는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파견 상여금 등과 같이 프랑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추가적으로 받는 보상금에 대해 100% 감면
 - 해당 근로자가 프랑스가 아닌 해외에서 수행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상금에 대해 100% 감면
 - 해외원천 투자소득과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소득에 대해 50% 감면
 - 프랑스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취하는 해외원천소득에 한해 적용
 - 해외원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50% 감면

8) 프랑스 정부(<https://www.impots.gouv.fr/portail/international-particulier/special-expatriate-tax-regime>, 접속일자: 2018.07.25.)



- 동 조세특례는 해당 근로자가 ① 가족 또는 주된 거소를 프랑스에 두고 ② 주된 직업 또한 프랑스에 두는 모든 기간에 대해 적용함
 - 가족 또는 주된 거소 요건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업무를 개시하는 시점에 가족관계(배우자 직업, 자녀의 교육문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 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해 말까지 가족이 프랑스에 거주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프랑스-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도입 연기]

- 프랑스 정부는 2018년 7월 5일 2019년 1월 1일로 계획되었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도입을 2020년 1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함⁹⁾
- 프랑스는 2017년 예산법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도입을 2018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¹⁰⁾한 바 있으나, 실제 도입은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되고 있음
 - 현재 프랑스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없이 개별 근로자가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고용주가 종업원의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세액은 소득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세

율을 적용하여 결정됨

- 금번 연기 결정은 근로소득세뿐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보다 간소화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함¹¹⁾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 아시아

[홍콩-BEPS 및 이전가격 규정 확정]

- 2018년 7월 4일 홍콩에서 BEPS 및 이전가격 법안(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nd transfer pricing Bill)이 확정되었으며, 7월 13일 재무부가 고시함¹²⁾
 - BEPS Action 13(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보고서)의 권고사항인 마스터파일, 로컬파일과 국가별보고서의 의무적 제출을 법률에서 규정함
 - 그 밖에 BEPS Action 5(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의 권고사항인 실질활동 요건에 맞춰 관련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OECD 이전가격지침서의 제안을 법률에 반영함
-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연결 다국적기업그룹의 매출액이 68억홍콩달러 이상인 경우 홍콩 내 거주자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본사는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9) France-Individual income withholding tax for employees of individuals-postponement announced (10 July 2018), News IBFD.

10)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6년 10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1) <https://www.nouvelobs.com/economie/20180705.OBS9208/le-prelevement-a-la-source-decale-d-un-an-pour-les-salaries-des-particuliers.html>, 접속일자: 2018.07.25.

12) 홍콩 국세청, <https://www.ird.gov.hk/eng/ppr/archives/18071302.htm>, 및 EY, *Hong Kong passes tax and transfer pricing legislation to counter BEPS*,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hong-kong-passes-tax-and-transfer-pricing-legislation-to-counter-beps>, 접속일자: 2018.07.31.

의무가 있음

- 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 납세자는 국가별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홍콩 내국법인은 최종모법인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함
 - 홍콩은 과세당국 간 다자협약(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에 참여함¹³⁾
- 납세자의 사업규모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일정 규모를 초과한 홍콩 내국법인은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이는 2018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사업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사업규모를 기준에 따르면 총매출액 4억홍콩달러 이하, 총자산 3억홍콩달러 이하와 평균 직원 수가 100명 이하의 3가지 기준 중에서 2가지에 부합하면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제출이 면제됨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기준에 따르면 각 거래 유형별로 2억홍콩달러 상당의 재산(금융자산과 무형자산 제외)을 이전, 1억 1천만홍콩달러 상당의 금융자산의 이전, 1억 1천만홍콩달러 상당의 무형자산의 이전과 그 밖의 4천 4백만홍콩달러 상당의 거래 이하인 경우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 제출이 면제됨
 - BEPS Action 5의 유해조세제도나 EU의 비협조적 세금관할 구역 지정 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OECD에서 제안한 '실질적 활동 요건'에 부합하게 홍콩의 관련 제도를 개정함
 - 기업 자금 센터(Corporate Treasury Center, CTC), 재보험(reinsurance business) 및 캡티브보험(captive insurance business), 선박업(shipping business), 항공리스, 항공리스 관리산업에 제공되는 조세혜택에 대해 홍콩 내에서의 실질적 활동 요건을 추가함
 - 실질적 활동 여부를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홍콩 내에서 풀타임으로 업무한 직원의 숫자, 홍콩에서 실제 발생한 운영 비용 등임
 - 한편, 무형자산의 개발, 강화, 유지, 보호, 사용과 관련하여 OECD 이전가격지침서가 제안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함
 - 주요 내용은 홍콩 내 거주자가 무형자산의 개발, 강화, 유지, 보호와 사용에 공헌하였으나 무형자산에서 얻은 소득이 해외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홍콩 내 거주자가 공헌한 부분에 대한 소득은 홍콩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임
 - 이는 2019년 4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 그 밖에 상호합의와 중재 규정을 개정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기한을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면서 공제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기준을 강화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13) OECD, <http://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international-framework-for-the-crs/MCAA-Signatories.pdf>, 접속일자: 2018.07.31.



>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BEPS 관련 법안 확정]

- 2018년 6월 27일 2018년 BEPS 법안[Taxation (Neutralis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ct 2018]이 확정되었으며, 혼성불일치, 고정사업장, 이자비용, 이전가격 등에 관한 소득세 규정이 개정됨¹⁴⁾
 - BEPS 법률은 뉴질랜드에서 영업하는 다국적기업이 뉴질랜드에서 적정 세금을 납부하고 조세공평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짐
 - BEPS 법률을 통해 연간 2억뉴질랜드달러 상당의 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12월 뉴질랜드 정부가 법안을 처음 발표하였으며,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것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지급자의 관할국에서 비용으로 공제되나 수취자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지급(Deduction/No Inclusion outcome, 이하 D/NI 결과)과 두 관할 지역에서 모두 공제받는 지급(Double Deduction outcome, 이하 D/D 결과)에 대해 우선규정과 후속규정을 도입함
 - BEPS Action 2(혼성불일치 거래효과의 해소)의 권고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임
 - 지급자의 관할국에서 비용으로 공제되나 수취자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D/NI 결과는 우선규정 도입으로 지급자의 지급에 대한 공제를 부인

하고, 거래 상대국에서 우선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수취자의 소득에 가산하는 후속규정을 적용함

- 지급자의 소득과 수취자의 소득에서 모두 공제되는 D/D 결과는 우선규정 도입으로 혼성불일치 발생 시 관련 비용을 모회사의 소득에 가산하고, 모회사에서 소득에 가산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지급자의 지급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는 후속규정을 적용함
- 조세회피 의도를 갖고 외국법인이 뉴질랜드 소재 관계회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경우 관계회사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 국내나 국외에서의 소득세 감축을 목적으로 외국법인이 관계회사인 뉴질랜드 내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을 위한 판매 관련 활동을 수행한 경우,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면 뉴질랜드에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함
 - 전 세계 그룹의 연결 매출액이 750백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에만 적용함
 - 이는 BEPS Action 7(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의 대리인에 대한 권고사항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도입 취지가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Action 7과 동일함
- 금융거래와 관계회사 간 대부거래에 적용할 적정 이자율을 제시하여 관계회사 사이의 과도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함

14) TAX NOTES INTERNATIONAL Volume 91, Number 2, Parliament Passes BPES Bill, 2018.07.02. 및 뉴질랜드 정부,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18/0016/latest/DLM7505806.html>, 접속일자: 2018.07.23.

-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10백만뉴질랜드달러 이상 대출받고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일정요건을 만족하면 신용등급에 기반한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간주하고 이를 초과한 이자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
 - 내국법인의 이자율은 그룹 내 제3자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룹의 신용등급보다 1단계 아래(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는 2단계 아래)의 신용등급을 적용함
 - 이는 관계회사 간 이자비용의 공제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어 도입 취지는 BEPS Action 4(이자비용 및 기타 금융비용 관련 세원잠식의 제한)와 관련 있으나, BEPS Action 4의 권고사항과 일치하지 않음
-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s)의 기준인 부채비율 산정방식을 기존 ‘부채/총자산’에서 ‘부채/순자산’으로 변경하여 과소자본세제 기준을 강화함
 - 기존 뉴질랜드 과소자본세제는 비거주자가 지배(50% 이상 지분 보유)하는 뉴질랜드 내국법인을 주요 대상으로 적용하며, 그룹 부채비율(a New Zealand entity or group’s debt percentage)¹⁵⁾의 60%와 국외지배주주 그룹의 전 세계 부채비율(the worldwide group’s debt percentage)의 110%를 모두 초과한 경우 관련 이자비용을 불공제함
 - 부채비율 계산에 사용할 자산을 총자산에서 순자산으로 개정함
 - 그 밖에 국가별보고서, 일반적인 이전가격 규정과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관련 개정사항 등이 포함됨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BEPS 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사업연도부터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그룹의 그룹 매출액이 750백만유로 이상이면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2017년 OECD의 이전가격 지침서(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에 맞춰 뉴질랜드 이전가격 기준을 조정함
 - 특히 계약관계와 경제적 실질이 불일치할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이전가격 분석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이전가격 거래구조를 부인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15) 내국법인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총부채/총자산



[호주-혼성불일치 관련 규정 국회 제출]

- 호주 정부는 2018년 5월 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한 규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8년 6월까지 하원의 승인을 받은 후 상원에서 검토 중임¹⁶⁾
 - 2018년 1월 호주 정부는 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한 규정을 발표했으며¹⁷⁾ 2018년 5월 국회에 제출한 이후 하원에서 검토하면서 일부 규정이 수정됨
 -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 현재 하원의 검토를 마치고 상원에서 검토 중으로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 지급자의 관할국에서 비용으로 공제되나 수취자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D/NI 결과, 동일 납세자가 두 관할 지역에서 모두 공제받는 D/D 결과와 이전 혼성불일치(imported mismatches)거래로 인해 간접적으로 D/NI 결과가 발생하는 거래에 관한 규정을 소개하였음
 - D/NI 결과의 경우 지급자의 공제를 부인하는 우선규정을 적용하고, 지급자의 관할국에서 우선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후속규정을 적용하여 수령자의 경상소득에 가산함
 - D/D 결과의 경우 모회사의 관할국에서 지급을 부인하는 우선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지급자의 관할국에서 공제한 금액을 부인하

는 후속규정을 적용함

- 이전 혼성불일치 거래의 경우 지급자의 지급을 부인하는 우선규정을 적용함
 - 또한, 다국적기업이 혼성불일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도관체를 설립하고 거래를 우회하는 행위를 방지할 목적에서 성실조항(integrity provision)을 마련하고, 호주 내국법인의 비용공제를 제한함
 - 성실조항은 호주와 최종모법인의 거주국 사이에 도관체를 설립하여 호주에서 지급한 이자비용이나 파생상품 관련 비용 등이 도관체에 귀속되도록 거래를 구성하여, 호주에서는 과세소득으로 공제받고 도관체가 소재한 경우국에서는 거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임
 - 도관체는 호주에서 지급한 동일 지급액에 대해 1개 이상의 해외 국가에서 소득세가 부과되고 가장 높은 부담세율이 10% 이하인 경우로, 혼성불일치를 통한 조세회피가 주된 목적인 법인임
 - 도관체의 주된 목적을 고려할 때 도관체가 실질적인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가와 호주 내국법인으로부터 비용 지급 대가로 제공된 서비스(금융 서비스 등)가 실제 존재하는가를 조사함
-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16) 호주 정부,

<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In-detail/Other-topics/International/Implementation-of-the-OECD-hybrid-mismatch-rules/> 및 호주 국회,

<http://parlinfo.aph.gov.au/parlInfo/search/display/display.w3p;page=0;query=BillId%3Ar6116%20Restruct%3Abillhome>, 접속일자: 2018.07.31.

17) 조세동향, 「호주 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한 입법 초안 발표」,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호주-혼성불일치-해소를-위한-입법-초안-발표/525236, 2018.01.05.

국제기구

[EU-부가가치세 최저 표준세율 15% 유지 결정]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18년 6월 22일 EU 회원국의 현행 부가가치세 최저 표준세율(VAT minimum standard rate)을 영구적으로 15%로 유지한다고 발표함¹⁸⁾
 - EU의 부가가치세 최저 표준세율은 1993년 EU의 시장 단일화 때 임시적으로 15%로 설정된 이후 줄곧 유지되었으며, 2016년에 2017년까지 최저 표준세율 유지를 결정된 바 있음
- EU의 부가가치세 최저 표준세율은 EU 회원국 간 부가가치세율의 지나친 격차와 회원국 간 저세율 정책을 통한 경쟁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EU 회원국들은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EU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른 일부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5% 이상의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¹⁹⁾
 - EU는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의 최저한만 규정하며, 세율의 한도(최고세율)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18) European Council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8/06/22/vat-minimum-standard-rate-set-permanently-at-15/?utm_source=dsms-auto&utm_medium=email&utm_campaign=VAT+minimum+standard+rate+set+permanently+at+15%25, 접속일자: 2018.07.26.)

19)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eu-vat-rules-topic/vat-rates_en, 접속일자: 2018.07.26.)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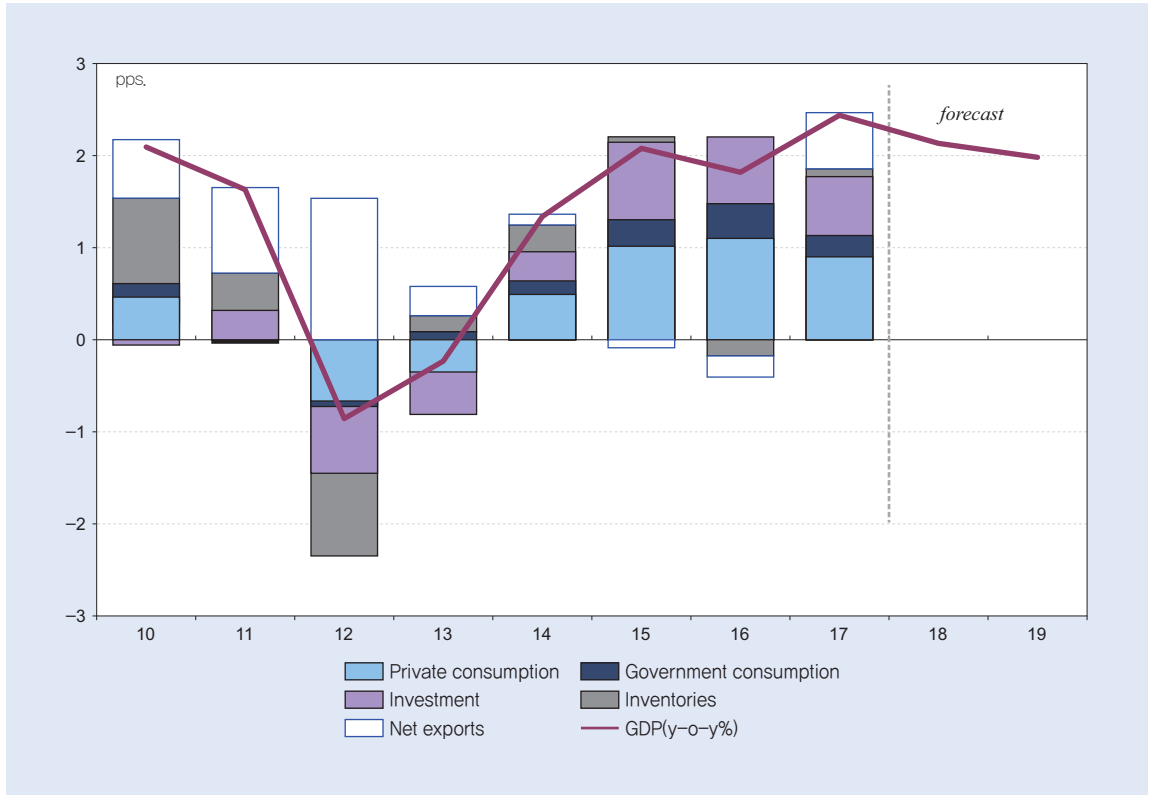
- EU 집행위, 2018년 여름 중간 경제전망 발표(2018. 07.12.)^{1) 2)}
 - (경제) 2018~2019년 유로지역과 EU 28개국은 확장세가 소폭 둔화되나 견고한 성장을 유지할 전망
 - 유로지역과 EU 모두 2018년에 지난 봄 전망 대비 0.2%p 하락한 2.1%의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19년에는 지난 전망과 동일하게 2.0% 성장할 전망
 - 무역 긴장 증대, 회원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유가 상승 등 요인으로 2018년 1분기 확장세가 소폭 둔화
 - 노동 시장 개선, 가계 부채 감소, 높은 소비자 신뢰 지수,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다시 성장세가 강화될 전망
 - (물가)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은 2018년 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함께 상승했다가 2019년 그 영향이 천천히 축소되면서 완만한 모습을 보일 전망
 - 유로지역의 인플레이션은 2018년 1.7%, 2019년 1.7%로 전망되어 지난 전망 대비 각각 0.2%p, 0.1%p 상승

- EU의 인플레이션은 2018년 지난 전망 대비 0.2%p 상승한 1.9%를 나타내다 2019년에는 지난 전망과 동일한 1.8%로 전망됨
- 근원 인플레이션(underlying inflation)은 노동 시장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점차 높아질 전망
- (리스크) 봄 전망 이후 무역 긴장 등 하방 리스크가 크게 증가
 - 미국과의 무역 긴장이 더 고조되면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와 관련된 모든 국가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미국의 급격한 금융 여건 긴축 및 경기순행적 재정정책도 EU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브렉시트 협상을 포함한 EU 내 정책적·정치적 불확실성과 EU 외부의 지정학적 긴장도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1) EU 집행위,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8-4402_en.htm

2) 본 전망은 EU 27개국과 영국 간의 교역 관계가 현 상태(status quo)를 유지한다는, 전적으로 기술적인 가정에 기반하며 시점 간 비교를 위해 2019년 EU 전망에 영국을 포함함

[그림 1] 유로지역의 실질GDP와 그 구성요소



출처: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Summer 2018(interim), 2018, Graph I.7.



〈표 1〉 유로지역 및 EU 28개국의 경제전망

(단위: %)

국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2018 Summer		2018 Spring		2018 Summer		2018 Spring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벨기에	1.7	1.6	1.8	1.7	1.9	1.6	1.6	1.6
독일	1.9	1.9	2.3	2.1	1.7	1.8	1.6	1.8
에스토니아	3.5	2.7	3.7	2.8	2.9	2.7	2.9	2.5
아일랜드	5.6	4.0	5.7	4.1	1.0	1.3	0.8	1.1
그리스	1.9	2.3	1.9	2.3	0.7	1.3	0.5	1.2
스페인	2.8	2.4	2.9	2.4	1.8	1.6	1.4	1.4
프랑스	1.7	1.7	2.0	1.8	1.9	1.5	1.7	1.4
이탈리아	1.3	1.1	1.5	1.2	1.4	1.6	1.2	1.4
키프로스	3.6	3.3	3.6	3.3	0.8	1.4	0.7	1.2
라트비아	3.3	3.2	3.3	3.3	2.6	2.6	2.7	2.6
리투아니아	3.1	2.6	3.1	2.7	2.7	2.2	2.7	2.3
룩셈부르크	3.5	3.3	3.7	3.5	1.6	1.9	1.5	1.7
몰타	5.4	5.0	5.8	5.1	1.5	1.8	1.6	1.8
네덜란드	2.8	2.5	3.0	2.6	1.5	2.3	1.6	2.2
오스트리아	2.8	2.1	2.8	2.2	2.2	1.9	2.1	1.9
포르투갈	2.2	2.0	2.3	2.0	1.4	1.6	1.2	1.6
슬로베니아	4.4	3.5	4.7	3.6	2.1	2.2	1.9	2.0
슬로바키아	3.9	4.2	4.0	4.2	2.6	2.2	2.4	2.1
핀란드	2.8	2.2	2.5	2.3	1.3	1.7	1.4	1.7
유로지역	2.1	2.0	2.3	2.0	1.7	1.7	1.5	1.6
불가리아	3.8	3.7	3.8	3.7	2.0	1.8	1.8	1.8
체코	3.0	2.9	3.4	3.1	2.1	2.0	2.1	1.8
덴마크	1.6	1.8	1.8	1.9	0.9	1.5	0.8	1.4
크로아티아	2.6	2.5	2.8	2.7	1.6	1.8	1.4	1.5
헝가리	4.0	3.2	4.0	3.2	2.7	3.2	2.3	3.0
폴란드	4.6	3.7	4.3	3.7	1.3	2.6	1.3	2.5
루마니아	4.1	3.8	4.5	3.9	4.4	3.4	4.2	3.4
스웨덴	2.4	1.9	2.6	2.0	1.9	1.7	1.9	1.7
EU27	2.3	2.1	2.5	2.2	1.8	1.8	1.6	1.7
영국	1.3	1.2	1.5	1.2	2.6	2.0	2.5	1.9
EU28	2.1	2.0	2.3	2.0	1.9	1.8	1.7	1.8

출처: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Summer 2018(Interim), 2018, Table 1&3.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IMF

■ IMF, World Economic Outlook(WEO) Update 발표(2018.07.16.)^{3) 4)}

- (전망) 2018년과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9%로 지난 4월 WEO 보고서 전망⁵⁾과 동일하나, 국가별 성장 전망의 격차가 커짐
 - (선진국) 2018년 경제성장률은 유로지역과 일본의 성장 둔화로 지난 4월 전망 대비 0.1%p 감소한 2.4%로 전망되고, 2019년 경제성장률은 2.2%로 전망
 - ☞ (미국) 2018년 경제성장률은 2.9%, 2019년은 2.7%로(2018-19년 각각 지난 4월 전망과 동일) 경기부양책과 민간수요 강세로 견조한 경제성장세 지속
 - ☞ (유로지역) 지난 4월 전망에 비해 2018년 경제성장률은 0.2%p 하락한 2.2%, 2019년은 0.1%p 감소한 1.9%로 전망되고,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의 성장 둔화를 반영
 - ☞ (일본) 2018년 성장률은 민간소비 및 투자 약세의 영향으로 1.0%로 전망(4월 전망 대비 0.2%p 감소)되며, 2019년은 민간소비 및 대외수요, 투자 강세로 0.9%로 전망
 - (신흥개도국) 유가 상승, 달러 강세,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해 국가별 상황에 따라 경제성장률에 차이를 보임(2018년 경제성장률은 4.9%, 2019

년은 5.1%로 전망)

- ☞ (중국) 금융부문의 규제 강화와 대외 수요 완화로 2018년 경제성장률은 6.6%로 전망되고, 2019년은 6.4%로 전망
- ☞ (인도) 높은 유가로 인한 대내수요 감소와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긴축의 영향으로 2018-19년 성장률은 7.3%, 7.5%로 전망(4월 전망 대비 각각 0.1%p, 0.3%p 하락)
- ☞ (아세안5개국) 대내수요가 양호하고 수출이 회복됨에 따라 2018-19년 성장률은 각각 5.3%로 전망
- ☞ (브라질) 파업과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2018년 경제성장률은 4월 전망 대비 0.5%p 감소한 1.8%로 전망되고, 2019년은 2.5%(4월 전망과 동일)로 전망
- ☞ (멕시코) 무역 갈등과 NAFTA 재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새 정부의 정책의제 등으로 인해 4월 전망에 비해 경제전망이 낮아짐(2018년 2.3%-4월 전망과 동일, 2019년 2.7%-4월 전망 대비 0.3%p 감소)
- ☞ (나이지리아) 유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승(2018년 경제성장률은 2.1%로 4월 전망과 동일하고, 2019년 성장률은 2.3%로 4월 전망 대비 0.4%p 상승)

3) IMF, <http://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18/07/02/world-economic-outlook-update-july-2018>

4) IMF에서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1월과 7월에 경제성장률 전망치 업데이트를 발표함

5)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8.

원문: IMF, <http://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18/03/20/world-economic-outlook-april-2018>

한글 요약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8.04.」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_2018-No4_-IMF-World-Economic-Outlook-20184/525406)



- (위험) 무역 갈등과 세계 금융여건의 긴축으로 인해 상·하방위험이 균형적이었던 지난 단기 전망에 비해 하방위험이 높아졌고, 중기에는 지난 4월 전망과 동일하게 하방위험이 높음
 - (무역 갈등) 관세 조치의 확산은 잠재적인 무역 활동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투자가 약화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긴축적인 금융여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변화, 무역긴장 고조, 기간 프리미엄의 급격한 증가,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가 등을 포함하여 펀더멘탈 및 리스크에 대한 시장 재평가를 통해 세계 금융여건이 급격히 바뀔 가능성이 있음
 - ☞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연방은행의 이자율 조정 규모를 시장이 재조정할 우려가 있음
- (정책권고) 회복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및 개혁이 시급하며, 잠재성장률 제고와 이익의 공유, 무역에 관한 다자적인 협력이 중요
 - (선진국)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가까운 국가들은 점진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행하고, 채무가 높은 국가는 재정여력을 마련하는 등 국가별 상황에 따른 정책 조치가 필요
 - (신흥·개도국) 재정·통화·환율·건전성 정책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세계 금융여건의 긴축 및 환율변동, 자금이탈 등에 대응하여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

〈표 2〉 세계 경제전망

(단위: % 변화율)

	실적치	전망치		'18년 4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17	2018	2019	2018	2019
World Output	3.7	3.9	3.9	0.0	0.0
Advanced Economies	2.4	2.4	2.2	-0.1	0.0
United States	2.3	2.9	2.7	0.0	0.0
Euro Area	2.4	2.2	1.9	-0.2	-0.1
Germany	2.5	2.2	2.1	-0.3	0.1
France	2.3	1.8	1.7	-0.3	-0.3
Italy	1.5	1.2	1.0	-0.3	-0.1
Spain	3.1	2.8	2.2	0.0	0.0
Japan	1.7	1.0	0.9	-0.2	0.0
United Kingdom	1.7	1.4	1.5	-0.2	0.0
Canada	3.0	2.1	2.0	0.0	0.0
Other Advanced Economies ²⁾	2.7	2.8	2.7	0.1	0.1

〈표 2〉의 계속

(단위: % 변화율)

	실적치	전망치		'18년 4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17	2018	2019	2018	2019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4.7	4.9	5.1	0.0	0.0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2.1	2.3	2.2	0.1	0.1
Russia	1.5	1.7	1.5	0.0	0.0
Excluding Russia	3.6	3.6	3.7	0.1	0.1
Emerging and Developing Asia	6.5	6.5	6.5	0.0	-0.1
China	6.9	6.6	6.4	0.0	0.0
India ³⁾	6.7	7.3	7.5	-0.1	-0.3
ASEAN-5 ⁴⁾	5.3	5.3	5.3	0.0	-0.1
Emerging and Developing Europe	5.9	4.3	3.6	0.0	-0.1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3	1.6	2.6	-0.4	-0.2
Brazil	1.0	1.8	2.5	-0.5	0.0
Mexico	2.0	2.3	2.7	0.0	-0.3
Middle East, North Africa, Afghanistan, and Pakistan	2.2	3.5	3.9	0.1	0.2
Saudi Arabia	-0.9	1.9	1.9	0.2	0.0
Sub-Saharan Africa	2.8	3.4	3.8	0.0	0.1
Nigeria	0.8	2.1	2.3	0.0	0.4
South Africa	1.3	1.5	1.7	0.0	0.0
Memorandum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4.7	5.0	5.3	0.0	0.0
World Growth Based on Market Exchange Rates	3.2	3.3	3.3	-0.1	0.0
World Trade Volume(goods and services) ⁵⁾	5.1	4.8	4.5	-0.3	-0.2
Advanced Economies	4.2	4.3	4.0	-0.5	-0.2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6.7	5.7	5.4	0.2	0.0
Commodity Prices(U.S.dollars)					
Oil ⁶⁾	23.3	33.0	-1.8	15.0	4.7
Nonfuel(average based on world commodity export weights)	6.8	6.0	0.5	0.4	0.0
Consumer Prices					
Advanced Economies	1.7	2.2	2.2	0.2	0.3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⁷⁾	4.0	4.4	4.4	-0.2	0.1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percent)					



〈표 2〉의 계속

(단위: % 변화율)

	실적치	전망치		'18년 4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17	2018	2019	2018	2019
On U.S.Dollar Deposits(six month)	1.5	2.6	3.5	0.2	0.1
On Euro Deposits(three month)	-0.3	-0.3	-0.1	0.0	-0.1
On Japanese Yen Deposits(six month)	0.0	0.0	0.1	0.0	0.0

주: 1) April 2018 World Economic Outlook

2) G7국가들(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과 유로지역 국가들 제외

3) 인도의 실적치, 전망치 데이터는 회계연도 기준이며, 2011년부터 GDP는 2011/12년 회계연도를 기준 년으로 삼은 시장가격 기준 GDP

4)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5) 수출 및 수입량(상품 및 서비스)의 성장률 단순 평균

6) 영국 브렌트(Brent), 두바이(Dubai), 미 서부텍사스의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평균가격. 2017년 원유의 평균가격은 배럴당 52.81 달러, 선물시장에 기초한 가격은 2018년 70.23달러, 2019년은 68.99달러

7)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제외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18, Table 1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전문연구원〉



OECD

■ 2018년 1사분기 고용률⁶⁾ 발표(2018.07.16.)⁷⁾

- (OECD)⁸⁾ 2018년 1사분기 고용률은 68.2%로 전분기 대비 0.2%p 상승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0.1%p 상승한 72.2% 기록
 - 5억 6,700만명이 고용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집계(2017년 4사분기, 5억 6,300만명)
- (유로지역) 2018년 1사분기 고용률은 66.9%로 전분기 대비 0.1%p 상승
 - 고용률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속도는 둔화된 모습

- (국가별) 일본(75.7%→76.3%), 헝가리(68.7%→69.2%)가 가장 크게 상승하였고, 캐나다(73.9%→73.7%), 아이슬란드(85.6%→85.2%) 등은 감소
- (연령대별) 고용률 상승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났으나, 15~24세 고용률이 전분기 대비 0.5%p 높은 41.9%를 기록하며 크게 상승
 - 또한 핵심생산인구(prime age worker)⁹⁾인 25~54세 고용률은 전분기 대비 0.2%p 상승한 78.3%, 55~64세 고용률은 전분기 대비 0.2%p 상승한 61.0% 기록
 - 이러한 패턴은 고령층(55~64세)의 고용률이 더 강해졌던 전년도와 상반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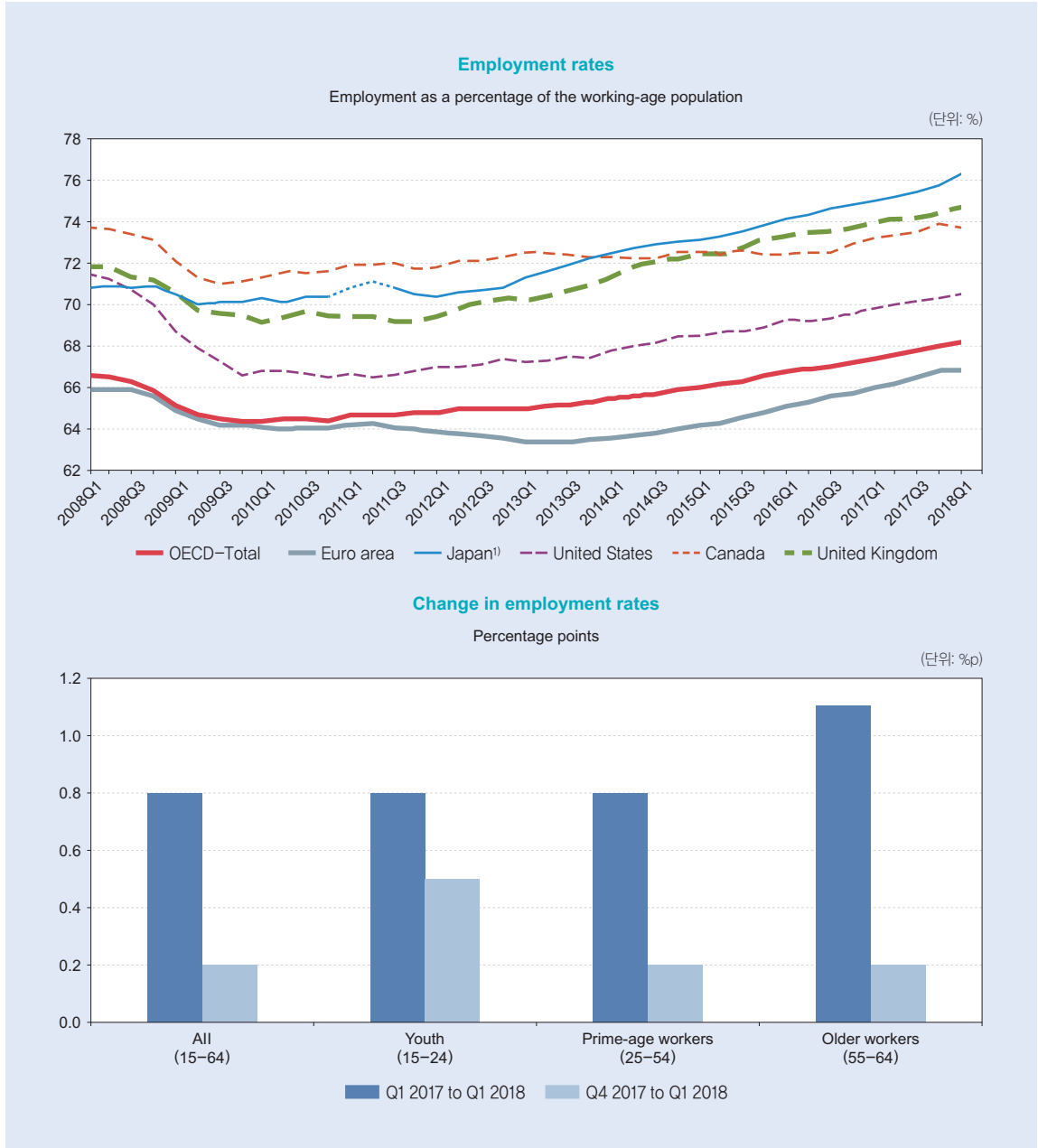
6) 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단, 생산가능인구는 생산가능연령인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를 의미

7) OECD, "OECD employment rate increases to 68,2% in the first quarter of 2018," OECD News Release, 2018.07.16.

8) Lithuania를 포함한 36개 회원국 전체기준

9)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25~54세에 해당하는 인구를 의미

[그림 2] 2018년 1사분기 고용률 및 변화



주: 1) Statistical breaks for Japan in Q1-2011 and Q3-2011.

출처: OECD, "OECD employment rate increases to 68.2% in the first quarter of 2018," OECD News Release, 2018.07.16.



〈표 3〉 OECD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7					2018
					Q4	Q1	Q2	Q3	Q4	
OECD	65.7	66.3	67.0	67.7	67.2	67.4	67.6	67.8	68.0	68.2
G-7	68.6	69.1	69.9	70.6	70.1	70.3	70.5	70.7	70.9	71.1
유럽연합	64.8	65.6	66.6	67.7	66.9	67.2	67.5	67.8	68.0	68.3
유로지역	63.8	64.5	65.4	66.3	65.7	66.0	66.2	66.5	66.8	66.9
호주	71.6	72.2	72.4	73.0	72.3	72.4	72.8	73.2	73.5	73.6
캐나다	72.3	72.5	72.6	73.4	72.9	73.2	73.3	73.5	73.9	73.7
프랑스	63.7	63.8	64.2	64.7	64.2	64.3	64.8	64.7	65.2	65.2
독일	73.8	74.0	74.7	75.3	75.0	74.9	75.1	75.3	75.7	75.6
이탈리아	55.7	56.3	57.3	58.0	57.4	57.8	57.9	58.0	58.2	58.2
일본	72.8	73.4	74.4	75.3	74.8	75.0	75.2	75.4	75.7	76.3
한국	65.6	65.9	66.1	66.6	66.3	66.5	66.7	66.7	66.7	66.8
스페인	56.0	57.8	59.6	61.1	60.1	60.4	61.0	61.3	61.6	61.7
영국	71.9	72.7	73.5	74.1	73.7	73.9	74.2	74.1	74.4	74.7
미국	68.1	68.7	69.4	70.1	69.6	69.8	70.0	70.2	70.3	70.5

주: 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15~64세 인구수}} \times 100$

출처: OECD, "OECD employment rate increases to 68.2% in the first quarter of 2018," OECD News Release, 2018.07.16., Table 1 재구성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전문연구원〉

 미국

【기타】

■ 미 의회예산처(CBO), 2018 장기재정전망(Long-Term Budget Outlook) 보고서 발표(2018.06.26.)¹⁰⁾

※ 동 보고서의 30년 기간(2018-2048)의 장기재정전망은 울 봄에 발표한 기준선전망(10 year baseline)을 전제로 분석

- (국가채무) GDP 대비 연방정부 채무¹¹⁾는 전년도(77%)에 비해 1%p 증가한 78%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2028년에 GDP 대비 100% 수준까지 근접한 후, 30년 후인 2048년에 GDP 대비 152% 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재정수지)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8년에 3.9%로 예측되며, 30년 후인 2048년에 9.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10) CBO, <https://www.cbo.gov/publication/53919>

11) debt held by the public (정부내부거래 제외)

- (지출전망) 올해 GDP 대비 21%로 전망되는 재정지출은 2028년에 23%로 증가 전망

☞ 향후 30년간 GDP 대비 사회 보장 지출, 주요 보건 프로그램(메디케어) 및 정부 채무에 대한 이자지출의 증가 전망

※ 향후 10년간 의무지출 중 연방공무원 연금 및 기타 소득보장 프로그램 지출 등의 GDP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베이비부머 세대¹²⁾의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회 보장 및 건강 보험 관련 지출 상승 전망

- (세입 전망) 올해 16.6%로 전망되는 재정수입은 2028년에 18.5%로 증가 전망

☞ 향후 몇 년간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17 세금감면법¹³⁾ 조항이 만료됨에 따라 2026년에 급격한 세입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GDP 세입규모 증가 전망

• (경제전망) 향후 30년간의 잠재성장률(real potential GDP) 평균 전망치는 1.9%로 지난 50년간의 성장률(2.8%)보다 낮은 수준임

- 노동인구¹⁴⁾(labor force)는 2048년까지 연평균 0.4%의 증가율 전망(주춤한 증가율은 인구의 고령화와 여성노동인구의 안정화에 따름)

-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은 2048년까지 연평균 1.2% 증가 전망

- 연방채무 평균 이자율은 2048년에 연평균 4.4% 수준으로 상승 전망

- 연방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지출의 경우, 올해 4.9% 수준에서 2048년에 6.3%로 증가할 전망이며, 수혜자는 현재 6,200만명에서 9,900만명으로 상승할 전망

〈참고〉 인구 추계

◇ 올해 초, 3억 3,200만명에서 시작한 인구는 연평균 0.6%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2048년에 3억 9,200만명 수준으로 도달할 전망(지난 50년 동안의 인구 평균 성장률은 약 0.9% 수준)

• 현재(2018년 기준) 16%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인구는 2047년에 22%로 전망

• 2007년 기준, 한 여성당 출생률(fertility rate)은 2.1명에서 2010년에 1.9명으로 하락하였으며, 향후 30년간 1.9명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평균기대수명(average life expectancy)은 2018년 현재 79.2세 → 2048년에 82.8세로 상승할 전망

12) 1946년과 1964년 사이 출생

13) P.L. 115-97(Tax Cuts and Jobs Act로 알려져 있음): 동 법은 소득세의 과세 시스템의 단순화 및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비롯하여 법인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자료: 2018 상반기 재정동향)

14) 경제활동참가율에 반영되는 경제활동 인구



〈표 4〉 장기재정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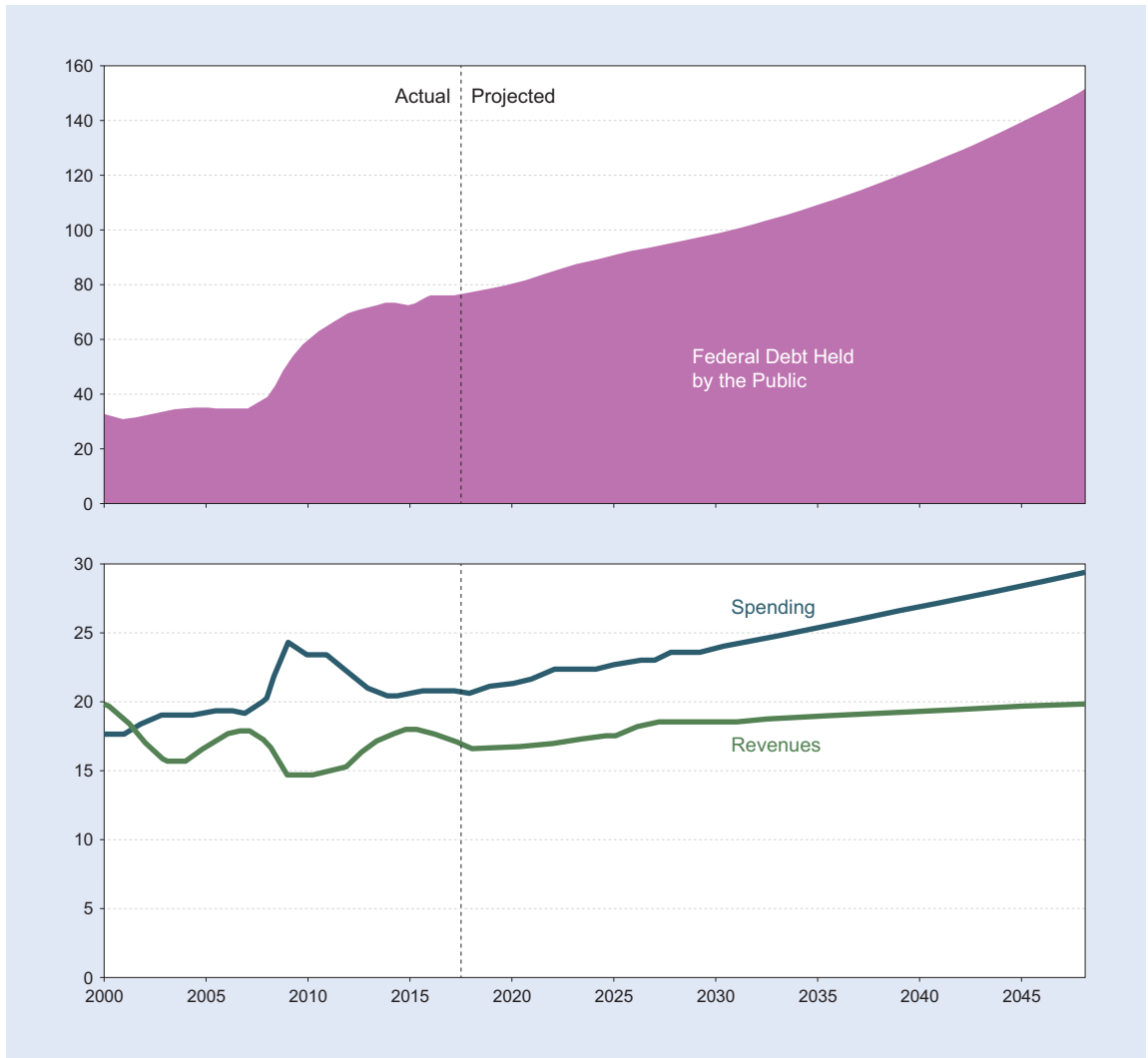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2018	연평균 전망		
		2019-2028	2029-2038	2039-2048
재정수입				
개인 소득세	8.2	8.9	10.1	10.7
사회보험급여세 (payroll tax)	5.9	5.9	6.0	6.0
법인세	1.2	1.5	1.4	1.4
기타	1.4	1.2	1.3	1.5
총수입	16.6	17.5	18.8	19.5
재정지출				
법정지출				
사회보장	4.9	5.5	6.2	6.3
주요 의료 보험	5.2	6.0	7.4	8.7
기타	2.6	2.5	2.3	2.1
소계	12.6	13.9	15.9	17.2
재량지출				
이자	1.6	2.7	3.6	5.3
총지출	20.6	22.4	24.9	27.9
재정적자	3.9	4.9	6.1	8.4
연방채무 (debt held by the public)	78	96	118	152

출처: CBO, The 2018 Long-Term Budget Outlook

[그림 3] CBO의 지출/수입/연방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CBO, The 2018 Long-Term Budget Outlook



-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 6월 고용/실업 현황 발표¹⁵⁾ (2018.07.13.)
 - 2018년 6월 고용률은 올 초 60.1%에서 0.3%p 증가한 60.4%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은 동기간 0.1%p 하락한 4.0%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후, 2017년 2월 이후 60%대를 회복한 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2017년 초 4.8%에서 시작하여, 현재(2018년 6월) 4.0%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5〉 미국 노동 지표¹⁾

(단위: 천명)

항목	기간	2017년 6월	2018년 1월	2018년 5월	2018년 6월
생산가능인구(Civilian non-institutional population) ²⁾		254,957	256,780	257,454	257,642
경제활동인구(Civilian labor force)		160,214	161,115	161,539	162,140
경제활동참가율(Participation rate, %)		62.8	62.7	62.7	62.9
고용(Employed)		153,250	154,430	155,474	155,576
고용률(Employment-population ratio, %)		60.1	60.1	60.4	60.4
실업(Unemployed)		6,964	6,684	6,065	6,564
실업률(Unemployment rate, %)		4.3	4.1	3.8	4.0
비경제활동인구(Not in labor force)		94,743	95,665	95,915	95,502

주: 1) 생산가능인구 제외한 모든 항목 수치에 계절조정 적용

2) Non-institutional civilian population: 근로연령(16세)에 미달되거나 군대 또는 투옥된 자를 제외한, 고용 가능한 인구

출처: 미 노동부 노동 통계국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전문연구원〉

15) Bureau of Labor Statistics, <https://www.bls.gov/bls/unemployment.htm>

 **일본**

【예산·결산 등】

- 재무성, 예산집행 조사¹⁶⁾ 결과 발표(2018.07.06.)¹⁷⁾
 - 2018년도 예산집행 조사는 총 45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결과에서는 조사를 종료한 35건에 대한 결과를 발표
 - 조사사안의 필요성, 유효성, 효율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등의 폐지를 포함한 향후 개선점, 검토의 방향성을 지적
 - 사업의 필요성(사업의 목적이 국민과 사회의 요구에 충족되는지, 국가가 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 및 보다 효과적인 실시 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 사안을 지적
 - 사업의 유효성(사업의 목적과 목표와 대조하여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 및 보다 효과적인 실시 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사안을 지적
 - 사업의 효율성(필요한 효과를 보다 적은 자원으로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고, ‘단가설정’과 ‘실시방법’ 등의 재검토를 요구한 사안을 지적
- 조사결과는 각 부처의 2019년도 개선요구와 향후 예산집행에 확실히 반영하도록 요청

<표 6> 2018년도 예산집행 조사 대상사안 일람

부처명	조사사안 명	지적내용			follow up 조사	특별회계
		① 필요성	② 유효성	③ 효율성		
내각부 환경성	원자력발전시설 등 긴급 시 안전대책 교부금 및 방사선 감시 등 교부금		○	○		에너지 특별회계
내각부	실용 준천정위성(準天頂衛星)시스템의 개발·정비·운동			○		
내각부	지역 저출산 대책 강화사업	○	○			
총무성	로컬 10,000 프로젝트			○		
총무성	IoT 서비스 창출지원 사업	○	○			
법무성	인권개발 활동 등 위탁비			○	2016년도	

16) 예산집행 조사는 재무성 주계국의 예산담당 직원과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예산집행을 접할 기회가 많은 재무국 직원이 예산 집행의 실태 조사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하여, 예산 검토 및 집행 효율화 등으로 연결해나가는 작업을 의미. 예산집행 조사는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매년 본 조사 사안에 대해 공표하고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결과와 다음연도 예산 반영 상황을 발표

17) 재무성, 「平成30年度予算執行調査の調査結果の概要」, 2018.07.06.
https://www.mof.go.jp/budget/topics/budget_execution_audit/ty2018/sy3007/3007c.pdf



〈표 6〉의 계속

부처명	조사사안 명	지적내용			follow up 조사	특별회계
		① 필요성	② 유효성	③ 효율성		
외무성	일본인학생 인턴십 지원·일본인 연구자 육성 지원 사업		○	○		
외무성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 시행 기술협력 컨설팅트 계약 등			○		
외무성	외무성 해외여행등록 타비레지		○		2016년도	
재무성	감시정 탑재 감시카메라 정비비			○		
재무성	확정 신고 기간의 세무사 무료 세무신고 상담 경비			○		
문부과학성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공립 문교시설 정비비		○	○	2014년도	
문부과학성	국립대학법인 운영비교부금 등		○	○		
문부과학성	연구기기 정비·공유에 관한 조사		○	○		
문부과학성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운영비교부금 등		○	○		
문부과학성	일본유산매력 홍보추진사업		○	○		
후생노동성	국립고도전문의료연구센터가 실시하는 바이오뱅크 정비사업			○	2012년도	
후생노동성	조혈모세포이식 의료체제정비사업		○	○		
후생노동성	장애복지서비스(처우개선)			○		
농림수산업성	농지이용 최적화교부금 및 농업위원회교부금		○	○		
농림수산업성 국토교통성	해안사업(대규모지진 예상 지역의 해안보전시설 내진대책)			○		
농림수산업성	어업인재육성종합지원사업		○	○		
농림수산업성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의 용선계약		○	○	2012년도	
경제산업성	지역핵심기업·중소기업 등 제후지원사업	○	○	○		
경제산업성	산업계 사이버 시큐리티 추진사업	○	○	○		
경제산업성	석유비축사업 보조금	○	○	○		에너지 특별회계
국토교통성	사회자본종합 정비사업비(도로사업 등)		○	○		
국토교통성	컴팩트플러스 네트워크 추진		○	○		
국토교통성	하천 유지보수사업 등의 유목 등 처리 관련 경비			○		
국토교통성	사회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정책	○		○		
국토교통성	항만정비사업(선박·정박지 등 정비비용 감축)			○		
국토교통성	방일프로모션 지방재휴사업		○			
방위성	예비자위관제도 운용		○		2012년도	
방위성	장비 선정 수속		○	○		
방위성	장비 프로젝트 관리		○	○		
합 계		6	23	30		

출처: 재무성, 「平成30年度予算執行調査の調査結果の概要」, 2018.07.06.

■ 재무성, 2019년도 예산의 개산요구 기준¹⁸⁾ 발표 (2018.07.10.)¹⁹⁾

- 2019년도 예산은 「2018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²⁰⁾의 ‘신경제·재정재생계획’의 틀에서 본격적인 세출개혁을 위해 노력
 - 연금·의료 등에 대해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금액에서 고령화 등에 따른 자연증가 금액(6,000 억엔)을 가산한 범위 내에서 요구
 - ☞ 세출개혁 노력을 포함한 합리화·효율화 노력으로 고령화에 따른 자연증가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이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결과를 2019년도 예산에 반영
 -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에 대해서는 ‘신경제·재정재생계획’과의 정합성에 유의하여 요구
 -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며, 의무적 경비를 삭감하는 경우 동일한 금액을 재량적 경비로 요구 가능
 -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금액의 90%(요구기초 금액) 범위 내에서 요구
 - 예산의 중점화를 위해 「2018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 등을 바탕으로 한 모든 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설정
 - ☞ 각 부처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서 기타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과 요구기초 금액의 차액의 3배 금액, 의무적경비가 전년도 당초예

산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액의 3배 금액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요구

- 세출개혁 노력을 기조로 한 효율화를 시행하고,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증가 금액과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수요변동에 대한 대응에 대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
 - 요구 금액에 대해 지금까지 아베내각의 세출개혁 노력을 기조로 한 효율화를 시행하고, 새롭게 설정한 우선순위 과제와 관련한 요구 금액에 대해서도 세출개혁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바탕으로 조치
 -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증가 금액(사회보장의 충실, 교육부담의 경감·육아지원·개호(간병)인력 확보 등)에 대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
 - ‘신경제·재정재생계획’에서의 ‘2019년 10월 1일에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수요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세출개혁 노력을 지속하는 방침과 별도로 2019·2020년도 당초 예산에 임시·특별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을 바탕으로 한 대응을 예산편성과과정에서 검토

18) 국가의 예산편성에 앞서 각 부처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 개략적인 예산을 요구하는 문서(개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재무성에 제출하는 것을 개산요구라 하며, 개산요구기준에서는 각 부처의 개산요구에 앞서 예산편성의 방침, 상한액을 명시

19) 재무성, 「平成31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 2018.07.10. 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9/sy300710.pdf

20) 2018년 6월 각의 결정. GDP 대비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목표시기를 기존 2020년도에서 2025년도로 연기하는 새로운 재정건전화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신경제·재정재생계획’을 책정. 자세한 내용은 상반기 「KIPF 재정동향」 일본편 참조



[기타]

- 내각부, 「2018년도 내각부 수정경제전망」²¹⁾ 발표 (2018.07.06.)²²⁾
 - 2018년도 내각부 수정경제전망에서는 2018년 실질GDP 성장률이 1.5%, 명목GDP 성장률이 1.7%로 지난 1월 전망보다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9년도 실질GDP 성장률은 1.5%, 명목GDP 성장률은 2.8%로 전망

- 일본 경제는 5년 만에 걸친 아베노믹스의 추진으로 기업부문의 개선이 가계부문으로 확산되어 경제의 선순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완만히 회복되고 있음
- 향후에도 해외경제 회복이 계속되고 각종 정책의 효과와 더불어 고용·소득 환경이 개선되어 개인소비 및 설비투자 등 민간 수요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기대

〈표 7〉 2018년도 내각부 수정경제전망

(단위: %, 전년 대비 %)

구분	FY2017 (실적)	FY2018 (1월 전망)	FY2018 (7월 전망)	FY2019 (7월 전망)
실질GDP	1.6	1.8	1.5	1.5
민간소비	0.9	1.4	1.2	1.2
민간설비	3.2	3.9	3.7	3.4
내수기여도	1.2	1.6	1.4	1.3
민간수요기여도	1.0	1.5	1.3	-
공적수요기여도	0.2	0.1	0.1	-
외수기여도	0.4	0.1	0.1	0.2
명목GDP	1.7	2.5	1.7	2.8
소비자물가지수(종합)	0.7	1.1	1.1	1.5
실업률	2.7	2.7	2.5	2.4
GDP 디플레이터	0.1	0.8	0.2	1.3

주: 1. 소비세율 인상(2019년 10월 예정)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면, 소비자물가지수(종합)에 미치는 영향은 약 0.5%p, GDP 디플레이터에 미치는 영향은 약 0.4%p로 전망

2. 2019년도 공적투자는 명목치 기준으로 2018년도와 동일하게 설정

출처: 내각부, 「平成30(2018)年度 内閣府年央試算」, 2018.0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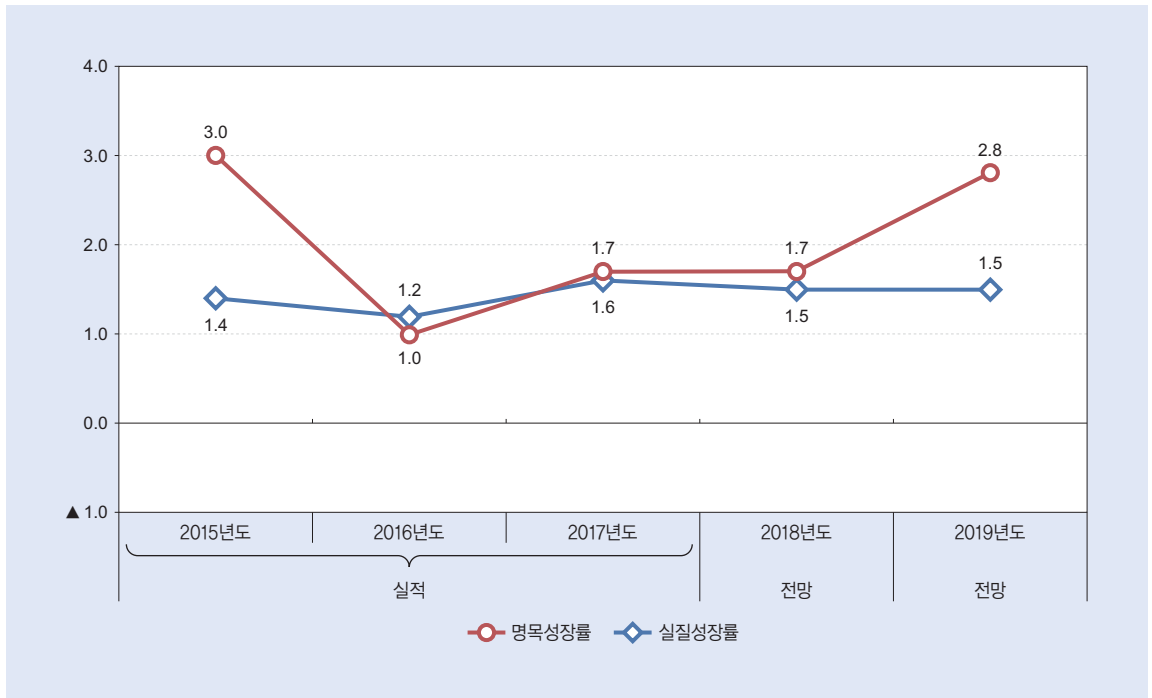
21) 내각부 수정경제전망은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2년도의 단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매년 7월경 발표, 1월에 발표된 경제전망을 전제로 연중 시점에서 최신경제지표 등을 반영하여 전망

22) 내각부, 「平成30(2018)年度 内閣府年央試算」, 2018.07.06.

<http://www5.cao.go.jp/keizai/mitoshi/2018/h300706shisan.pdf>

[그림 4] 국내총생산

(단위: %)



출처: 내각부, 「平成30(2018)年度 内閣府年央試算」, 2018.07.06.

■ 내각부, 「중장기 경제 · 재정전망」 발표(2018.07.09.)²³⁾

- (목적) 본 전망은 경제재생 및 재정건전화의 지금까지 진행상황 평가와 향후 대책에 대한 검토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
- (시나리오별 가정) 2019년도까지의 경제동향은 내각부 수정경제전망을 바탕으로 하며, 2020년도 이후는 과거 실적 및 현재 경제동향을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GDP 및 물가 동향 등의 중장기

적 거시경제 상황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비교

- (성장실현 시나리오) 아베노믹스에서의 디플레이션 탈출 · 경제재생이라는 목표를 위한 정책 효과가 과거 실적을 고려한 현실적인 속도로 실현된 것을 가정

⇒ 총요소생산성(TFP) 상승률이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이 되기 이전 실제 경험한 상승폭과 속도로 현재 수준(약 0.6%)에서 약 1.5%까지 상승

23)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18.07.09.
<http://www5.cao.go.jp/keizai3/econome/h30chuchouki7.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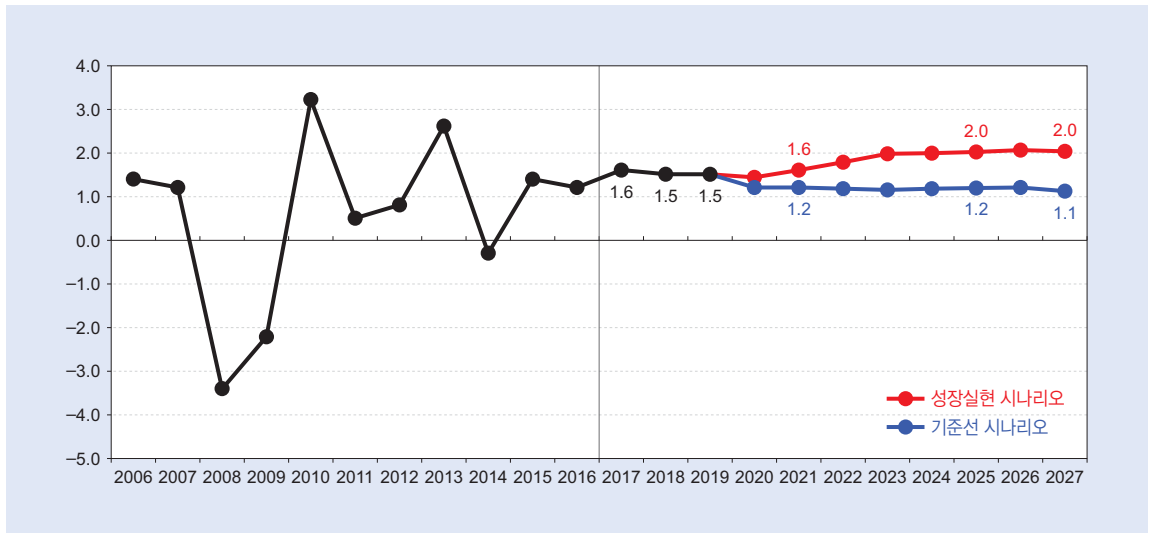
- ☞ 노동참가율은 여성, 고령자는 현재 노동참가율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형태로 상승하고, 그 외는 「2015년도 고용정책연구회 보고서」의 노동력 수급추계를 바탕으로 상승
- (기준선 시나리오) 경제가 현재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
 - ☞ 총요소생산성(TFP) 상승률을 향후 약 1.0%로 가정
 - ☞ 노동참가율은 「2015년도 고용정책연구회 보고서」의 노동력 수급추계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완만하게 상승
- (재정전망에 대한 가정) 2019년도 예산에 대해 세출개혁 효과의 절반 정도를 반영하고, 공적 투자는 명목치 기준으로 2018년과 동일하게 설정
 - ☞ 2020년도 이후 세출은 사회보장지출은 고령화 요인 및 물가·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증가하고, 사회보장 외 일반세출은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증가하도록 설정
- (경제전망) 성장실현 시나리오 기준으로 잠재성장률 및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2020년대 초반까지의 실질GDP 성장률이 1월 전망 대비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명목GDP 600조엔을 달성²⁴⁾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 수준을 나타낼 전망
 - 기준선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실질 1% 이상, 명목 1%대 후반을 나타낼 전망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전망) 성장실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19년도 예산에 세출개혁을 일부 반영함에 따라 2025년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0.3%까지 개선될 것이며, 기초재정수지의 흑자 전환 시기는 1월 전망과 동일한 2027년도로 전망
 - 기준선 시나리오에서는 2025년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1.3%로 전망되어, 전망 기간(2018~2027) 내에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채무잔고는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준선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대 중반 이후 하락을 멈출 것으로 전망

24) 아베내각의 경제재정정책인 '새로운 세 개의 화살(2015년 9월 발표)'에서는 희망을 이루는 강한 경제(명목GDP 600조엔 달성), 꿈을 이루는 육아지원(희망출생률 1.8% 실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개호(간병)인력 이직 제로 실현)을 일체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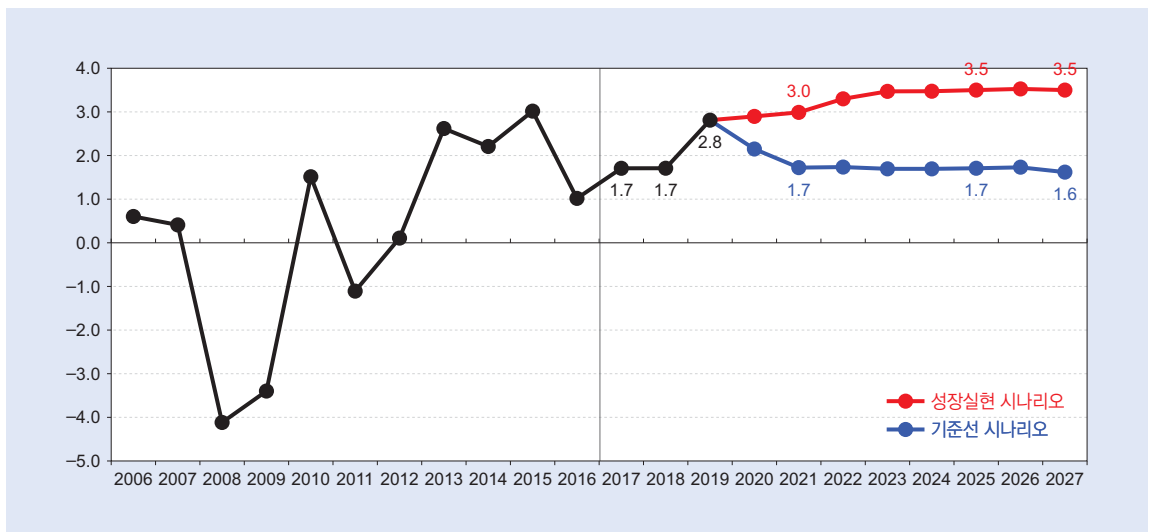
[그림 5] 실질GDP 성장률 전망

(단위: %)



[그림 6] 명목GDP 성장률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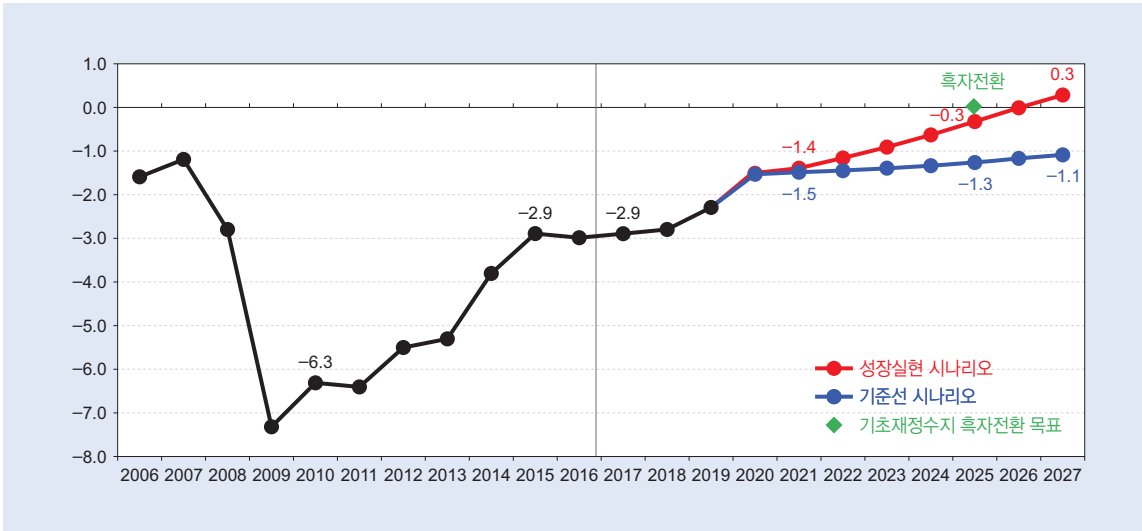


출처: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18.0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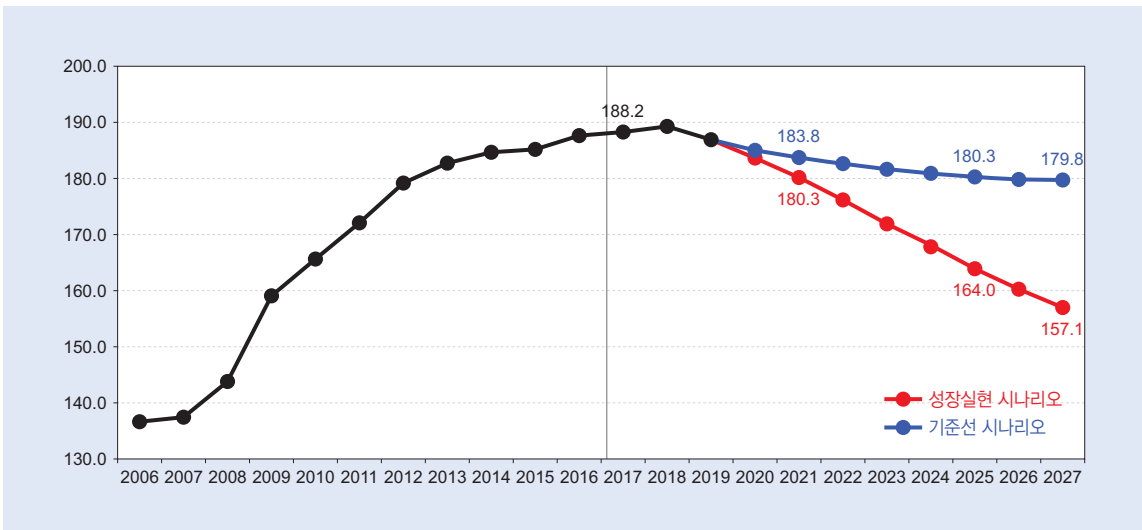
[그림 7]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그림 8] 국가 및 지방의 채무잔고 전망¹⁾

(단위: GDP 대비, %)



주: 1) 복구·부흥 대책의 경비 및 자원 금액을 제외

출처: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18.07.09.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전문연구원〉

 독일

【예산 · 결산 등】

- 연방재무부, FY 2019 예산안 및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2018.07.06.)²⁵⁾
 - (재정지출) 연방정부의 지출은 2018년 3,436억유로에서 2022년 3,755억유로까지 상승할 전망이며, 교통인프라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기반투자, 교육 · 연구, 사회적 평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
 - (인프라투자)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지방투자기금, 건설지원 기금 등의 특별기금(Sondervermögen)²⁶⁾에 24억유로 투자할 전망

- (교육 · 연구) 교육, 과학, 연구분야 지원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022년까지 총 950억유로를 지출할 계획
- (내치) 연방경찰과 관세청 인력강화를 위해 내무부 예산을 전년 대비 30억유로 증액할 계획
- (국방 · 개발협력)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0억유로 증액될 예정이며, 국제경제개발협력 분야 예산 또한 크게 증가한 97억유로(전년 대비 10억유로 증가)로 집계
- (아동수당)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강화를 위한 자녀양육비 지원,²⁷⁾ 주간 탁아소 등 보육시설 질향상과 전일제학교 지원을 위해 2019년~2022년 동안 각각 55억유로, 2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

〈표 8〉 FY2019 예산안 및 FY2018-22 중기재정계획

(단위: 억유로)

	2018	2019	중기재정계획안 기본수치		
			2020	2021	2022
재정지출	3,436	3,568	3,632	3,693	3,755
전년 대비 증가율(%)	+3.9	+3.8	+1.8	+1.7	+1.7
재정수입	3,436	3,568	3,632	3,693	3,755
조세수입	3,213	3,330	3,338	3,468	3,597
신규차입	-	-	-	-	-
투자	374	379	379	379	379

출처: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8.07.06.

25)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8.07.0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8/07/2018-07-06-PM-Haushalt2019.html>

26) 특별기금(Sondervermögen): 특정한 목적을 위해 창설된 회계로 기본적으로는 각급정부의 예산과는 별도의 회계를 가지며, 공기업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특별기금의 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원칙법에 규정된 연방과 주의 예산에 관한 원칙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한국조세연구원, 『독일의 재정제도』, 2011).

27) '19년 7월 1일부터 매월 10유로씩 증액(연방내각에서 저소득층과 중간소득가정의 가처분소득 강화를 위한 가족구제법(Familienentlastungsgesetzes) 조안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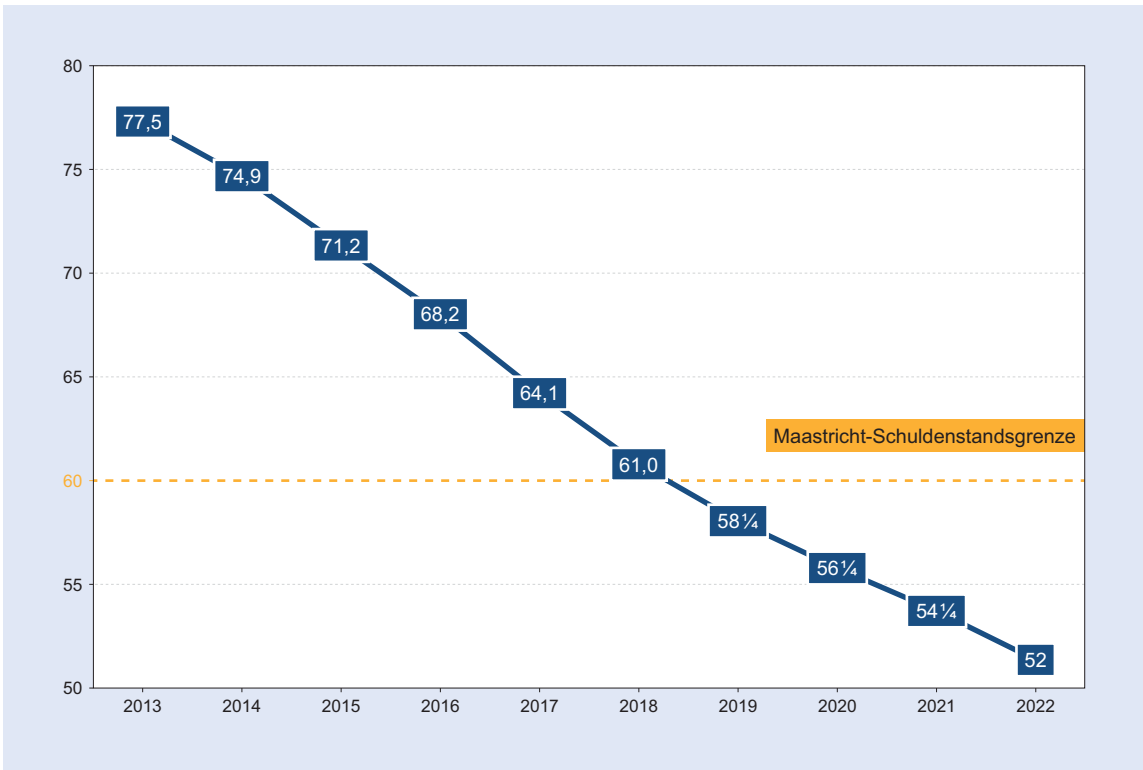


- (주택지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2020년, 2021년 각각 1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며, 주택아동수당제도(Baukindergeld)²⁸을 통한 자가 부동산 취득을 촉진할 계획

• (국가채무) 안정성장협약에 의하여 2019년까지 GDP 대비 60% 이하 목표수준을 조기 달성할 전망이며, 2022년까지 52% 수준을 달성할 전망

[그림 9] 독일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주: 노란색 점선은 안정성장협약 상한선인 GDP 대비 60%
출처: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8,07,06.

〈자료 수집 및 정리: 엄동욱 연구원〉

28) 주택아동수당제도(Baukindergeld): 가족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젊은 가족들이 자가주택을 구입할 때 국가가 지원해주는 정책이며, 자녀 1명당 연 1,200유로를 10년간 지급

프랑스

【기타】

- 통계청, 2018년 1분기 일반정부 채무 발표(2018. 06.29.)²⁹⁾
 -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2018년 1분기 일반정부 채무는 2조 2,553억유로로 2017년 4분기 대비 369억유로 증가
 -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97.6%로 2017년 4 분기에 비해 0.8%p 증가
- 감사원, 공공재정 현황 및 전망 보고서(La situation et les perspectives des finances publiques) 발표(2018.06.27.)³⁰⁾
 - (재정적자) 2017년 프랑스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6%로 감소하여 2007년 수준에 근접하였음
 - 2018년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인 2.3%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19년에서 2022년 기간 동안 구조적 재정수지는 계속 개선되어, 중기에 구조적 재정수지는 균형에 가까워질 전망

〈표 9〉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일반정부 채무

(단위: 십억유로)

	2017 Q1	2017 Q2	2017 Q3	2017 Q4	2018 Q1
일반정부 채무	2,214.9	2,236.8	2,231.3	2,218.4	2,255.3
(GDP 대비 %)	99.1%	99.3%	98.2%	96.8%	97.6%
중앙정부	1,763.80	1,794.80	1,799.60	1,779.00	1,819.70
다양한 중앙 행정 조직 ¹⁾	12.2	11.9	11.9	11.8	12
지방정부	199	198.1	196.6	201.5	200.1
사회보장예산	239.9	232.1	223.3	226.1	223.5

주: 1) ODAC(Oranismes divers d'administration centrale): 사회보장, 경제사업, 교육 등 모든 분야의 공공행정기관을 포함
출처: 프랑스 통계청, 2018.06.29.

〈표 10〉 프랑스 GDP 대비 재정수지 추이

(단위: GDP 대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전망)
재정수지	-2.7	-3.3	-7.2	-6.9	-5.2	-5.0	-4.1	-3.9	-3.6	-3.4	-2.6	-2.3

출처: 프랑스 통계청

29) 통계청,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3578205>

30) 프랑스 예결산.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8/cour-comptes-publique-rapport-situation-perspectives-finances-publiques#.W0Q-EfKS-Uk>



☞ 하지만, 이는 낙관적인 경제전망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이며, 공공개혁 프로그램³¹⁾의 이행 속도에 따라 재정지출이 전망치보다 증가할 수 있음

-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주변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나,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되며 2009년에 시작된 초과적자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³²⁾가 2018년 6월 종료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 (지출) FY2016-17 지출은 지난 회계연도 7,422억파운드에서 7,607억파운드로 2.5% 증가

* 사회보장급여 2,237억파운드, 재화/서비스 구매 1,948억 파운드, 인건비 1,911억파운드 등임

- (순부채) FY2016-17 순부채(net liability)³⁶⁾는 지난 회계연도(1조 9,860억파운드) 대비 21.9% 증가한 2조 4,207억파운드임

- (자산) FY2016-17 자산은 유형고정자산, 금융자산 등의 증가로 지난 회계연도(1조 7,424억파운드) 대비 9.2% 증가한 1조 9,030억파운드임

- (부채) FY2016-17 부채는 공공부문 연금부채와 정부 차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 회계연도(3조 7,284억파운드) 대비 16% 증가한 4조 3,237억파운드임



영국

【예산·결산 등】

- 연재무부, FY2016-17 결산보고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16-17: year ended 31 March 2017)³³⁾ 발표(2018.06.28.)³⁴⁾

- (순지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순지출³⁵⁾(Net expenditure on public services)은 399억파운드로 전년도(483억파운드) 대비 약 17.4% 감소

- (수입) 조세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FY2016-17 수입은 지난 회계연도(6,939억파운드) 대비 3.9% 증가한 7,208억파운드임

*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6,281억파운드, 기타 수입은 전년 대비 8.5% 감소한 927억파운드로 나타남

31)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공무원에게 현대화된 근무환경 제공, 2022년까지 GDP 대비 공공지출 3%p 감축을 목표로 하는 개혁 프로그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참고

32) 초과적자시정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는 GDP 대비 재정적자가 3% 초과하거나 채무가 60%를 초과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EU의 조치로, 프랑스는 EU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6월 22일 초과적자시정절차의 종료가 결정됨

33) Whole of Government Accounts(WGA)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 영국 공공부문의 7천여개 기관에 대한 통합된 회계감사보고서로 정부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ESA10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정부 예산에 활용되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과 달리 WGA는 국제회계기준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요 통계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4) HM Treasur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hole-of-government-accounts-2016-to-2017>

35) 지출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장기 부채 금융비용 등이 반영되기 이전의 순지출임

36) 총부채에서 총자산을 차감하여 산출

〈표 11〉 수입 및 지출

(단위: 십억파운드)

	2015-16	2016-17
수입(Revenue)	693.9	720.8
조세수입(Tax revenue)	592.6	628.1
기타수입(Other revenue)	101.3	92.7
지출(Total expenditure on public services)	742.2	760.7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	222.5	223.7
인건비(Staff costs)	193.3	191.1
재화/서비스 구매(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192.1	194.8
교부금 및 보조금(Grants and subsidies)	54.1	53.6
감가상각 및 감소(Depreciation and impairment)	42.7	47.1
차입이자(Interest costs on government borrowing)	28.3	31.8
총당금(Increase in provisions)	9.2	18.6
공공서비스에 대한 순지출(Net expenditure on public services)	48.3	39.9
장기 부채 금융 비용(Financing costs of long-term liabilities, including) discounting	187.4	68.3
금융 자산·부채의 재평가	8.1	-10.4
연간 순지출(Net expenditure for the year) ¹⁾	243.8	97.8

주: 1) 공공서비스에 대한 순지출에서 장기부채 금융비용, 금융자산·부채의 재평가 등을 반영하여 산출
출처: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16-17: year ended 31 March 2017*.

〈표 12〉 자산 및 부채

(단위: 십억파운드)

	2015-16	2016-17
총자산(Total assets)	1,742.4	1,903.0
유형고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	1,120.2	1,167.6
기타 금융자산(Other financial assets)	373.0	458.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Trade and other receivables)	154.7	173.2
기타 자산(Other assets)	94.5	103.3
총부채(Total liabilities)	3,728.4	4,323.7
공공부문연금(Public sector pension schemes)	1,424.7	1,834.7
정부 차입(Government borrowings)	1,260.6	1,289.0
기타 금융부채(Other financial liabilities)	557.4	692.2
총당금(Provisions)	305.5	322.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Trade and other payables)	180.2	185.6
순부채(Net liabilities)	1,986.0	2,420.7

출처: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16-17: year ended 31 March 2017*.



[기타]

■ 영국 정부, 브렉시트(Brexit) 관련 백서(*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발표(2018.07.12.)³⁷⁾

• (주요 내용) 영국과 EU의 미래 관계에 대한 제안을 담은 백서로 향후 영국-EU 간의 관계 운영, 양측에 발생할 이익, 영국의 자주권과 EU의 자율권 모두를 존중해야 하는 근거 등을 담고 있음

- (경제적 협력) 상품(농산물 포함)에 대한 자유 무역지구 설치(공통 규정 적용 등), FCA(Facilitated Customs Arrangement)³⁸⁾ 단계적 도입,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EU와의 연계 완화, 에너지 및 수송 분야에 대한 지속적 협력, 자유로운 이동 제한(단 관광, 임시 비즈니스 등 예외 규정), 독립적인 무역 정책 등 제시
- *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엄격한 국경 통제(hard border)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포함

- (안보 협력) 범죄·테러 조사를 위한 사법당국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등 기존의 운영 기능 유지, Europol, Eurojust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영국의 참여, 외교·국방·개발 이슈 협력을 위한 합의 등 제시

- (기타 협력) EU-영국 간 지속적인 개인정보 교환·보호·협력을 위한 데이터 보호제도, 과학·혁신, 문화·교육, 국방 연구개발 등에 대한 공동 노력을 위한 제도, 연례적 어업 협상에

대한 신규 협정 등

- (제도적 합의) EU-영국 간 광범위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 및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이는 영국의 EU 탈퇴를 반영해야 함

* 예: EU 사법재판소 등 EU 기관의 법 제정권, EU법 직접 효력 원칙과 EU법 우위 원칙 등을 더 이상 영국에 적용하지 않음

- (향후 계획) 올해 가을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영국 협상단은 동 백서의 제안 사항을 기반으로 EU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임

* 영국은 2019년 3월 29일에 EU에서 공식 탈퇴하고,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을 운영하기로 EU와 합의한 바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전문연구원〉

37) Department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future-relationship-between-the-united-kingdom-and-the-european-union>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sos-dominic-raab-statement-on-the-future-relationship-between-the-united-kingdom-and-the-european-union-12-july-2018>

38) 영국 내에서 최종 소비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영국의 관세 및 무역 정책을, 영국을 통해 EU로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EU의 관세 및 무역 정책을 적용하여 세관 신고,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일반 요건 등 영국-EU간 세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

정책 흐름

■ 2018년 세법개정안



2018년 세법개정안

* 본 자료는 2018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1.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1 추진 배경

-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
 - 청년 일자리 대책(18년 3월), 지역 대책(4월), 혁신성장 지원방안(5월) 등 주요 대책에 포함
-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기능 강화
 -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세제지원
-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내용을 개선·보완
 - 대한상의 등 경제·시민단체, 공인회계사회 등 전문가 그룹, 중기부·국세청 등 관계 부처의 개정 건의(약 1천여건)를 검토·반영
 -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논의하여 권고한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일부 반영
 - 공청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심의회 및 관계 실·국간 토론회를 개최하여 토의·검토하고, 세제발전심의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경제 여건, 외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및 소득재분배 등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 마련

2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기본 방향

◇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1. 소득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 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지급액 확대
- ②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을 통한 부동산 세제 적정화
- ③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제도 내실화

2.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 ① 위기지역*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신설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시, 거제시 등 9개)
- ②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인원 증가시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③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위주로 확대하고, 공제기간도 연장
- ④ 신성장 기술 R&D 및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 조세체계 합리화

- ①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제세 부담금 조정(유연탄 인상, LNG 인하)
- ②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 제도 개선
- ③ 외국인투자에 따른 내·외국 자본간 법인세 감면 차별 해소(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
- ④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인하

II. 세법개정 상세 내용

1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 형평 제고

1. 저소득층 지원

■ 근로장려금 확대

※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18년 7월)에서 기 발표

- ◇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서 근로장려금 확대·재설계
 -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해 근로유인 제고 및 근로빈곤층 소득지원 강화
 - *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70% 수준까지 확대하여 기초생보(중위소득 30~50% 이하 지원)보다 넓은 범위 포괄

		현행	개정안
연령요건		30세 미만 단독가구 배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포함
소득요건	단독	1,3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홀벌이	2,1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 재산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가구당 2억원 미만 * 재산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최대 지급액 (만원)	단독	85	150
	홀벌이	200	260
	맞벌이	250	300
최대 지급액 구간 (만원)	단독	600~900	400~900
	홀벌이	900~1,200	700~1,400
	맞벌이	1,000~1,300	800~1,700
지급방식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¹⁾ (근로소득자)
지급규모		1.2조원	3.8조원
		166만가구	334만가구

주: 1) '19년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이 두 번 지급('18년 소득분배에 대해 '19년 9월에, '19년 상반기 소득분배에 대해 '19년 12월에 지급)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 확대(자녀 1인당 30~50만원 → 50~70만원)

* (현행) 생계급여수급자는 자녀장려금 수급 불가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확대

※ 「저소득층 일자리 · 소득지원 대책」(18년 7월)에서 기 발표

-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확대(1일 10만원 → 15만원)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text{일당} - \text{근로소득공제액}) \times 6\%] \times 45\%$$

■ 청년(15~34세)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주거복지로드맵」(17년 11월)에서 기 발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에게 이자소득 비과세(*21.12.31까지 가입)

* (요건) 2년 이상 가입, (한도) 이자소득 500만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 추진계획」(18년 3월)에서 기 발표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장병(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복무기간(최대 24개월) 동안 이자소득 비과세(*21.12.31까지 가입)

*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이자율 6.5%(이 중 1%p는 예산지원) 적용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성실사업자 등(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 금액 인하(2천만원 → 1천만원)

* (현행) 기부금 2천만원 이하: 15% 공제,

2천만원 초과: 30% 공제

(개정) 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 공제,

1천만원 초과: 30% 공제

- 지정 ·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 확대(5년 → 10년)

* 지정기부금: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법정기부금: (개인) 100%, (법인) 50%

-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확대(10 → 30%)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 「18년 경제정책방향」(17년 12월)에서 기 발표

-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임원 및 총급여 7천만원 이상 제외)의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 부동산 세제 적정화

■ 종합부동산세 개편

※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18년 7월)에서 기 발표

◇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 '2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비중* 도달 예상

* GDP 대비 보유세 비중(OECD 평균 1.1%): ('15) 0.8 → ('22) 1% 수준

구분	현행	개정안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5%p씩 90%까지 인상 ('19)85% → ('20)90% 																				
세율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 과표 6억원 초과 0.1~0.5%p 인상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0.3%p 추가과세 * 종합부동산세가 인별 과세체계인 점을 감안, 인별로 판단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과표</th> <th colspan="2">세율</th> </tr> <tr> <th>2주택 이하</th> <th>3주택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6억원 이하</td> <td>좌 동</td> <td>좌 동</td> </tr> <tr> <td>6~12억원</td> <td>0.85% (+0.1%p)</td> <td>1.15% (+0.4%p)</td> </tr> <tr> <td>12~50억원</td> <td>1.2% (+0.2%p)</td> <td>1.5% (+0.5%p)</td> </tr> <tr> <td>50~94억원</td> <td>1.8% (+0.3%p)</td> <td>2.1% (+0.6%p)</td> </tr> <tr> <td>94억원 초과</td> <td>2.5% (+0.5%p)</td> <td>2.8% (+0.8%p)</td> </tr> </tbody> </table>	과표	세율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6억원 이하	좌 동	좌 동	6~12억원	0.85% (+0.1%p)	1.15% (+0.4%p)	12~50억원	1.2% (+0.2%p)	1.5% (+0.5%p)	50~94억원	1.8% (+0.3%p)	2.1% (+0.6%p)	94억원 초과	2.5% (+0.5%p)	2.8% (+0.8%p)
	과표	세율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6억원 이하	좌 동	좌 동																				
6~12억원	0.85% (+0.1%p)	1.15% (+0.4%p)																				
12~50억원	1.2% (+0.2%p)	1.5% (+0.5%p)																				
50~94억원	1.8% (+0.3%p)	2.1% (+0.6%p)																				
94억원 초과	2.5% (+0.5%p)	2.8% (+0.8%p)																				
종합합산 토지	<table border="1"> <thead> <tr> <th>과표</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5억원 이하</td> <td>0.75%</td> </tr> <tr> <td>15~45억원</td> <td>1.5%</td> </tr> <tr> <td>45억원 초과</td> <td>2%</td> </tr> </tbody> </table>	과표	세율	15억원 이하	0.75%	15~45억원	1.5%	45억원 초과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0.25~1%p 인상 <table border="1"> <thead> <tr> <th>과표</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5억원 이하</td> <td>1% (+0.25%p)</td> </tr> <tr> <td>15~45억원</td> <td>2% (+0.5%p)</td> </tr> <tr> <td>45억원 초과</td> <td>3% (+1%p)</td> </tr> </tbody> </table>	과표	세율	15억원 이하	1% (+0.25%p)	15~45억원	2% (+0.5%p)	45억원 초과	3% (+1%p)				
과표	세율																					
15억원 이하	0.75%																					
15~45억원	1.5%																					
45억원 초과	2%																					
과표	세율																					
15억원 이하	1% (+0.25%p)																					
15~45억원	2% (+0.5%p)																					
45억원 초과	3% (+1%p)																					
별도합산 토지	<table border="1"> <thead> <tr> <th>과표</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200억원 이하</td> <td>0.5%</td> </tr> <tr> <td>200~400억원</td> <td>0.6%</td> </tr> <tr> <td>400억원 초과</td> <td>0.7%</td> </tr> </tbody> </table>	과표	세율	200억원 이하	0.5%	200~400억원	0.6%	400억원 초과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과표	세율																					
200억원 이하	0.5%																					
200~400억원	0.6%																					
400억원 초과	0.7%																					

■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 ①, ②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17년 12월)에서 기 발표

- ①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전환(18년까지 비과세)
- ②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필요경비 차등 조정(60% → 등록사업자: 70%, 미등록사업자: 50%)
 -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분리과세 산식: [(수입금액-수입금액×60%)-400만원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14%
- ③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시 기본공제를 등록사업자의 경우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200만원으로 축소
- ④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 축소(3억원 & 60㎡ 이하 → 2억원 & 40㎡ 이하)
 - * (현행)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원 이상 과세(3억원 & 60㎡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배제)

3. 역외탈세 방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이 100% 소유(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 부여
 - * (현행) 법인이 100%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만 신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 확대(개인 → 법인 포함)
 - *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적발시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미소명시 20% 과태료 부과)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병과하되, 과태료 상당액에서 벌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 * (현행)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부과시 기존 과태료 부과액 취소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 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과태료 상향조정*(단,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 면제)
 - * (현행) 모든 해외부동산 취득·임대 미신고시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
 - (개정)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미신고시 각 가액의 10%(1억원 한도)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확대
 - * (현행) 현지법인(지분 10% 이상 직·간접적 소유) 미신고자
 - (개정) 해외영업소 미신고자 포함
 - ** (현행) 개인 300만원, 법인 500만원(건별) → (개정)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건별)
- 해외부동산,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 * 미신고 해외자산 적발시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미소명시 20% 과태료 부과)

■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무신고: 7 → 10년, 과소신고: 5 → 10년)
 -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국내외거래+거주자와 거주자 간 국외거래

■ 국외전출세* 강화

-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 국외전출세 적용세율을 조정*하고,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 추가
 - * (현행) 20% → (개정)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 부동산자산 비율 50%(골프장·스키장업 등 80%) 이상 법인의 주식
-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일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2%의 가산세 부과

4. 비과세·감면 정비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 국내 소비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대여하거나,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 ** (현행)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동영상 파일·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및 이를 개선시키는 것’을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가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조합원·회원에 한하여 3년 연장하되, 준조합원은 예정대로 '19년부터 저율 분리과세 시행
 -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 지역·직장조합
 - ** 비과세 한도: (예탁금) 3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

■ 가상통화 취급업 세액감면 제외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제외
 - * 통계청에서 정보서비스업의 하위업종으로 신설 예정(7월 말)

■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전환

-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1만원 초과)에 대한 인지세* 과세 전환('19년 7월 시행)
 - * 서울: (1만원~5만원) 200원, (5만원~10만원)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현행		'18.12.31.까지		'19.1.1.~'19.12.31.	'20.1.1.부터
개정	조합원·회원	(3년 연장)	'21.12.31.까지	'22.1.1.~'22.12.31.	'23.1.1.부터
	준조합원		'18.12.31.까지	'19.1.1.~'19.12.31.	'20.1.1.부터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대상 업종 축소

-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배제

* 공제부금 납부액(200만원~50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추가('19년 4월 시행)

* (현행)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파생상품만 과세
(개정)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 추가

2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1. 일자리 창출·유지

■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9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대책」('18년 4월)에서 기 발표

-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간 100%)제도 신설

* 감면 한도(대·중견기업만 적용)

- 투자액 50%+[상시근로자 수×1,5천만원(청년 2천만원)]

** 감면 대상업종: 창업 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

-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확대(중소 3%, 중견 1~2% → 중소기업 7%, 중견 3%)

※ 적용기한 3년 연장

-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과세특례*를 위기지역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확대

※ 적용기한 3년 연장

* 기업(세액공제): 임금감소분×10%,

근로자(소득공제): 임금감소분×50%

■ 중소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18년 경제정책방향」('17년 12월)에서 기 발표

- 중소기업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1년간 인건비 세액공제(중소 10%, 중견 5%) 신설

* 요건: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유지,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 아이 1명당 1번 적용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지역특구 입주·창업기업 세액감면[3년 100%+2년 50%(농공단지 등은 5년 50%)]

※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18년 7월)에서 기 발표

- 국가균형 발전, 낙후지역 지원 등을 위해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 적용기한 3년 연장

- (감면요건) 대규모 투자금액 요건이 있는 경우 투자금액 기준을 대폭 낮추고, 고용요건을 추가*

* (예) 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 제조업의 경우

(현행) 100억원 이상 투자 → (개정) 20억원 이상 투자
+50명 이상 고용

- (감면한도)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한도를 상향 조정

* (현행) 투자액 50%+Min[상시근로자 수×1천만원, 투자액의 20%]

(개정) 투자액 50%+[상시근로자 수×1.5천만원(청년 2천만원)]

지역특구 현황

제도명	대상 지역
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접경지역 15개 시군 등
기업도시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여수해양박람회	여수
농공단지(5년 50%)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 외 농공단지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5년 50%)	나주·김제·장흥·북평·강진·정읍·담양·대마 산업단지
제주 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제주도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도
연구개발특구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아시아문화중심지	광주 남구·서구·동구
금융중심지	부산 문현동

■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 「청년일자리 대책」(’18년 3월)에서 기발표

•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을 1년 늘리고, 청년 친화기업**은 청년 정규직 고용시 500만원 추가 공제

* 중소기업·중견기업: 2년, 대기업: 1년

** (중소·중견: ① 또는 ②충족)

① 임금수준 & 청년근로자 비중 높은 기업

② 청년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

(대기업) 청년고용 증가율이 3개년 평균 청년고용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

고용증대세제 연간 세액공제액

(단위: 만원)

구분	중소 (공제기간: 2년 → 3년)		중견 (2년 → 3년)	대기업 (1년 →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일반기업	1,000	1,100	700	300
	청년 친화기업 (신설)	1,500	1,600	1,200	800

■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 「청년일자리 대책」(’18년 3월)에서 기발표

• 해외진출기업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기업 범위*를 모든 기업(대기업 포함)으로 확대

※ 적용기한 3년 연장

* (현행) 완전복귀(모든 기업): 5년 100%+2년 50%,

부분복귀(중견·중소기업): 3년 100%+2년 50%

■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중견(700만원)·중소(1천만원) 세액공제

2. 혁신 성장

■ 혁신성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적용

• 기업이 '18.7.1.~'19.12.31.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감가상

각 기간을 1/2 단축)을 적용

*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구체적 자산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18년 5월)에서 기발표

-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 추가
 - * 신성장기술(현재 157개)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30%) 세액공제
 - ** 블록체인 기술(보안기술, 네트워크기술, 플랫폼기술), 양자 컴퓨팅 기술 등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 5% 이상→2% 이상)
 - ※ 적용기한 3년 연장
 -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80개) 투자시 투자액의 10%(중견 7%, 대 5%) 세액공제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연 300만원→500만원)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2년간 50%→5년간 50%)
 - ※ 적용기한 3년 연장
 - * ①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대상 확대

- 중견기업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손금산입** 적용
 - * 기업이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핵심인력 근로자가 5년간 재직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입한 공제부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 (현행) 중소기업의 납입금에 대해 손금산입

■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 ③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18년 1월)에서 기발표

- ①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간접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 * 초기창업자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중소기업창업지원법」§2)
 - ** (현행) 벤처기업 등에 직접 또는 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 ②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 용역은 면세
- ③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 ※ '19.1.1.~'21.12.31. 거래분
 - * 주식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그 차익을 얻기 위한 수익거래

■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 금융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격 P2P(개인 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 → 14%)

※ '20.12.31까지 지급분

* 개인·기업·정부 등이 보유한 유희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새로운 경제모델

** (요건) 투자자보호 등을 감안하여 P2P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

3 조세체계 합리화

1.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

- 발전용 유연탄·LNG의 환경비용*(85원:43원)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을 조정 → 유연탄 ↑, LNG ↓

* 미세먼지 관련물질(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반영한 비용

- (현행)

유연탄 36원/kg : LNG 91.4원/kg = “제세부담금 1:2.5”

* 유연탄: 36원/kg(개별소비세 36원)

LNG: 91.4원/kg(개별소비세 60원, 수입부과금 24.2원, 관세 7.2원)

(개정)

유연탄 46원(+10원) : LNG 23원(△68.4원) = “제세부담금 2:1”

* 유연탄: 46원/kg(개별소비세 46원)

LNG: 23원/kg(개별소비세 12원, 수입부과금 3.8원, 관세 7.2원)

■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18년 7월)에서 기 발표

- 노후 승용·화물 경유차('08년 이전 등록)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한도 143만원*)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

- 교통시설·환경개선·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143만원*)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2.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 면세점 특허갱신·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 면세점 운영인의 특허기간(5년) 만료 시, 갱신 1회 추가 허용

* (현행) 대기업 갱신 불가, 중소·중견 1회 갱신 가능 → (개정) 대기업 1회, 중소·중견 2회 갱신 가능

- 특허수 결정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신설

* 지역별 특례 적용, 특허수수료 적정성 검토, 상생협력방안 등

-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해 특허수수료 경감 (시행규칙 개정)
 - * (현행) 매출액 기준 0.1%~1% 부과 → (개정) 중소·중견제품 매출, 특허수수료 0.01% 부과
-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신규특허 발급요건 변경 (시행규칙 개정)
 -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신규 특허 허용
 - *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규진입 허용

현행	개정안
① and ② (동시 충족)	① or ② (선택 충족)
①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이용자 수 50% 이상	①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증가 (전년 대비)
②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전년 대비)	②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전년 대비)

- 중소·중견 면세점은 상시 진입을 허용(단, 지역여건에 따라 제한 가능)
 - * (현행) 지역활성화 등 일정 조건하에 지방(서울 제외)에 진입 허용
- 매년 초 지역별 특허 가능 수 공지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시행규칙·고시 개정)

■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 ①은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18년 7월)에서 기 발표

- ① 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해 외국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
 - * 신성장동력산업·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인투자
 - **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은 유지
- ② 국내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거주자·외국

법인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 확보(BEPS** Action 7)

- *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고정사업장)를 말하며,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 가능
- **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 특정 활동(단순 구입, 저장, 보관, 시장조사 등) 장소는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있을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됨을 명시
 - * 사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활동
 - ** (현행) 특정 활동 장소는 모두 국내사업장에서 제외
 -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 * (현행) 계약체결 권한을 가진 대리인(종속대리인)만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률(과세제외율)을 차등화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배당수입 익금불산입률	
상장	비상장	현행	개정
40% 초과	80% 초과	100%	100%
30%~40%	50%~80%	80%	90%
20%~30%	40%~50%		80%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확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19.7.1. 지출 분부터 적용)
-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 소득공제(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인정)

■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 중소기업 지원 및 제도 단순화를 위해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제를 안전·환경·복지 시설^①과 R&D·생산성·에너지 시설^②로 구분하여 설비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대·중견·중소기업: ① 1·3·10%, ② 1·3·7%)
 - 직장어린이집은 대·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현행 공제율(10%) 유지
 - ※ 18년 말 적용기한 도래 제도는 3년 연장
-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① 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하고, ② 도입 취지가 달성되었거나, ③ 범용화된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 ① (신성장산업 설비) OLED 제조설비, AI구현 HW/SW, 수소·전기충전소 설비 등
 - ② (안전 설비 등) 저온보관소, 창고시설 등 유통산업 합리화시설

③ (생산성 향상 시설)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설비,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공급망관리·고객관계관리 시스템 설비 임차비용

■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 경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용 자산 처분시* 가업상속공제금액(최대 500억원)을 전액 추징하던 것에서 자산 처분규모에 비례하여 공제금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완화
 - * 10년 내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이상 처분

■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를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허위수취 금액의 2%)
 - * '17년 세법개정시 개인 사업자에 대한 허위수취 가산세(재화·용역 공급 없이 증명서류 수취) 신설

현행 영역	개정 영역	공제율(대·중견·중소, %)	
		현행	개정
안전 설비 등('19년 적용기한)	⇒ ① 안전, 환경 복지관련 시설	1·3·7	1·3·10 (어린이집 10%)
환경보전 시설('18년 적용기한)		1·3·10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18년 적용기한)		7(10) ¹⁾ ·7(10) ¹⁾ ·10	
R&D 설비('18년 적용기한)	⇒ ② R&D, 생산성 에너지관련 시설	1·3·6	1·3·7
생산성 향상 시설('19년 적용기한)		1·3·7	
에너지 절약 시설('18년 적용기한)		1·3·6	

주: 1)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투자시 적용되는 공제율

■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

-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80% → 60%)
 - * '17년 세법개정시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일반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
 - **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거래손익을 이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세율 조정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계약기간 3년 이하)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상향 조정**(3% → 20%)
 - * 국내 프로그래머의 계약기간이 183일 이상인 외국인 직업운동가(프로선수)
 - **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전체적인 세부담은 현행과 동일

■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 문화접대비* 범위에 소액(예: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 비용을 추가하고,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 범위를 확대**
 - *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문화 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적용
 - ** (현행) 관광공연장 입장권 중 공연물 관람 가격 한정 → (개정) 입장권 가격 전액
- 기업의 전시용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 확대(500만원 → 1,000만원 이하 작품)
 - * 기업이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500만원 이하의 미술품 취득가액에 대하여 즉시 손금산입

■ 조정관세 부과 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

- 안보·안전 제고 등을 위해 수입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사유**에 GATT 협정이 허용하는 국제평화 등 제반 가치를 추가
 - * 국내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하여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는 제도로 '18년 현재 찐쌀, 냉동 명태 등 14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 부과 중
 - ** (현행)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등 → (개정)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건강 보호, 환경보전, 유한 천연자원 보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
- 이러한 사유로 부과되는 조정관세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세율적용순위* 조정(3순위 → 1순위)
 - * 현재는 WTO 양허관세(2순위) 등이 조정관세(3순위)보다 우선 적용되어 양허관세를 초과하는 수준의 조정관세 부과는 불가능

3.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 인하 및 통합 운영
 -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시중 연체금리(연6~8%) 등을 감안하여 1일 0.03%(연 10.95%) → 1일 0.025%(연 9.13%)로 인하
 - (가산금) 납세고지 이후 납부기한 경과시 매월 1.2%(연14.4%) → 매월 0.75%(연9.0%)로 인하
 - (통합)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성격의 유사제도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20년 시행)
 - * 가산세와 가산금을 중첩적으로 운용 중인 해외사례 없음

	'19년	'20년
납부불성실가산세	日 0.03% → 0.025%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日 0.025%)
가산금	月 1.2% → 0.75%	

-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미전송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

*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제출) 공급가액×1% → 0.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 공급가액×0.5%·1% → 0.3%·0.5%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적정화(거래대금의 50% → 20%)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자 → 실제소유자로 변경
 - 실제소유자가 체납한 경우로서 실제 소유자의 재산으로 징수하지 못한 경우 명의자에게 수탁된 신탁재산으로 체납세액 징수

■ 국선대리인의 제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선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소득) 5천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기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이 아닐 것 등

** (현행)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사업양수인의 범위 축소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을 축소*

* (현행)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모든 양수인

(개정)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 목적의 사업 양수인으로 제한

■ 납세자에 대한 통지의무 강화

-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결정통지 의무* 신설

* (현행) 기한후 신고일 3개월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의무

(개정)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 추가

-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도 세무조사결과 통지 의무화

* (현행) 폐업한 경우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신설

-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조사 공무원의 녹음권 인정

■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 헌법불합치 결정*(18.4.26)에 따라 변호사(04~17년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 허용

- 다만, 회계 관련 사무인 “장부작성 대리”, “정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

*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제한한 것(「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이 헌법에 불합치

■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 현금납부 능력이 부족한 은퇴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자 확대* 및 분납기한 연장**

* (현행) 납부세액 5백만원 초과자 → (개정) 납부세액 2.5백만원 초과자

** (현행)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개정)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상향

- 자영업자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상향(20만원 → 30만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50%”를 미리 고지·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

- 국외전출자가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연장*

* (현행) 납세관리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개정)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다음 연도 5월말

- 국외전출자가 국내 주식을 실제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거주지국 납부세액(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기납부한 국외전출세에서 국외전출자의 거주지국(이주국) 납부세액을 공제

** (현행) 실제 양도일부 3개월 이내 → (개정) 실제 양도일부 2년 이내

■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시 관세 가격의 사전심사* 대상을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반 사항으로 확대**

* 관세 과세가격 결정 관련 의문이 있을 경우,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 (현행) 수입가격 가산·공제 요소, 납세자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 해당 여부

(개정) 신고가격 불인정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 추가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관세 과세자료 미제출시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 대신 동종·동질물 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 관세 체납처분유예 지원 확대

- 관세체납자는 주로 무역거래를 통한 수익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체납처분유예 요건 완화*

* ① (현행) 체납처분유예 취소보류제도 없음 → (개정) 입학 지연,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 지연시에는 체납처분유예 취소 보류

② 체납액 5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1년 → 2년으로 확대

■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일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보제공 요건 폐지(관세법 위반자, 조세체납자 및 파산자 등은 제외)

* 수출용원재료 수입자가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별로 일괄하여 사후에 납부

4 기타

■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영농종사 기간(2년)에 질병요양, 병역·취학(상속인에 한정)을 이유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포함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영농종사 요건(2년) 적용 배제

* (현행)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상속개시일 직전 2년간 계속 영농에 종사 & 상속인은 상속후 5년간 영농에 종사

■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 농지(1,000㎡ 이상)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자의 배우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보유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지면적 660㎡ 이내,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

■ 수소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 적용 대상 자동차 대여업자의 범위를 수소차 대여업자까지 확대*

* (현행) 전기차 50% 이상 보유 → (개정) 전기차 또는 수소차 50% 이상 보유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

- 경력단절자 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인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 발생기간의 범위를 직전 3개년까지 확대

* (현행) 당해 또는 직전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변경) 당해 또는 직전 3개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 확대

- 효도 장려를 위해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자녀세대가 합가시 직계존속의 연령(현재 60세 이상)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현행)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시 직계존속 보유 주택과 자녀세대 보유 주택 중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재정포럼

2018년 8월호 통권 제266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권남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8년 8월 16일 발행 / 제22권 제8호(통권 제266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 414-2130~1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주)상일 E&P TEL: (02) 2269-6770

■ 인쇄 / (주)상일 E&P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